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7
- 3. 예산안 주요 특징 9

II. 주요 현안 분석 / 11

- 1. 기초연구사업의 사업성과를 고려한 예산증액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1
 - 1-1. 논문실적 등 사업성과를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 필요 11
 - 1-2.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 14
- 2. 민자기숙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시 강화 필요 18
- 3. LINC+ 등 기존 창업교육 지원 사업을 통한 대학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 23
- 4.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및 연계체제 구축 사업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증액소요 최소화 필요 28
- 5. 저소득층 대상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사업 적정 규모 검토 등 31
 - 5-1. 드림장학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31
 - 5-2.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간 중복참여 제한 필요 34
 - 5-3. 저소득층 GKS사업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37
- 6.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개선방안 39



6-1.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중복 개발 최소화 필요	39
6-2. 온라인 공개강의시스템의 연계 방안 검토	43
7. 한국고전번역원 신청사 이전비용의 예산과목 부적정 문제	49

Ⅲ. 개별 사업 분석 / 54

1.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과 중복집행 최소화 필요	54
2. 현직교원을 중심으로 한 창의교육 연수 강화 필요	57
3. 표준유아교육비와 연계된 적정 수준의 누리과정 지원단가 산정 필요	60
4.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65
5.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의 전문인재양성 중심으로 예산 편성 필요	68
6.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 임차료 조정 필요 등	71
7.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학교회계직원 포함 필요	74
8.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관계 명확화 필요	77
9. 저널돌봄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 예산지원 방안 마련 필요	84
10. 입학사정관 규모 중심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비 배분 기준 개선 필요 ..	87
11. 나노디그리 사업의 효과성 및 사회적 활용성 검토 후 단계적 확대 필요	90
12. 대학창업펀드 성과지표에 '지원기업 평균 생존율' 추가 필요	95
1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의 단계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99
14. 한국사학진흥재단 수행 사업에 따른 수입·지출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 필요	102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건물대여료 수입 적정성 검토 필요	105
16.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11
17.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개원준비비 지원사업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15



CONTENTS

18.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의 국외연수 사업 개선 필요	120
19. 캄보디아의 OECD PISA-D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필요	124
20. 국가장학금 지원의 소득연계형 집행 강화 필요	127
21.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사업의 기존 특별교부금 사업과의 차별화된 계획 마련 필요 ..	130
22.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교원연수)사업 특별교부금으로 추진 필요	134

[문화체육관광부]

I. 예산안 개요 / 139

1. 현 황	13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45
3. 예산안 주요 특징	148

II. 주요 현안 분석 / 150

1.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제도 검토	150
1-1. 완성보증계정출연 증액의 효과성 검토	151
1-2. 이차보전 제도 도입의 적절성 검토	154
1-3.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절성 검토	156
2. 지역문화 진흥 사업 분석	158
2-1.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검토 필요	159
2-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162
2-3.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165
3. 예술의전당 기관 수입지출구조 개선 방안 검토 등	167
3-1. 수입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 마련 필요	167
3-2. 노후시설 리모델링 효과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분 반영 필요	171



III. 개별 사업 분석 / 175

1.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175
2. 사업별 추진상황을 고려한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 편성 필요	178
3.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중 문화도시 사업의 신중 검토 필요	180
4. 사업 기간을 고려한 공연 연습공간 조성 사업 예산 조정 검토 필요	184
5.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 반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187
6.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190
7.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기반 미흡	193
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수입의 세입 계상 문제	197
9.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의 진행 경과를 고려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1
10.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3
11. 융복합 관광서비스 활성화 R&D 사업의 기존 일몰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필요 ..	206
12. 콘텐츠누림터 신규 조성 사업 신중 검토 필요	209
13.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사업의 개편 검토	212
14. 전국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사업 관련 통신사와의 협의 미흡	216
15.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8
16.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사업 신중 검토 필요	221
17. 근로자 휴가비 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25
18.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229
19.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다부처연계 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검토	233
2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의 조속한 개편방안 마련 필요	238
21. 영화제작지원 투자출자사업 출자액 조정 필요	243
22. 언론진흥기금의 기금관리비 조정 필요	247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금융성자산 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51



CONTENTS

24. 저작권공정거래지원단 사업계획 보완 필요	254
25. 출판물 해외수출지원사업의 기능조정 필요	258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관 고유 연구성과 확대 필요	261

[문화재청]

I. 예산안 개요 / 267

1. 현 황	267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71
3. 예산안 주요 특징	272

II. 개별 사업 분석 / 273

1. 변상금 징수대책 마련 필요	273
2. 월정전수교육지원금 개선 필요	276
3. 문화재 돌봄사업의 지역별 편차 조정 필요	280
4.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의 계획 미흡	282
5.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시 기관 간 협조 필요	285
6. 기타운영비에 초빙강사료 편성 부적절	287

교육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5조 8,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501억원(2.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54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8억원, 사학진흥기금 1,972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조 4,883억원이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89,598	168,914	168,914	163,061	△5,853	△3.5
- 일반회계	188,086	158,817	158,817	154,295	△4,522	△2.8
- 지역발전특별회계	1,512	10,097	10,097	8,766	△1,331	△13.2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4,642,131	5,529,502	5,529,502	5,685,450	155,948	2.8
- 사학진흥기금	251,652	251,359	251,359	197,196	△54,163	△21.5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390,479	5,278,143	5,278,143	5,488,254	210,111	4.0
합 계	4,831,729	5,698,416	5,698,416	5,848,511	150,095	2.6

주: 총수입 기준

자료: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68조 1,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160억원(7.3%)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9조 1,29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736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8,927억원, 사학진흥기금 2,214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조 1,705억원이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3,564,195	57,066,007	59,006,357	63,795,986	4,789,629	8.1
- 일반회계	52,723,232	52,237,734	54,178,084	59,129,707	4,951,623	9.1
- 지역발전특별회계	840,963	887,392	887,392	773,562	△113,830	△12.8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3,940,881	3,940,881	3,892,717	△48,164	△1.2
기 금	4,314,823	4,565,643	4,565,643	4,391,978	△173,665	△3.8
- 사학진흥기금	265,306	219,696	219,696	221,440	1,744	0.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049,518	4,345,947	4,345,947	4,170,538	△175,409	△4.0
합 계	57,879,018	61,631,650	63,572,000	68,187,964	4,615,964	7.3

주: 총지출 기준

자료: 교육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조 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664억원(1.6%)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211억원에서 2018년 1,942억원으로 12.2%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01억원에서 88억원으로 13.2% 감소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조 9,409억원에서 3조 8,927억원으로 1.2% 감소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8,086	221,084	221,084	194,202	△26,882	△12.2
지역발전특별회계	1,512	10,097	10,097	8,766	△1,331	△13.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3,940,881	3,940,881	3,892,717	△48,164	△1.2
합 계	189,598	4,162,062	4,162,062	4,095,685	△66,377	△1.6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68조 5,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325억원(7.4%)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58조 9,442억원에서 2018년 63조 8,387억원으로 8.3%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8,874억원에서 7,736억원으로 12.8% 감소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조 9,409억원에서 3조 8,927억원으로 1.2% 감소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3,518,161	57,003,831	58,944,181	63,838,661	4,894,480	8.3
지역발전특별회계	840,963	887,392	887,392	773,562	△113,830	△12.8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3,940,881	3,940,881	3,892,717	△48,164	△1.2
합 계	54,359,124	61,832,104	63,772,454	68,504,940	4,732,486	7.4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12조 2,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57억원(7.7%)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4,431억 원에서 5,567억원으로 25.6% 증가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9,154억원에서 11조 6,775억원으로 7.0%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학진흥기금	461,310	443,055	443,055	556,690	113,635	25.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76,588	10,915,394	10,915,394	11,677,470	762,076	7.0
합 계	10,937,898	11,358,449	11,358,449	12,234,160	875,711	7.7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12조 2,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757억원(7.7%) 증가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4,431억 원에서 5,567억원으로 25.6% 증가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9,154억에서 11조 6,775억원으로 7.0% 증가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학진흥기금	461,310	443,055	443,055	556,690	113,635	25.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0,476,588	10,915,394	10,915,394	11,677,470	762,076	7.0
합 계	10,937,898	11,358,449	11,358,449	12,234,160	875,711	7.7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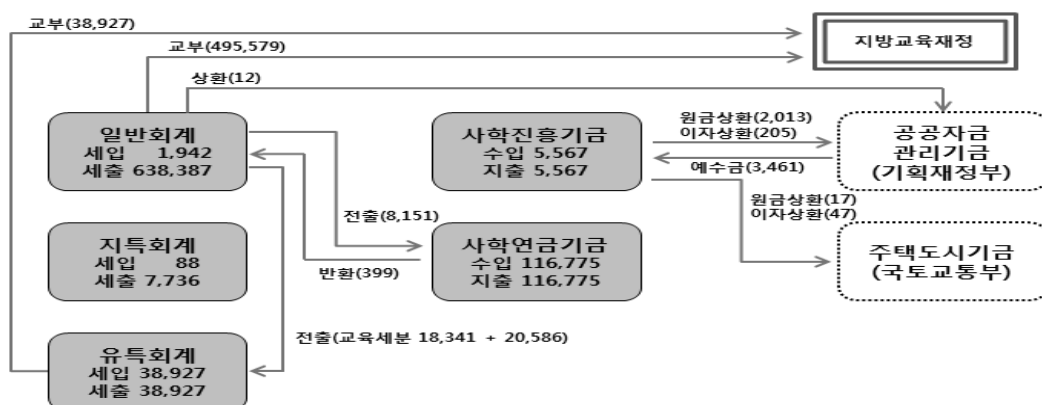
2018년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8,927억원,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8,151억원 전출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99억원 반환되었고,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관 원금·이자 12억원을 상환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 3,461억원을 받고, 예수 원금 2,013억원, 예수 이자 20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예수 원금 17억원, 예수 이자 47억원을 상환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1조 8,761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은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평생교육법」 개정(2016.5.29.)에 따른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사업과 소외계층을 대상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서울회관 재건축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임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재건축을 실시함으로써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다.

[교육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8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2,640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교육세 지원분)	1,834,115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2,420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지원	1,314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5,391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	3,180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10,655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3,5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개)	서울회관 재건축	12,911
합 계(총지출)		1,876,126(42,011)

자료: 교육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국립대학 혁신지원 ②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③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④ 개인기초연구 사업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거점 국립대 육성 및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을 위해 증액되었고,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사업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교육부-인천시, 2006. 4.3.)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후 6년차부터 대학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과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정부 이공분야 기초연구 확대 방향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교육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9개)	영재교육 지원사업	276	276	1,562	1,286	465.9
	창의적 인재육성	1,897	1,897	2,497	600	31.6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256	256	356	100	39.1
	융합형과학기술인재양성 기반구축	2,001	2,001	2,617	616	30.8
	보통교부금	41,299,191	43,014,480	47,712,122	4,697,642	10.9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89,763	511,205	553,730	42,525	8.3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63,254	170,402	184,577	14,175	8.3
	국가지책특별교부금	979,528	1,022,410	1,107,461	85,051	8.3
	국립대학 혁신지원	21,000	21,000	100,000	79,000	376.2
	인천대학교 출연지원	10,200	10,200	84,200	74,000	725.5
	대학정보공시	2,528	2,528	4,980	2,452	97.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289	2,289	3,023	734	32.1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신축	83,025	84,091	103,980	19,889	23.7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303,400	303,400	348,491	45,091	14.9
	개인기초연구	2,996	2,996	4,937	1,941	64.8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45,043	3,955,783	3,995,772	39,989	1.0
	국립대학 인건비	1,511,156	1,511,156	1,573,243	62,087	4.1
	글로벌교육지원사업	4,241	4,241	14,075	9,834	231.9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 복구체계구축	1,522	1,522	9,408	7,886	518.1
사학진흥 기금 (4개)	기타경비	1,061	1,061	3,771	2,710	255.4
	사학진흥기금에서 공자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원금상환	176,000	176,000	197,000	21,000	11.9
	사학진흥기금에서 주택도 시기금으로의 원금상환	430	430	1,724	1,294	300.9
	통화금융기관예치	9,919	9,919	106,975	97,056	978.5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3개)	연금급여	2,493,088	2,493,088	2,538,523	45,435	1.8
	국채외채권매입	1,532,601	1,532,601	3,053,866	1,521,265	99.3
	주식매입	1,222,500	1,222,500	1,347,937	125,437	10.3
합 계		54,259,165	56,057,732	63,056,827	6,999,095	12.5
(총지출)		(51,317,715)	(53,116,282)	(58,349,325)	(5,233,043)	(9.9)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교육부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였으며(2017년 8,600억원→2018년 2조 586억원)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③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였으며(2017년 210억원→2018년 1,000억원) ④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교육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2년(1+1)지원]의 중간평가 결과가 2018년 사업비 배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개편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국립대학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 사업 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민자기숙사 중 상당수가 기숙사비 등 운영수익 일부를 매년 대학에 기부하고 있었음에도(최근 4년간 50억원) 그 규모와 사용내역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기숙사 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자기숙사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육성 관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2017.1),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2017.3)」에 따라 LINC+ 등 기존 사업 내에서 대학원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규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는 개인기초연구나 학문후속세대 사업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간 예산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육부의 풀뿌리 기초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월성 중심 중대형 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에 맞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부처간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와 정부 지원 규모 및 학부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과 표준유아교육비 각 항목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 논문실적 등 사업성과를 고려한 기초연구 지원 필요

가. 현 황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¹⁾은 박사후연구자 등 학문후속세대에게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연구경험 축적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대학연구소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한 특성화·전문화 유도 및 전임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20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3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73,419	83,025	84,091	103,980	20,955	25
학문후속세대양성	48,181	55,296	56,362	65,857	9,495	16.8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238	27,729	27,729	38,123	10,394	37.5

자료: 교육부

개인기초연구(R&D) 사업²⁾은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450억 9,100만원이 증액된 3,48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446-300

2) 코드: 일반회계 2446-301

[2018년도 개인기초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기초연구	268,050	303,400	303,400	348,491	45,091	15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개인기초연구나 학문후속세대 사업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간 예산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학문후속세대, 대학중점연구소), 개인기초연구사업을 SCI(E) 논문 실적, JCR 상위 10%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수³⁾로 구분하여 성과를 살펴 보면(10억원 당 건수), 모든 분야에서 대학중점연구소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중점연구소의 경우 나머지 두 사업과 달리 집단연구지원이라는 특성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인건비 외에도 기자재 등 인프라가 일부 지원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연구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거나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⁴⁾

[SCI(E) 논문 실적]

(단위: 건)

사 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 연구	개인기초연구	SCI(E)	5,807	6,106	6,072	7,328	7,963
		10억원 당	20.23	20.94	20.01	25.23	27.06
	학문후속세대	SCI(E)	346	254	239	327	318
		10억원 당	21.54	15.80	14.86	19.02	18.87
집단 연구	대학중점연구소	SCI(E)	1,176	1,123	845	1,052	1,079
		10억원 당	50.26	42.18	31.74	44.43	42.48

자료: 교육부

3) 기초연구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록특허보다 논문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나, 교육부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성과지표는 등록 특허 지수를, 개인기초연구의 성과지표는 학술지 영향력 지수(mrnIf)를 설정하고 있어, 일단 본 분석에서도 다양한 측면을 비교하였다.

4) 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의 경우 1인당 45백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대학중점연구소는 평균 16명의 연구자에게 571백만원씩 지원되어 1인당 지원액은 36백만원에 불과하여 대학중점연구소의 1인당 지원단가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JCR 상위 10% 논문 실적]

(단위: 건)

사 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 연구	개인기초연구	상위10%	575	611	652	757	742
		10억원 당	2.00	2.09	2.15	2.61	2.52
	학문후속세대	상위10%	69	65	65	86	74
		10억원 당	4.30	4.04	4.04	5.00	4.39
집단 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상위10%	119	101	113	141	128
		10억원 당	5.09	3.79	4.24	5.95	5.04

자료: 교육부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수]

(단위: 건)

사 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인 연구	개인기초연구	등록특허	527	668	789	812	674
		10억원 당	1.84	2.29	2.60	2.80	2.29
	학문후속세대	등록특허	6	5	17	8	5
		10억원 당	0.37	0.31	1.06	0.47	0.30
집단 연구	대학중점연구소	등록특허	163	264	126	184	127
		10억원 당	6.97	9.92	4.73	7.77	5.00

자료: 교육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대학중점연구소(104억원 증액)보다는 개인기초연구가 더 큰 폭으로 증액(451억원)되는 등⁵⁾, 사업 간 성과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각 사업별로 추구하는 목적 및 사업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사업별로 성과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⁶⁾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이와 같은 성과차이를 예산 배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중점연구소의 경우 2017년 현재 전체 부설연구소(2,000여개) 중 2% 정도만 지원되고 있고, 선정률도 기초연구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매년 선정률 3%~20%)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⁷⁾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당초 예산액 규모도 2017년 기준 교육부 소관 전체 기초연구사업(3,875억원) 중 개인기초연구가 78.3%(3,034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중점연구소는 7.2%에 그치고 있다.

6)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수의 경우 대학중점연구소가 학문후속세대보다 약 16배 이상(10억원 기준) 크다.

7) 2017년 기준 과기부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률은 51.0%, 교육부의 개인기초연구 선정률은 62% 정도이다.

1-2.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기초연구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예산은 총 1.5조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기초연구사업은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등으로, 교육부는 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기초연구사업 현황]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최초 지원		후속 지원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과 학 기 술 정보 통 신 부	리더연구	미래의 독자적 과학기술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이 공 학 분 야 교 원 (전임·비전임), 공 공 · 민 간 연구 소 의 연구원	3~8억원	9년 (3+3+3)	3~8억원	3년
	중견연구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하여 우수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마련		0.5~3억원	1~5년	0.5~3억원	1~5년
	신진 연구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이공학분야 교원 (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 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0.5~1억원 (필요시 연구환경 구축비 0.5~1억원 추가지원*)	1~5년 (연구환경 구축비 1년)	0.5~1억원	1~5년
	생애 첫연구	연구역량 갖춘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회 확대 및 조기 연구 정착 유도	기초연구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4년제 대학의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	0.3억원	1~3년	-	-
교 육 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 제고(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이 공 학 분 야 교 원 (전임·비전임), 공 공 · 민 간 연구 소 의 연구원	0.1~0.5억원	1~10년 이상	0.1~0.5억원	최초 지원 기간 최대 10년
	학문 후속 세대 박사후 국내연수 양성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0.4억원	1년	-	-

사 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최초 지원		후속 지원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연간 평균 연구비	연구 기간
박사후 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리서치 펠로우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0.5억원	3년 이내	-	-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1.3억원	5년 (3+2)	-	-

주: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단위 지원 사업만 정리한 것임.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의 풀뿌리 기초연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월성 중심 중대형 연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에 맞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부처간 연계·협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초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풀뿌리 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연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중대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을 교육부·과기부가 공동 기획·관리·공고하는 부처매칭형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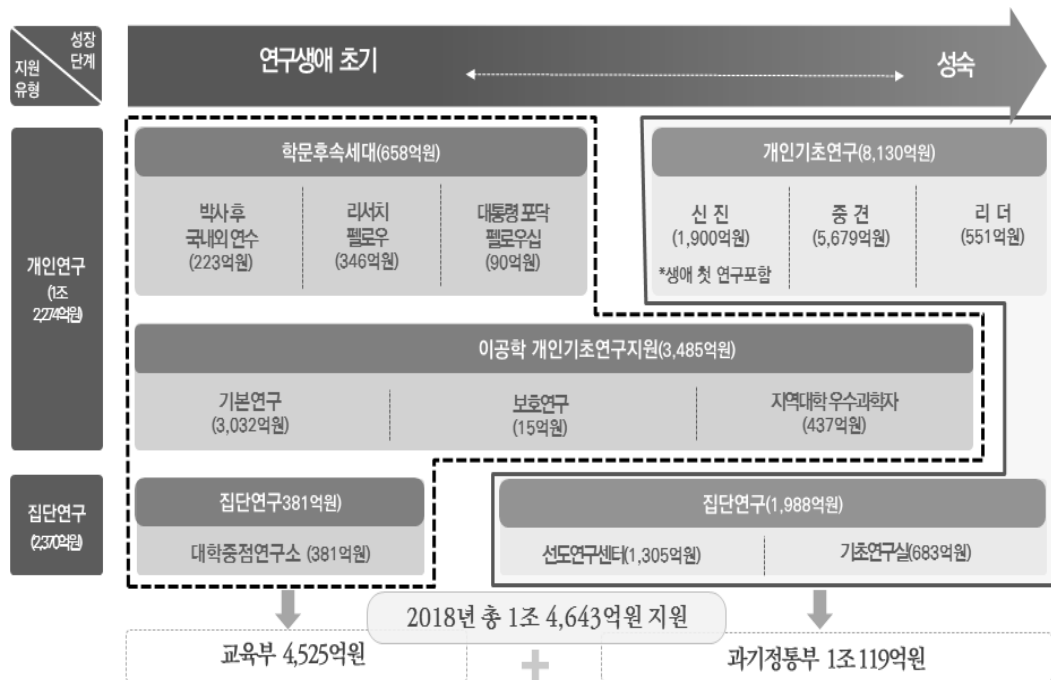
[교육부-과기부 사업 연계 체계]

구 분	교육부	과기정통부
부처별 역할분담	풀뿌리 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 (소규모·순수기초 연구 중심 지원)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역량강화 (중대형·목적기초 연구 중심 지원)
시행계획· 사업공고	시행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 통합공고	
예산배분	분야별 통합 포트폴리오 수립 및 예산배분	
사업관리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사업 연계 운영 및 주요 제도 일원화	

자료: 교육부

실제로 기초연구 사업 구조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이 대체적으로 1인당 지원금액이 많고 보다 장기간 지원되는 특성이 있고, 연구생애 초기부터 성숙단계까지 각 사업별 차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기초연구 사업 구조]



자료: 교육부

특히, 교육부는 매년 300명 내외의 연구자가 교육부 과제수행 후 차년도 과기부 과제를 진행하여 연구성장단계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5, '16년 교육부 과제 수행 후 차년도('16, '17년)에 과기부 과제 수행 연구자 수]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신진	중견	리더	계	신진	중견	리더	계
개인기초연구	22	310	-	332	35	224	1	260
학문후속세대	26	11	-	37	16	5	-	21
계	22	310	0	332	35	224	1	260

자료: 교육부

그런데, 사업별 성과(10억원당 기준)를 비교하면, 풀뿌리연구인 교육부의 개인기초연구가 SCI(E) 논문 실적뿐만 아니라 등록특허 수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SCI(E) 논문 실적]

(단위: 건)

사 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 인 연 구	리더연구	SCI(E)	537	523	535	541	611
		10억원 당	10.13	9.18	10.51	10.53	10.77
	중견연구	SCI(E)	4,854	5,423	5,244	6,315	7,304
		10억원 당	16.23	17.16	16.29	18.11	18.81
	신진연구	SCI(E)	1,799	2,038	2,535	3,286	3,837
		10억원 당	16.21	15.06	17.35	23.15	26.93
	개인기초연구	SCI(E)	5,807	6,106	6,072	7,328	7,963
		10억원 당	20.23	20.94	20.01	25.23	27.06

자료: 교육부

[최근 5년간 등록특허 수]

(단위: 건)

사 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개 인 연 구	리더연구	등록특허	105	97	95	77	74
		10억원 당	1.98	1.70	1.87	1.50	1.30
	중견연구	등록특허	761	913	873	1,033	899
		10억원 당	2.55	2.89	2.71	2.96	2.32
	신진연구	등록특허	128	200	235	299	303
		10억원 당	1.15	1.48	1.61	2.11	2.13
	개인기초연구	등록특허	527	668	789	812	674
		10억원 당	1.84	2.29	2.60	2.80	2.29

자료: 교육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사업별 지원목적 및 지원규모에 맞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부처간 연계·협력을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¹⁾은 고금리의 사립학교 민자기숙사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하는 등 민자기숙사의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기숙사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대비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5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에듀21기숙사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13,099	101,790	101,790	111,620	9,830	9.7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	5,415	4,874	4,874	5,709	835	17.1

자료: 교육부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사업²⁾은 전체 대학 기숙사 예·결산 등 운영정보 공개를 통한 기숙사 운영 효율화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정보분석시스템 운영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 정보분석시스템 운영	1,695	2,139	2,139	1,910	△229	△10.7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0	0	0	260	260	순증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사학진흥기금 2271-300

2) 코드: 일반회계 2232-303

한편, 2017년 10월 기준 민자기숙사는 13개 사립대학(수도권 12개, 비수도권 1개)에 17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민자기숙사비는 평균 월 39.8만원으로 직영기숙사비(19.8만원)의 2배 수준이다.

[민자기숙사 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대학명	캠퍼스	건물명	수용 인원	1인실 기숙사비	2인실 기숙사비	개관일	임대 종료일
BTO 방식 준용	강 남 대학교	본교	심전2관	468	-	292.8	'07.9	'17.8
	건 국 대학교	본교	민자1·2(2동)	3,038	585.3	381.9	'06.9	'20.3
		GLOCAL 캠퍼스	해오름학사	788	-	303.9	'10.3	'30.2
	경 기 대학교	본교(수원)	경기드림타워	2,016	448.7	315.0	'11.9	'31.8
	경 회 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원)	제2기숙사 우정원(2동)	4,308	401.8	315.3	'98.9	'19.2
	고 려 대학교	본교	프런티어관	943	594.9	386.7	'11.3	'29.2
	단 국 대학교	본교(죽전)	웅비홀	1,074	363.3	301.7	'09.1	'29.2
		천안	단우홀	1,014	363.3	301.7	'08.11	'29.2
	동 국 대학교	본교	남산학사	751	353.9	353.9	'12.3	'32.2
	상 명 대학교	천안	청록학사	612	480.5	289.9	'09.9	'28.2
	서 강 대학교	본교	곤자가 국제학사	894	-	377.9	'08.8	'28.7
	송 실 대학교	본교	레지던스홀	1,377	550.7	336.2	'10.3	'30.2
	연 세 대학교	본교(신촌)	SK 국제학사	585	655.0	442.6	'10.2	'30.1
		국제캠퍼스 (송도)	송도2학사	2,882	-	331.5	'14.3	'34.2
		본교	제중,법현학사	1,150	660	360	'17.1	'46.12
	전 주 대학교	본교	스타타워	997	436.4	305.5	'09.3	'29.2
	한국외국어 대학교	용인왕산	제2기숙사(3동)	1,730	-	338.9	'11.8	'31.7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민자기숙사 중 상당수가 기숙사비 등 운영수익 일부를 매년 대학에 기부하고 있었음에도(최근 4년간 50억원) 그 규모와 사용내역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기숙사 정보 공시 항목을 확대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민자기숙사에 대한 합리적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을 통해서 높은 이자 부담의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를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대출하거나, 융자지원 또는 공동추진을 통해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³⁾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총 9개 대학에 1,713억원이 지원되었다.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대학명	수용규모	총사업비	지원액	지원비율
공동추진	A 대학	961	274	140	51
공동추진	B 대학	943	316	50	16
대환대출	C 대학	1,403	322	161	50
융자지원	D 대학	2,016	440	190	43
융자지원	E 대학	751	187	93	50
융자지원	F 대학	1,698	438	200	46
대환대출	G 대학	1,883	230	89	39
대환대출 /공동추진	H 대학	2,186	602	407	68
대환대출	I 대학	2,088	445	383	86
	계	13,929	3,254	1,713	50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3) 공동추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사업관리, 기숙사 운영 등 사업전반에 걸쳐 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융자지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하는 사업
 대환대출: 기 운영 중인 사립학교 교육시설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을 장기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 지원하는 사업

그런데,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대학 중 A 대학 등 6개 대학의 기숙사 운영사들이 최근 4년간 각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약 50억원을 기부하였으나,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와 같은 기부사실 및 기부금 수입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A 대학 및 B 대학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대표 및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의 민자기숙사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에듀21기숙사지원사업을 수혜받은 사립대학 민자기숙사 운영사의 대학발전기금 기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대학명	기부금액				
		2013	2014	2015	2016	합계
BTO 방식 준용	A 대학	270,961	420,000	420,000	430,000	1,540,961
	B 대학	147,000	-	300	-	147,300
	C 대학	359,973	314,292	276,442	296,681	1,247,388
	E 대학	18,626	72,672	112,208	64,164	267,670
	F 대학	4,000	2,000	4,000	4,000	14,000
	I 대학	293,557	371,590	577,000	582,000	1,824,147
	합 계					5,041,466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또한, A대학 및 B대학⁴⁾을 제외한 4개 대학의 기부금 수입은 기숙사 운영경비, 학생 장학금 등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민자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정부 지원이 기부금 형태의 이전 등을 통해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2018년부터 추진되는 ‘대학기숙사 정보공시 및 시스템 운영 사업’을 통해 기숙사 운용수익 중 대학으로 이전되는 금액 및 그 용도 등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공개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학의 민자기숙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교육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은 A 대학의 경우 기숙사비 등 운영수익 일부가 매년 대학에 기부금의 형태로 이전되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B 대학의 경우 유한회사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우선 집행한 사업비의 환급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학 기숙사 정보공시 대상 및 항목]

○ 공시대상 및 항목 현황

구 분	2014년 ~ 2017년	▶	2018년
기숙사 운영결과	국립대 민자기숙사 사립대 민자기숙사 (행복기숙사포함)		국립·사립 민자기숙사 국립·사립 직영기숙사(신규)
기숙사비 납부방식	기숙사비 납부방식 (모든 기숙사, 17년 신규)		기숙사비 납부방식 (모든 기숙사)

※ 사립 직영기숙사는 2018년 공시지침 마련 후 2019년 정기공시 추진

○ 공시항목 세부내용

- 운영결과보고: 재무상태변동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기타: 기숙사비 납부방식(카드, 분납), 지역별 입학생현황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¹⁾은 기존 학부중심 창업교육에서 대학원 중심 창업 활성화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원 선발부터 졸업 후 창업까지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2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0	0	0	2,420	2,420	순증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기술혁신 지원 및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을 통해 취업연계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등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²⁾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액 대비 390억 3,000만원이 감액된 2,21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238-309

2) 코드: 일반회계 2256-300

[2018년도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46,830	260,198	260,198	221,168	△39,030	△15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	224,000	238,272	238,272	202,531	△35,741	△15
대학창의적자실용화지원 (BRIDGE)	15,000	14,731	14,731	12,522	△2,209	△15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1,350	1,550	1,550	1,317	△233	△15
산학협력활성화지원	6,480	5,645	5,645	4,798	△847	△15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2017.1), 「대학
發 창업 활성화 방안(2017.3)」에 따라 LINC+등 기존 사업 내에서 대학원 기술창업을 지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규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원)의 창업 중심 교과과정 개설, 기술창
업 전담 교원 채용, 창업전문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창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8
년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4개 내외 Lab을 선정하여 인건비, Lab운영비, 교육과정 운
영비 등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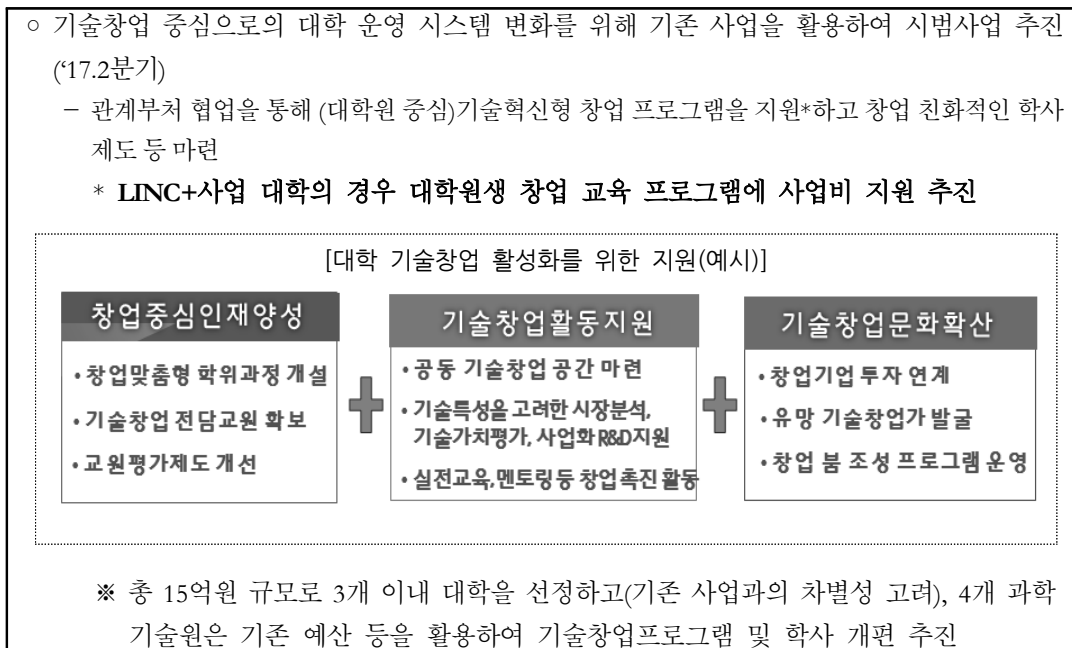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운영 예시]

Startup Lab 입학	Startup Lab 교육	Startup Lab 졸업
▶ 대상 : 창업의지가 강하고 기술기반창업을 희망 하는 학생 ▶ 심사 : 창업 계획서 및 사업 발전방안	▶ 창업교육, 기술교육 ▶ 창작, 협업, 창업공간 제공 ▶ 대학 기술사용권한 부여 ▶ 창업 실습활동 및 초기 창 업활동비 지원	▶ 창업계획서 및 창업실행, 투자유치 성공 등으로 졸업(학위수여는 자율) ▶ 자금 및 기술투자 지원

자료: 교육부

한편, 정부는 2017년 3월 「대학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창업 의지와 역량을 지닌 핵심인재 집중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LINC+사업에 대학원 참여를 허용하여 대학원생 및 연구실(LAB)을 통한 (신)기술창업을 유도하고 산업선도형 고급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³⁾

[LINC+사업을 통한 대학원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학發 창업 활성화 방안」, 2017.3.

이와 같이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LINC+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대학원 기술창업 활성화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LINC+ 등 기존 창업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과 달리 별도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7년 LINC+사업 대학 선정 결과 대학원 기술창업 중심 모형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학이 거의 없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규사업을

3) 이에 앞서 정부는 2017년 1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도 대학원 기술창업, 신성장·산업분야 고급인재 육성 등 대학원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을 유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대학원생 및 대학 내 연구실을 통한 (신)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산업계 선도형 연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학창업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학원특화형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신설하여 기술창업 인재 선발·양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신설하여 기술 고도화(R&D)를 각각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부처간 융합예산⁴⁾을 편성하여 상당부분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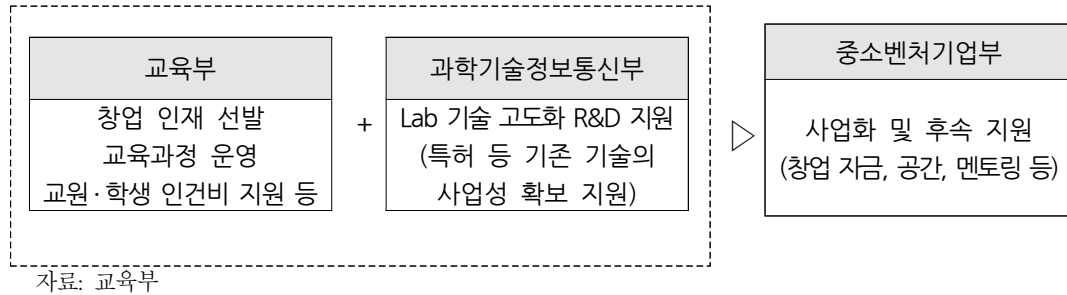
[창업선도대학 관련 주요 사업 비교]

사 업 명		창업선도대학 육성 (5132-303)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2238-309)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신규) (4602-404)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년 예산 (대응비율)		92,240백만원 (국고 90%, 대학(개인) 10%)	2,420백만원 (국고 100%)	1,600백만원 (국고 100%)
사업 연혁		'11~	'18~	'18~
사업 개요		우수한 창업인프라 (전담인력, 시험장비 등)를 갖춘대학을 ‘창업선도대학’ 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창 업거점 역할 수행 지원	특성화된 대학원 Lab을 기 술창업 인재 양성소로 활 용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 창업 시, 석사 학위 부여	대학원생, 교수의 기술창업 시 필요한 R&D 과제 지원
사 업 세 부 내 용	사업 관리기관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창업진흥원)
	사업 수행기관	40개 대학 지정·운영	창업선도대학 중 4~5개 내외 선정	창업선도대학 중 5개 내외 선정
		단, 사업 총괄 관리는 각 대학 창업 지원 컨트롤타워에서 수행		
	주요 지원내용	○ 대학 · 자율·특화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비 · 창업교육 대학생, 일반인 대상 창업강좌 운영비 ·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인건비 등 운영경비 ○ 개인 · 사업화 자금 아이템 개발비, 기술정 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 사업장사업체 입소공간 제공	○ 대학 · 교육과정 운영 정규 교육과정 및 창업전 공 융합교육과정 개발비 · 인건비 Lab 운영 담당 교직원 인건비 · Lab 기자재 구입 등 Lab 운영경비 ○ 대학원생 · 학생 수당 석사 기준 인건비 지원 · 연수, 인턴 글로벌 창업 연수 및 벤처기업 인턴 · 기술사용권 대학보유 기술사용 허용	○ 대학원생, 교수 · R&D R&D 과제비

자료: 교육부

4) 정부는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등을 통해 2018년부터 부처 칸막이를 해소하는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대학창업, 관광, ODA를 3개 시범분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사업간 연계 모형]



그러나, 융합예산의 취지는 부처 간 분절적으로 추진해오던 다양한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여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 신규사업을 편성하기보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가급적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 추진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

5) LINC+사업 중간 평가 시 대학원 기술창업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원금을 차등지원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원 기술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및 연계체제 구축 사업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증액소요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지원 사업¹⁾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1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지원	0	0	0	1,314	1,314	순증

자료: 교육부

예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인력 능력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18 예산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5개영역, 9건) : 1,181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1건): 100백만원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2건) : 800백만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2건) : 200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인력 능력 개발(1건) : 31백만원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3건) : 50백만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 진흥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2건) : 133백만원 - 건설비(공사비, 실시설계비) : 102백만원 - 자산취득비 : 31백만원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134-301

한편, 교육부는 평생교육기관의 통계DB 구축 및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여 평생교육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액 대비 1억 9,700만원이 감액된 1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	942	1,281	1,281	1,084	△197	△15.4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1억원)는 국가평생교육통계구축사업에 따른 조사와 병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000만원)은 기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활용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증액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 5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교육부는 국립특수교육원에 총 6명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이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5.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9.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시행일 : 2017.5.3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선,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는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및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를 매년 수행해오고 있다.

[평생교육 조사 비교]

구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
주관	국립특수교육원	교육부	교육부
수행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예산('18년)	100백만원	371백만원	571백만원
주기	1년	1년	1년
대상	장애성인 및 기관(예정)	전국 만25 ~ 64세 성인남녀	평생교육 기관
조사형태	미정	가구 방문 면접 조사	기관 조사
주요 조사항목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참여율, 주제별 참여 프로그램, 시간, 비용 등 -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 사회참여 및 인식, 참여 희망정도, 장애요인, 정보접근성 등	우리나라 일반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실태, 학습환경, 학습역량, 사회참여 및 인식	평생교육 기관 현황 (기관수, 학습자수, 강사수, 직원수,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사, 자원봉사자 등)

자료: 교육부

신규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 기관 중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은 기존에 매년 수행하는 평생교육통계 기관조사의 조사 대상과 중복된다. 또한, 장애성인에 대한 조사도 장애유형 등 특수한 항목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기존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항목과 중복되어, 기존 일반성인 대상 가구 방문 시 장애성인 표본을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2018년 예산안 39억원)을 통하여 매년 국가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정례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기존 사업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여 협의회 및 세미나 등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및 연계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한국교육개발원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추진해왔던 일반성인 대상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증액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① 드림장학금(저소득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강화), ② 파란사다리(저소득 대학생 해외연수기회 제공), ③ 대학원 국비유학(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선발인원 확대) 사업을 신규·증액 편성하였다.

5-1. 드림장학금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¹⁾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및 저소득층 학생 해외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대비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9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894,596	3,945,043	3,955,783	3,995,772	39,989	1.01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8,115	18,910	18,910	19,688	778	4.1

자료: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은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드림장학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7억 7,800만원은 드림장학금 지원인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드림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함(내신 2등급 이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계층)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을 학부 해외유학 준비생으로 선발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유학을 준비하도록 지원(학업장려비 고2 월 50만원, 고3 월 70만원)하고 해외 대학에 합격 시 연간 5만 달러 이내(학비+체재비, 항공료 별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장학금 선발인원은 2015년 이후 20명 내외였으나, 2018년 예산안에서는 신규로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2017년 드림장학금 선발기준]

구분	'18년졸업예정자 (고교 3학년)	'19년졸업예정자 (고교 2학년)	합계	비고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	8명 내외	8명 내외	16명 내외	최종선발시 인원 조정 가능
특성화고	최대 4명		최대 4명	
합 계	10명 내외	10명 내외	20명 내외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드림장학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드림장학금의 최근 6년간 평균 신청인원이 25명 수준이고 경쟁률도 낮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지원인원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드림장학금은 2012~2017년까지의 평균 신청인원이 25명에 불과하고²⁾ 2017년에도 당초 2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4명이 신청하고 8명만 선발되는 등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드림장학금 신청인원 및 선발인원]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2018
신청인원	12	93	36	44	35	14	-
선발인원	10	10	10	20	20	8	50
경쟁률	1.2:1	9.3:1	3.6:1	2.2:1	1.75:1	1.75:1	-

주: 1. 2013년은 당초 접수기간 내 신청인원 미달(선발목표 10명, 접수인원 8명)에 따른 추가 접수 진행에 따라 신청인원 및 경쟁률 증가

2. 2017년은 9월에 추가로 12명을 신청받아 심사 진행 중임.

자료: 교육부

2) 2013년 및 2017년은 당초 접수기간 내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특히, 2017년에는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별 우수 학생 선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평가(심사) 및 선발하는 방법으로 신청방법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 계획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였다.³⁾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해 성적 기준을 강화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신청·선발 기준 변경 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신청 방법	① 장학생 추천 요청 공문 송부 (재단 → 전국 고등학교) ②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서류 업로드	① 장학생 추천 요청 공문 송부 (재단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② 교육청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각 교육청별 최대 5명 추천 ③ 교육청 추천자에 한해 학생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서류 업로드
선발 방법	○ (심사절차) 서류심사→인·적성검사→심층면접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각 100점)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 학년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좌동) 서류심사→인·적성검사→심층면접 - (좌동)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각 100점)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 - 특성화고와 특성화고 이외의 학교를 구분하여 선발

자료: 교육부

그런데, 2018년에는 기존 선발인원의 2.5배에 이르는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지원인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미 강화된 성적기준을 다시 완화하거나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선발 심사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하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2017년까지 총 77명을 선발하였는데 그 중 10명이 중도포기한 상황이다.

4) 성적 강화: 기존 '석차 4등급 이내 또는 A 학점 이상에서 '석차 2등급 이내 또는 성취도(학점) A 이상으로 변경
 ※ 영어교과는 1과목 이상 필수로 포함해야 하며, 1등급 이내이어야 함. 단, 비영어권 유학 희망자는 희망 국가 언어 관련 과목 석차 1등급 이내이면 영어교과 2등급 이내 시에도 지원 가능

둘째, 학업장려비를 월 50~70만원 현금으로 정액 지원하고 있으나, 유학준비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저소득층대상 사업임을 감안하여 선발된 장학생들이 유학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장려비를 월 단위(1인당 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2018년 예산안 기준 약 4억원)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 정액을 매달 지원하되, 별도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이나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업장려비 지원 기준]

- 고교 2학년: 선발 후 익월 부터 그 차년도 2월말 까지 월 50만 원 지원
- 고교 3학년: 선발 후 익월 부터 그 차년도 2월말 까지 월 70만 원 지원
 - ※ 2학년도로 선발된 장학생이 3학년도로 진학하게 되면 그 해 3월부터 3학년 지원 기준에 따라 학업장려비 지원
 - ※ 3학년의 경우 원서지원비, 시험응시료 등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차등 지원

자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은 사후정산 또는 바우처 방식 등 추가적인 지원금이 유학준비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을 받는 장학생들이 최소한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2. 파란사다리 사업과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간 중복참여 제한 필요

가. 현 황

파란사다리 사업⁵⁾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대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희망 사다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5) 코드: 일반회계 2232-306

[2018년도 파란사다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8,303	8,475	9,615	12,251	2,636	27.4
파란사다리	0	0	0	3,250	3,250	순증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WEST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현장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어학 및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2009년 이후 지금까지 9,50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파견되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실적]

(단위: 명)

	추진실적(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WEST	340	377	375	373	401	394	322	318	2,900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300	329	373	233	144	187	147	130	1,843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912	653	589	612	558	549	536	267	4,676
교사대 졸업자 해외진출			28	20	19	19	20	-	106
합 계	3,561	3,369	3,348	3,230	3,116	3,144	3,020	2,731	9,419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가급적 많은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파란사다리 사업 간 중복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학생(약 800명 내외)에게 해외 우수 대학에서 약 4주간 어학연수, 진로개발,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다른 내역사업들도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란사다리 사업과 거의 유사하나 사업 대상이 일반대학생이며(취약계층 대학생 우대 지원)⁶⁾ 기간이 다소 길다는 차이점이 있다.

6)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은 2016년 기준 46% 수준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명)

사업명	사업 수행기관	시작 연도	예산	인원	기간	참여대상	정부지원금
WEST	국립국제 교육원	'09	5,124	300	6/12/18개월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	355~2,445만원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한국전문 대학교육 협의회	'09	621	100	4~6개월	대학 재학생 (4학기 이상 수료자)	290~540만원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05	3,256	400	4~6개월	전문대 재학생	450~800만원
파란사다리	미정	'18	3,250	800	약 1개월	대학·전문대 재학생	350만원 내외

자료: 교육부

그런데, 최근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전체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열정·잠재력은 있으나 해외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취약계층 대학생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최근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및 경쟁률]

-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 ('14) 39.2% → ('15) 43.7% → ('16) 46.01%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최근 3개년 경쟁률 : ('14) 1.8:1 → ('15) 2.5:1 → ('16) 6.7:1
- (WEST) 최근 3개년 경쟁률 : ('14) 3.3:1 → ('15) 3.6:1 → ('16) 4.5:1

자료: 교육부

따라서, 비록 내역사업 간 프로그램 내용 및 취지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기간이 4~18개월에 이르는 기존 글로벌 현장학습 또는 WEST에 참여한 학생은 방학 중 단기프로그램인 파란사다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업공고 시 참여자격 제한요건을 상세히 공지하여 최대한 많은 취약계층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3. 저소득층 GKS사업⁷⁾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사업⁸⁾은 국가 전략적 필요분야 인재양성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국비유학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고, 미래 첨단과학 분야를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 교육교류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대비 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학생 교육교류지원	10,162	11,898	11,898	13,053	1,155	9.7
Global KoreaScholarship(내국인)	9,531	11,149	11,149	11,616	467	4.2

자료: 교육부

국비유학생은 2016~2017년 저소득층 10명을 포함하여 매년 40명씩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에는 저소득층 선발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저소득층 국비유학사업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지원대상 저소득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인 바, 기존 수혜대상인 기초~차상위 계층의 국비유학 기회가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는 등 지원기준 확대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이후 저소득층 국비유학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8명 선발예정에 18명 지원 신청, 2014년 24명 선발예정에 19명 지원 신청, 2015년 24명 선발예정에 38명 지원 신청, 2016년 8명 선발예정에 14명 지원 신청, 2017년 10명 선발예정에 21명이 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5년간 평균 지원신청 인원은 26명이다.

7) Global Korea Scholarship(내국인)

8) 코드: 일반회계 4531-301

[국비유학생 지원인원 및 선발인원]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선발 예정	지원 신청	선발	선발 예정	지원 신청	선발	선발 예정	지원 신청	선발	선발 예정	지원 신청	선발	선발 예정	지원 신청	선발
일반	28	384	38	32	432	49	56	564	62	25	460	25	23	349	22
특별	28	18	18	24	19	17	24	38	32	8	14	8	10	21	11
기술 기능	-	-	-	10	6	1	15	2	1	7	1	1	7	3	1
계	56	402	56	66	457	67	95	604	95	40	475	34	40	373	34

주: '특별'은 저소득층 국비유학입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저소득층 국비유학 기회 확대를 위해 2018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고, 최근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완화(기초 및 차상위계층 → 기초~소득2분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⁹⁾

그러나, 현행 지원 기준(기초 및 차상위계층)하에서도 최근 5년간 동 사업에 지원 신청한 학생이 14~38명 수준(평균 26명)으로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20명)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기준을 완화하여 소득 1~2분위까지 확대한다면 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국비유학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년도 동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인지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9) 교육부 보도자료, 「저소득층 석·박사 국비유학으로 교육희망사다리 강화」, 2017.7.

6-1.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 중복 개발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¹⁾ 사업은 직업/직무 및 창업 관련 국민 생애주기를 4주기로 분류하여 주기별 교육과정 강좌 운영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	5,590	8,386	8,386	10,665	2,269	27.1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0	0	0	1,500	1,500	순증

자료: 교육부

미래교육환경 대비 콘텐츠 진흥·육성 사업은 교육부 내 산재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예산 및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K-MOOC 운영 등 6개 사업²⁾을 이관(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제외)하여 신규로 구성한 사업이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701-301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대학공개 강의시스템 운영, '17. 5억원),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17. 3억원), 대학국제협력활성화 지원(한-아세안 공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7. 4억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운영, '17. 69억원), 이러닝 세계화(교류협력국 교육용 콘텐츠개발, '17. 0.9억원), 교육정보보호(정보보호교육 온라인 콘텐츠, '17. 0.8억원)

나. 분석의견

생애주기별 학습자 역량 강화 콘텐츠는 기존 20,000여개 이상 구축된 KOCW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중복될 수 있는 콘텐츠의 신규 개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경제활동 가능 단계별(총 4단계)로 사회적 필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려는 것이다. 단기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1개 교육과정을 6종 이상의 콘텐츠(교과목)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콘텐츠 개발 예산은 신규로 개발하는 5~7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총 50종의 콘텐츠 개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개발방법은 사이버대학 중 8개 내외를 선정하여 대학별 1개 교육과정 운영 콘텐츠 개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서비스 인프라는 현재 운영 중인 KOCW(대학공개강의 공동 활용 서비스) 플랫폼을 공유 활용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개요]

구분	개발방향	개발대상 (교육과정수)	개발 콘텐츠 수
생애주기별 1기 (19세~24세)	○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직업 역량 강화 ○ 생애설계 및 취업·진로를 위한 교육	창업기초, 창업실무, 취업·진로, 직업전환, 직무심화,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 사회 Re-Start, 사회봉사 등 총 8개 교육과정 개발(각 생애주기별 2개 교육과정)	각 교육과정별 5~7종 개발
생애주기별 2기 (25세~40세)	○ 직업 전문성 신장 및 직무 역량 강화 ○ 사회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교육		
생애주기별 3기 (41세~65세)	○ 사회 경력이 바탕된 창업 지원 교육 ○ 지식 기반 직업의 창출 및 전환 교육		
생애주기별 4기 (65세 이후)	○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를 위한 교육 ○ 고령화시대 젊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참여형 교육		
계			총 50종

자료: 교육부

[콘텐츠 교육과정 개발 예시]

기관명	특성화고	영진사이버대학교	금오공대
과정명	1. SMT 기초과정 (1종 15차시) (SMT 개념과 기초 공정과정을 습득)	3. C언어 심화과정(1종 15차시) (C언어를 활용하여 CCTV 카메라, 마이크로프로세스 등 S/W를 습득)	-통신 및 SMT 고급과정 학습 ※ 일과 학업 병행, 졸업 후 회사 간부, 대 학원 진학
		4. SMT 심화과정(1종 15차시) (마이크로프로세스 시스템을 습득하 여 생산라인 S/W 개발 및 기계 유지 보수 관리자 양성)	
	2. C언어 기초과정 (1종 15차시) (C언어의 개념과 언 어의 문법을 습득)	5. 전자회로실습(MultiSIM)(1종 15차시) (핸드폰 키판, TV 키판 등 사전 Simulation S/W 개발자 양성)	
		6. CAD 심화과정(1종 15차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이해 및 도면 제작자 양성)	

자료: 교육부

그런데, 2017년 7월 31일 기준 KOCW 콘텐츠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강좌 수 기준 20,977강좌, 강의자료 수 기준 383,139차시로 방대한 DB를 구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기
존 콘텐츠를 수준별,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규 콘텐츠 개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콘텐츠의 활용도도 제고할 수 있
을 것이다(예시: 인공지능 관련 공개 강의 참조).

[KOCW 콘텐츠 구축 현황]

구분	확보 및 제공 콘텐츠			서비스 이용율		비고
	공개강좌수 (누적)	강의자료수 (누적)	테마메뉴 수	가입자수 (누적)	이용자수 (2017.01~07)	
웹	20,977강좌	383,139차시	17메뉴	4,082,684명	3,403,571건	
모바일	4,570강좌	58,911차시	-	-	222,148건	
참여기관수	총 222개 기관					

자료: 교육부

[KOCW 콘텐츠를 활용한 수준별 강좌 예시(인공지능)]

이용목적/대상	강의명 (인공지능 관련 공개 강의 예시)	제공 기관
대학 전공 (대학(원)생)	인공지능	울산대학교
	인공지능	충북대학교
	인공지능	한국외국어대
	디지털 정보기술과 응용	성균관대학교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가천대학교
기초 교양 (고등학생 이상)	인공지능 현재 그리고 미래는	YTN Science
	똑똑한 컴퓨터 인공지능	YTN Science
일반 교양 (대학생, 일반인)	알파고는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국민대학교
전문 교양 (대학, 일반, 정책담당)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미래	KERIS

자료: 교육부

또한, KOCW 콘텐츠의 경우 강좌 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도 자율적으로 이를 공유하기 위한 대학 및 기관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강좌 수 17.7%, 강의자료 수 21.4%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진입하는 대학 및 기관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생애주기별 콘텐츠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2. 온라인 공개강의시스템의 연계 방안 검토

가. 현 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법」¹⁾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²⁾에 따라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두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공개강의시스템으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의(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이하 K-MOOC)와 정보원이 운영하는 한국형 공개강의 서비스(Korea Open CourseWare, 이하 KOCW) 시스템을 운영한다.

K-MOOC 사업은 대학의 최우수강좌를 온라인 수강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하고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에 개설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며, KOCW는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로서 일반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개발한 고등교육 콘텐츠를 제공·공유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사업³⁾의 내역사업으로서 K-MOOC 운영과 KOCW 운영·관리 두 사업이 각각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진흥원의 K-MOOC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8억 4,000만원, 정보원의 KOCW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1,000만원을 사업출연금(350-02) 비목으로 각각 편성하였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⑧ (생략)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코드: 일반회계 4701-301

[2018년도 K-MOOC와 KOCW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교육환경 대비 교육콘텐츠 진흥·육성	5,590	8,386	8,386	10,655	△3,906	△46.5
K-MOOC 운영	4,018	6,928	6,928	7,840	912	13.2
KOCW 운영·관리	210	510	510	410	△100	△19.6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KOCW와 K-MOOC 두 사업이 운영과 기술 측면에서 일정 부분 차이점은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KOCW 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2012~2016년) 시스템에 공개되는 강좌수는 연 평균 17.7% 증가(강의 자료수 기준 21.4%)하였고, 서비스 이용 건수도 웹서비스는 54.3%, 모바일 서비스는 39.2% 증가하여 2017년 7월 기준으로 참여기관은 222개, 강의 수도 20,977개로 확대되는 등 사업의 양적 측면에서 성과가 보인다.

다만, KOCW는 주로 강의실 수업을 녹화한 동영상상을 단순 시청하는 자율학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정량적 성과 외에 상호작용, 학습상담 평가 등 학습 관리 기능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KOCW 사업 실적 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2017.7 누계
웹	강좌수	1,598	2,165	2,814	2,874	2,998	17.7	20,977
	자료수	26,849	35,977	33,890	41,417	60,885	21.4	383,139
	이용건수	900,961	1,734,930	2,766,633	4,433,199	5,152,524	54.3	-
모바일	강좌수	-	-	282	3,096	611	-	4,570
	자료수	-	-	2,407	36,460	10,501	-	58,911
	이용건수	82,044	65,895	132,742	170,388	369,164	39.2	-
참여기관수		23	30	13	8	7	△16.3	222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K-MOOC는 KOCW에 비하여 온라인 학습 상황에 맞게 기획 및 개발된 강좌로서 상호작용, 학습상담 평가 등 전문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하고, 실제 대학 내 학점인정 및 플립드 러닝⁴⁾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규 고등교육 과정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MOOC 사업 실적 현황]

(단위: 개, 명, 건)

구분		15년도	16년도	17년도(~7.31)	누계
참여대학 수		10	28	32	70
강좌수		27	116	160 내외(개발중)	300 내외
학습자 이용건수	방문	446,832	1,735,710	1,293,929	3,476,471
	회원가입	34,793	80,232	57,784	172,809
	수강신청	55,559	126,092	113,809	295,460
	이수	2,056	9,103	15,337	26,496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반면, KOCW와 비교할 때 정량적 실적과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는데,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운영 강좌수는 약 300여개로 KOCW의 1%에 불과한데 비해 투입 예산은 10배 이상에 달하여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일정 부분 수반될 필요가 있다(2016년 결산 기준 KOCW는 2.1억원, K-MOOC는 40.18억원). 이는 강좌를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 위주로 소요되는 KOCW에 비하여 K-MOOC의 경우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에 참여하는 대학이 K-MOOC 강좌를 직접 개발·운영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⁵⁾

이로 인하여 K-MOOC의 운영 주체인 진흥원이 다양한 교육콘텐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강좌 수 확충을 위해 매년 예산상 제약을 받을 우려가 높으며, 이에 따라 진흥원에서는 자체적인 수익 모델 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4)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이란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을 말한다.

5) 해외의 경우 대표적인 1세대 MOOC로는 스탠포드, 하버드, MIT 등 미국 명문대학이 주도한 유다시티, 코세라, 에덱스 등이 있으며, 이들 MOOC의 운영비는 유료강좌 수강료, 시험응시료, 유료증 발급 수수료, 회사의 학생 정보 검색 수수료, 채용 알선 수수료, 협력대학의 강좌운영수수료 및 강좌운영비, 강좌 개발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오재호,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평생학습의 대안인가?”,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016).

[KOCW와 K-MOOC의 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안)	2018 예산안 산출근거
KOCW	410	210	510	410	○ KOCW 운영 : 210백만원(17,500천원×12개월) ○ KOCW 품질 관리 기반 마련 : 25,039천원×8개월= 200백만원
K-MOOC	2,268	4,018	6,928	7,840	○ 강좌 개발 및 운영 : 6,968백만원 - 강좌 개발(신규) : 50,000천원 × 100개 = 5,000백만원 - 강좌 운영(기존) : 12,000천원 × 164개 = 1,968백만원 ※ 개발비 단가 : 강좌개발비 38,000천원 + 강좌운영비 12,000천원= 50,000천원 ※ 운영비 단가 : 1,000천원(TA운영비) × 6개월 × 2회 = 12,000천원 ○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360백만원 - 플랫폼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240백만원 × 1식 = 240백만원 - CDN 이용료 : 10백만원 × 12월 = 120백만원 ○ K-MOOC 서비스 운영 : 512백만원 - 정보서비스 이용료 40백만원, 저작권 보호 지원 70백만원,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평가 및 컨설팅 100백만원, 기타 운영비 152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무엇보다, KOCW 사업은 대학강의 자원 및 국내·외 공개교육정보의 대학간 공유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추진된 것이고, K-MOOC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교육부 소관의 진흥원과 정보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콘텐츠를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두 사업은 그 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이 사업 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K-MOOC 사업과 KOCW 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성과의 분절 및 플랫폼 운영비용 부담 등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시스템의 전문성과 복잡도가 상승하여 연계비용도 함께 증가될 우려가 있다. 당초 교육부는 KOCW 강의 중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를 선정하여 K-MOOC용으로 변환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보원이 보유한 KOCW 강의 중 진흥원의 K-MOOC로 변환 운용되는 강좌수는 9개에 그쳐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KOCW와 K-MOOC 사업 내용 비교]

구분	KOCW	K-MOOC
형태	자율진도방식 (self-paced)	고정된 자율진도방식 (fixed, self-paced)
학습 분량	오프라인 강의 기준 주차별 구성 (1시간~3시간 분량)	온라인 환경 고려 주차별 구성 (10~15분 분량)
평가	자율	형성평가, 총괄평가 (퀴즈, 에세이 형태)
피드백 및 상호 작용	없음	학습자간, 학습자-튜터간 상호작용 (프로젝트 피드백 가능)
운영	시스템관리자	시스템관리자, 강사, 튜터
수준별 학습지원	생애주기별, 분야별 콘텐츠 제공	학습자 개인의 수준에 맞는 컨설팅 제공
목적 및 대상	일반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교육(평생교육)	
강좌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공개강좌	
주관 부처	교육부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자미 외, 「한국형 MOOC 연계를 위한 온라인강의 활성화 방안」, 2014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교육부는 K-MOOC와 KOCW는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도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고등교육 강의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KOCW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시스템(RISS)⁶⁾ 일부를 활용하고 있고, K-MOOC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플랫폼 개발이 불가피했으며, K-MOOC의 강의는 기존 오프라인 강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기획 단계를 거쳐 개발한 것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여 강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K-MOOC는 KOCW와 별도로 기획되었으며 학습관리 기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KOCW는 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것을 예정하는데 반해 K-MOOC는 온라인 환경에 맞게 강의를 구성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자와 교수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양 시스템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⁷⁾⁸⁾

6)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며 대학이 생산, 보유, 구독하는 학술 자원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7) 장상현, “공개와 나눔의 가치로 보편적·글로벌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KOCW”, 한국교육개발원, 2015

8) 반면, 교육부는 MOOC의 경우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여 수업이 구성되고,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강좌를 운영하는 등 OCW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영상·기술상 이유만으로 동일 부처, 동일 목적의 두 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별도의 사업으로 지속 추진된다면, 기술적으로 호환되지 않는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의 비용이 중복 계상·지출되고 수요자는 각 플랫폼에 각각 접근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므로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구조 개편을 통해 두 시스템 관련 사업을 동일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공유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거나, 기술적·내용적 단절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다수의 공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평생학습 시대에 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편의(One-Stop)에 맞게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 사업¹⁾은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21억 400만원이 증액된 19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17,127	17,059	17,059	19,163	2,104	12.3

자료: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은 2018년 5월 은평구 내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7년 예산액 대비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30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기간은 2015~2018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25억 9,800만원이다.

[2018년도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9,086	2,289	2,289	3,023	734	32.1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261-302

나. 분석의견

한국고전번역원 출연(R&D)사업 내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에 편성된 신청사 이전 비용은 동 사업 내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목) 또는 별도 세부사업인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 등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비목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사업 중 기관고유사업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신축건물 취득세 등 신청사이전비용이 신규로 10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에 계상되어 있다.

[신청사 이전비용 산출 내역]

구분	기준	기준금액 산출	비고
사무실 이사	○ 1인 0.4ton, 1ton당 1,600,000원 (현원 기준)	84백만원 (132명 x 0.4 x 1,600,000)	번역원 현원 132명, 1인당 0.4ton으로 환산시 52.8ton
자산 취득비 (회의실 등)	○ 1㎡당 127,000원 적용	521백만원 (127,000원 x 4,109㎡)	신청사(7,500㎡)에서 현청사(3,391.27㎡, 외부 사무실 포함) 제외한 증가 면적 기준 (4,109㎡)
전산장비 이전	○ 무진동 차량(5ton) 6,300,000원	6백만원 (5ton 1대 x 6,300,000)	현 번역원 전산장비 4.7ton
신축 건물 취득세	○ 취득세 (취득가액×2.8%)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0.2%)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0.16%) ○ 등기수수료 (법무사 요율표)	458백만원	취득가액(14,288,000천원) :공사비(12,818,000천원) +설계비(548,000천원) +감리비(922,000천원)
합 계		1,069백만원	

자료: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기능별·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백만원)

	2016			2017('17.8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 (합계)	17,127	17,127	17,127 [17,126]	17,059	17,059	17,059	17,059 [11,844]	19,163
인건비	5,583	5,583	5,583 [5,583]	6,235	6,235	6,235	6,235 [4,024]	6,463
경상운영비	850	850	850 [849]	906	906	906	906 [636]	1,049
기관고유사업비	11,521	11,521	11,521 [11,521]	10,679	10,679	10,679	10,679 [7,671]	12,592
자체수입	△827	△827	△827 [△827]	△761	△761	△761	△761 [△487]	△941
비목별 분류 (합계)	17,127	17,127	17,127 [17,126]	17,059	17,059	17,059	17,059 [11,844]	19,163
연구개발인건비 (360-01)	5,583	5,583	5,583 [5,583]	6,235	6,235	6,235	6,235 [4,024]	6,463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2)	850	850	850 [849]	906	906	906	906 [636]	1,049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10,694	10,694	10,694 [10,694]	9,918	9,918	9,918	9,918 [7,184]	11,651

자료: 교육부

그런데, 당초 교육부는 2016. 12.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18. 1. 1. 시행)되어 학술연구단체 중 공공기관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²⁾ 2017.6.29.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를 근거로 취득세를 법적 경비로 보아 한국고전번역원 청사 이전 신축 사업에 취득세 증액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신청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취득세 관련 경과사항]

- '16. 11. 1. 시설공사 계약 체결 및 착수
- '16. 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법률 시행 '18.1.1.)
(학술연구단체 중 공공기관은 제외함)
- '17. 05.31. 총사업비 내 자율조정 항목으로 총사업비 조정 신청(자율조정내역 제출)
(물가변동 중 262백만원, 취득등록세 중 459백만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입력)
- '17. 06.29. 총사업비 조정 재신청(자율조정내역 수정 제출)
(물가변동 중 174백만원, 취득등록세 중 459백만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입력)
※조달청 물가변동에 대한 검토 결과 분 (174백만원)만 인정되어 수정 제출함
- '17. 07.19.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 통보
(물가변동분(174백만원)만 반영, 취득등록세 미포함)

자료: 한국고전번역원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 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100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준공 이후 권리이전 등에 소요되는 각종 공과금 및 제세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청사이전 신축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어,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세를 포함한 신청사 이전비용을 연구개발출연금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부담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 ⑤ (생략)
-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3. (생략)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기획재정부 설명과 같이 총사업비 조항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축 건물 취득세 등 신청사 이전비용을 연구개발(R&D)사업으로 지원되는 출연금인 기관 고유 사업비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학술연구단체 중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와 같은 취득세 비목 편성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고전번역원은 신청사 이전비용은 동 사업 내 연구개발경상경비(360-02목)에 편성하거나 ‘한국고전번역원 청사이전 신축’사업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신청사 이전비용’ 내역사업을 신설하여³⁾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하는 등 사업 성격에 맞는 비목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학술연구단체 중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정한 비목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과 중복집행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¹⁾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 사회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학교(공교육)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며,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 및 환경 개선 지원으로 예비교사의 SW기본 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6억 4,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	0	0	0	2,640	2,640	신규

자료: 교육부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부속학교 실습 강화 등에 20억 4,000만원, 창의컴퓨터실 구축에 6억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예산안 산출 근거]

구분		개별대학	총	주요내용(안)
교육과정 개선	교육과정개발	70	840	- SW교육 및 SW융합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40백만원) - 전공과정 내실화 및 교수학습 평가도구 개발(30백만원)
	교육과정운영	80	960	-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자료 보급 - SW교육 수업연구, 체험활동 등 운영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404-305

구분	개별대학	총	주요내용(안)
부속학교 실습 강화 및 환경 조성	20	240	- 부속학교 SW교육 실습 강화(10백만원) - 교육환경 마련 및 SW교육 실시(10백만원)
창의컴퓨팅실	50	600	- 피지컬 컴퓨팅 교구(21백만원) - 노트북, 무선AP 등(13백만원) - 책상, 전자교탁, 프로젝터 등(16백만원)
총계	220	2,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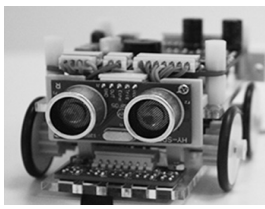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창의컴퓨터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자재와 교구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예산으로 상당부분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두 사업 간 중복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창의컴퓨팅실 구축(학교당 5,000만원 × 초등학교원 양성기관 12개교 = 6억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피지컬 컴퓨팅 교구, 노트북, 무선AP, 전자교탁, 프로젝터 등 SW교육을 위한 교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창의컴퓨터실 구축 사업 예시]

			
기존컴퓨터실		컴퓨팅 교육실(예시)	
			
햄스터(7.7만원)	디오(13.5만원)	에뽀(33만원)	레고 EV3(73.7만원)

자료: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는 위 사업과 별도로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관련된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2018년 예산 595억원)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16년 각 초등교원양성대학(국립대학)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위 창의컴퓨터실 조성과 관련된 기자재 품을 상당부분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주요 초등 교원양성대학(국립대학) 소프트웨어 관련 기자재구입 내역]

(단위: 개, 원)

학교명	기자재품명	취득일자	수량	취득금액
서울교대	블루투스&센서 교육용 실습키트	2016-10-18	5	2,200,000
	SDk 및 소프트웨어 소스	2016-10-18	1	1,430,000
	데스크톱컴퓨터	2016-08-31	36	37,440,000
	디지털교과서리더기 A-1(키보드,펜포함)	2016-10-22	1	1,336,500
	교육용놀이셋트(CODING KITS FOR S/W EDUCATION)	2016-10-18	20	23,100,000
	핀치로봇셋트	2016-10-18	20	5,500,000
부산교대	노트북컴퓨터	2016-07-13	1	1,873,520
	멀티미디어교육용소프트웨어	2016-07-13	1	2,236,080
	컴퓨터서버	2016-08-08	1	4,143,158
경인교대	Adu-smart전광판, 음악연주실습세트	2016-10-17	10	4,900,000
	코블스탠다드	2016-10-17	40	9,200,000
	코두이노 센서킷,로봇킷	2016-10-17	30	6,900,000
	아두이노스마트카, 프라임키트	2016-10-17	20	3,000,000
	아두이노 프라임 키트	2016-10-17	20	4,900,000
	코드이노온오프, 알고리즘키트	2016-10-17	30	6,150,000
춘천교대	레고위두	2016-05-02	20	6,160,000
	레고동글	2016-05-02	20	396,000
	비디오프로젝터	2016-06-28	1	1,758,970
청주교대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2016-07-16	1	490,000
	실험대	2016-07-17	1	886,000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대별로 상이한 시설이 설치되어 지역 간 교원역량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사업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유사한 기자재가 중복적으로 구입될 가능성이 있는 바, 창의컴퓨터실 구축 사업은 단순한 스마트교육 기기가 아닌 창의·융합적 사고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교실 모델 구축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는 등 차별화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창의교육강화 사업¹⁾은 지능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창의교육 확산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을 강화하기 사업으로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2,665	1,897	1,897	2,497	600	31.6
창의교육강화	2,300	1,532	1,532	2,132	600	39.2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예비교원과 현직교원의 인원 및 창의교육 이수자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예비교원보다는 현직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창의교육강화 사업은 ‘현직’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교육인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사업’과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2017년에는 창의교육 거점센터 예산이 6억원,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예산은 3억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사업만 9억원으로 증액되어 현직교원보다 예비교원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게 되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404-401

[2017년 및 2018년 예산 산출근거 비교]

구분	'17예산	'18예산
창의적 인재육성	1,897백만원	2,497백만원
창의성교육강화	1,532백만원	2,132백만원
창의 교육 확산	900백만원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4개×150백만원 ·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2개×150백만원	1,500백만원 ·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4개×150백만원 ·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6개×150백만원

자료: 교육부

그런데, 현직 초중등교원은 2017년 기준 약 40만명에 이르나, 2016년까지 창의인성교육 집합과정을 이수한 교원은 32,802명으로 약 8.2%에 불과하다. 반면, 예비교원은 2016년 기준 11,228명 수준이나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사업은 2012년 이후 매년 2개 대학씩 2017년까지 총 12개 대학이 지원되어 전체 지원대상 교사대(56개교)의 21%가 이미 지원되어, 현직교원보다 수혜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창의교육 직무연수 및 포럼 이수현황 총괄('11~'16)]

(단위: 명)

연수 방법	과정명	구분	재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집합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기초 과정	직무	국고	881	1,182	621	-	-	-	2,684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심화 과정	직무	국고	1,235	855	458	-	-	-	2,548
	창의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	직무	국고	-	-	712	733	-	-	1,445
	창의인성교육 컨설턴트 양성과정	직무	국고	575	383	276	608	-	-	1,842
	창의교육 아카데미	직무	국고	-	-	-	104	-	-	104
	학생맞춤형 창의교육 교원연수	직무	국고	-	-	-	-	106	-	106
	창의인성교육 초중등 교원직무연수	직무	국고	-	-	-	-	382	-	382
	융합형 수업모델 활용 연수	직무	국고	-	-	-	851	-	-	851
	창의인성교육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직무	국고	-	-	-	-	383	-	383
	창의교육 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직무	국고	-	-	-	-	-	1,165	1,165

(단위: 명)

연수 방법	과정명	구분	재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창의교육 초중등관리자 직무연수	직무	국고	-	-	-	-	-	175	175
	창의인성교육 현장 포럼	직무	국고 특교	2,200	3,441	3,158	806	573	500	10,678
	창의교육 현장네트워크 포럼	자율	국고	-	-	-	1,970	1,623	1,286	4,879
	창의교육 교수법 포럼	자율	국고	-	-	978	3,510	577	495	5,560
소 계				4,891	5,681	6,203	8,582	3,644	3,621	32,802

주: 원격교육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교육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교원보다는 현직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보다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비교원과 현직교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교육 수업 모델을 살펴보면 미래 사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직업사회 변화를 조사하여 교과 지식을 그에 맞게 재구성한 융합형 수업모델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현직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습득한 프로그램을 현장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교육 방향 프로그램 세부내용 예시]

프로그램 주제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인간의 핵심역량 - 창의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역량 -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창의교육의 실천 방안
알파고 시대의 창의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알파고를 통한 인공지능의 확장성 - 미래사회의 변화에 준비하기 위한 초등교육의 방향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창의교육 방안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의 의미와 필요성 - 창의교육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의 적용과 교육과정 재구성
창의적 문제해결 및 컴퓨팅 사 고력 신장을 위한 창의교육(I)	- 인문학 속에서 놀면서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 - 나는야 솔라 에너지(Solar Energy) 엔지니어! 4차 산업혁명 인재상, MAKER에 도전!
창의적 문제해결 및 컴퓨팅 사 고력 신장을 위한 창의교육(II)	- 마을스토리, 눈높이 SW 지도 만들기-행복스토리, 미래의 우리 고장 건설하기 - 3D 모델링을 활용한 나만의 스타트업!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¹⁾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제공(만 3~5세 누리과정)하여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481억 6,400만원이 감액된 3조 8,92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0	3,940,881	3,940,881	3,892,717	△48,164	△1.2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17년도에 총 소요액의 41.2% 수준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지원액(국고 8,600억원/총 소요액 2조 875억원)을 2018년도에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할 예정이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601-300

[누리과정 지원 예산체계 변화]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보통교부금 39.8조원 : 내국세분 + 교육세 전액(5.1조원) ※ 누리과정 지원 (4.04조원) 포함	보통교부금 41.3조원 : 내국세분 + 교육세 일부(2.1조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보통교부금 47.7조원 : 내국세분 + 교육세 일부(3.4조원) (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세 전입금 (3.08조원) 국고 지원 (0.86조원)	교육세 전입금 (1.83조원, 유치원분) + 국고 추가지원 (2.06조원, 어린이집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와 정부 지원 규모 및 학부모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금과 표준유아교육비 각 항목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을 개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그에 따르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일정 규모의 단위 유치원이 그에 상응하는 표준교육조건(교직원, 교구, 시설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상적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정부는 무상교육 달성을 위하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공립유치원은 6만원, 사립유치원은 22만원, 어린이집은 29만원을 학부모에 지원하고 있고, 2018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²⁾

[2013~2017년 누리과정 지원단가 고시 기준]

(단위: 만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유아학비	6	유아학비	22	보육료	29
방과후과정비	5	방과후과정비	7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위해 매년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연구를 수행(표준원아 수 적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산정된 표준유아교육비에 실제원아 수를 적용하여 표준유아교육비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정된 2016년 표준유아교육비(2015학년도 기준)는 공립 52.6만원, 사립 41.8만원(평균 44.4만원)이다.

2) 다만, 2017년 기준 보육기관별 학부모부담금을 살펴본 결과, 전체 원아 수의 75%가 재학 중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월 평균 21.7만원에 이르러 국공립유치원보다는 20.5만원,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15.9만원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2017년 예산안 심사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30만원까지 인상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공·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비교]

(단위: 명, 천원)

구 분		2015학년도
표준원아 수	공립	176,930
	사립	461,015
실제원아 수	공립	161,083
	사립	521,214
표준원아 수 적용 표준유아교육비(A)	공립	479
	사립	473
실제원아 수 적용 표준유아교육비(B)	공립	526
	사립	418

주: 1. 표준 원아수(학급당 3세 15명, 4~5세 20명 기준): '15) 637,945명(공립 176,930명, 사립 461,015명)
2. 실제 원아수: '15) 682,297명(공립 161,083명, 사립 521,214명)

자료: 교육부

그런데,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의 수입은 정부지원금(누리과정 지원), 정부보조금(보통교부금 지원), 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아교육비 지출항목과 수입 재원 간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아 정부지원금, 즉 누리과정 지원이 표준유아교육비의 각 항목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현재 정부의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수입 재원 구분]

- ▶ 정부지원금(누리과정 지원비): 정부가 부모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행정편의상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
- ▶ 정부보조금(보통교부금 지원):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하는 교사처우개선비, 특수 활동비, 학급운영비 등
- ▶ 부모부담금: 학비(보육) 중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

자료: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구성]

- ▶ 표준인건비: 기본급과 제수당 + 맞춤형 복지비 + 법정부담금
- ▶ 표준교육활동경비: 교구비 + 재료비 + 설비비
- ▶ 표준공통운영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 공공요금 + 기본적 경비 + 학생복지비

자료: 교육부

이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유아교육비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취지에 따라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부모 부담이 표준유아교육비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여부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급·간식비 등이 전반적으로 과다 산정되어 있어 표준유아교육비를 누리과정 지원단가와 직접 연계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표준유아교육비 과다 산정 근거]

- (인건비) 임금을 국공립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지 않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과다추계
- (교재교구비) 대규모 업체 단가 및 고가의 상품만 적용하여 실제 시장가보다 과다선정
- (시설비) 건축물 내구연한(30~50년) 중 최소기간인 30년을 적용하여 과다선정
- (급·간식비) 식단 및 식재료에 근거하지 않고 에너지 필요추정량에만 근거하여 정확한 산정 곤란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의 수입항목을 정부지원금, 정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구분하고 지출 항목도 그에 맞추어 세분화하여 누리과정 단가 및 정부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7년 말~2018년 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새롭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정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개발하고 이를 기준으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산정하여 적정수준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¹⁾은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전 생애 걸친 교육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5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평생교육바우처지원	0	0	0	5,391	5,391	순증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득 2분위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고 지원규모는 1만 명 내외, 연간 지원한도는 기초~소득1분위 및 장애인은 75만원, 소득2분위 및 국가유공자는 5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8년도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사업 지원계획]

구 분	내 용
예 산	○ '18년 총 4,645백만원 ※ 사업관리 및 시스템구축비 746백만원 별도
지원대상	○ 소득 2분위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규모	○ 10,000명 내외
대상교육	○ 학점 취득 교육(학점은행, 대학·전문대학 학점과정) ○ 나노디그리 이수 비용 ○ 지자체평생학습관 및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연간 지원한도	○ 기초·소득1분위, 장애인 : 75만원 ○ 소득2분위, 국가유공자 : 50만원
바우처사용기간	○ '18.3.1~'18.12.31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131-304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최근 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가 확대된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월소득 500만원 이상과 150만원 이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2년 14%p 차이였으나, 2016년 21.6%p 차이로 확대되었고,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도 2012년 18.9%p 차이였으나, 2016년 25.3%p 차이로 확대되는 등 계층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어²⁾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바우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16년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직장업무(25.9%), 건강상의 이유(22.2%), 비싼 학습비(21.3%) 순으로 조사되었는 바, 저소득층의 경우 단순한 평생교육비 지원 방식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저소득층은 생계로 인하여 별도의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고 내일배움카드제 등 직업훈련 바우처 서비스 등에 비하여 직접적인 취업연계효과가 다소 제한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평생교육바우처지원시스템에 스스로 가입하고 자격을 환인하며 교육과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최근 계층 간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와 같은 참여 저조가 단순히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선 저소득층에 특화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2) 2012년: 월소득 150만원 이하 30.1% vs 500만원 이상 44.1%
중졸이하 22.0% vs 대졸이상 40.9%
2016년: 월소득 150만원 이하 21.1% vs. 500만원 이상 42.7%
중졸이하 20.0% vs. 대졸이상 45.3%

[평생교육바우처지원 신청 절차]

①바우처 지원 시스템 가입 및 지원신청	• 최초 1회에 한하여 바우처지원시스템 가입 • 지원유형별 연간 지원 한도 및 지원방식 등 안내·확인 • 희망하는 유형에 대한 바우처 지원 신청*(정보제공 동의 포함), 지원한도 내 개인지원규모 설정 * 3월에 정기신청, 4월 이후에는 3월 신청 정산 이후 잔여 재원에 한하여 추가신청 • 가입자 연간 교육계획 입력(선택)
②자격 확인 등 지원 여부 확정	• 제출서류(기초·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확인 → 지원여부 확정 • 신청자에 지원확정 여부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방식 안내(SMS)
③교육신청 및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는 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인증을 인정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신청(인정교육기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학점취득과정은 교육신청 시 환급예정금(소득1분위, 장애인은 수강료의 10%, 소득2분위, 유공자는 수강료의 20%)을 지원대상자가 우선 납부(과정 이수 시 환급) •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를 시스템에 입력 • 위탁(집행)기관은 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교육기관에 지급 * 학점 취득 과정의 경우 수강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지급
④교육 이수 및 이수 결과 확인	• 교육기관이 교육 이수 여부를 시스템에 입력 • 위탁(집행)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지원대상자에 환급예정금(수강료의 20%)을 지급
⑤최종 학습 관리	•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 교육 및 학습 결과 입력 • 바우처 지원 시스템에서 잔여 지원 한도 확인 후 추가 교육 신청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¹⁾은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3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수외국어교육진흥	0	0	0	3,180	3,180	순증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인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8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부는 이 법에 따라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실태조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4531-302

사 및 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및 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4대 전략으로 추진하며,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대학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특수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은 편성된(K-MOOC 강좌 5억원 등) 반면,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인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내실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²⁾

[2018년 예산안 산출 내역]

-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체제 구축: 1,16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조사·분석 : 30백만원 ·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 설계·개발 : (10개 語 × 120백만원) / 4개년 = 300백만원 · 평가체제 마련 현황 조사 : 30백만원 · 평가시험·인증체제 구축 : (10개 語 × 120백만원) / 4개년 = 300백만원 · 사전 개발 : (10개 語 × 200백만원) / 4년 = 500백만원 -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1,250백만원 · 대학 자율 언어 : 10개 語 × 65백만원 = 650백만원 · 국가 지정 언어 : 5개 語 × 100백만원 = 500백만원 · 통번역 학과 및 전공개설 : 10개 語 × 10백만원 = 10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확대 및 인프라 구축: 770백만원 · K-MOOC 강좌 개발 : 10개 강좌 × 50백만원 = 500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총괄센터 인건비 : 76.8백만원 행정 3.2백만원 × 2명 × 12월 = 76.8백만원 ·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총괄센터 운영비 : 97백만원 · 특수외국어 정보 종합포털 시스템 구축 : 96.2백만원
--

자료: 교육부

2)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된 ‘특수외국어 인력양성 및 활용 확대 사업’(12억 5,000만원)은 대학부설연구소를 특수외국어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특수외국어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교수인력 확보, 특수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등에 대한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 지원 등 직접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부지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수외국어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연수 지원, 특수외국어과 학생들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학생의 수업멘토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의 국내 단기과정 연수 및 현지 국외 연수 지원 등 보다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바, ‘특수외국어학과 대학원 진학률’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성과계획서 상 별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동 사업의 주요한 추진 배경은 특수외국어 학과 졸업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쌓기보다는 취업 또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높아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pool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수외국어학과 대학원 진학률 및 취업률 비교]

대학원 진학률(2015)			취업률(2015)		
4년제 전체	한국외대	부산외대	4년제 전체	한국외대	부산외대
37.8%	4.5%	2.4%	64.4%	64.1%	63.1%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동 사업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언어적 소질이 있는 학생이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특수외국어학과 대학원 진학률 등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앞서, 새 정부 초기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3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0	0	0	3,500	3,500	순증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 중 회의장 임차료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바, 정부서울청사 내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회의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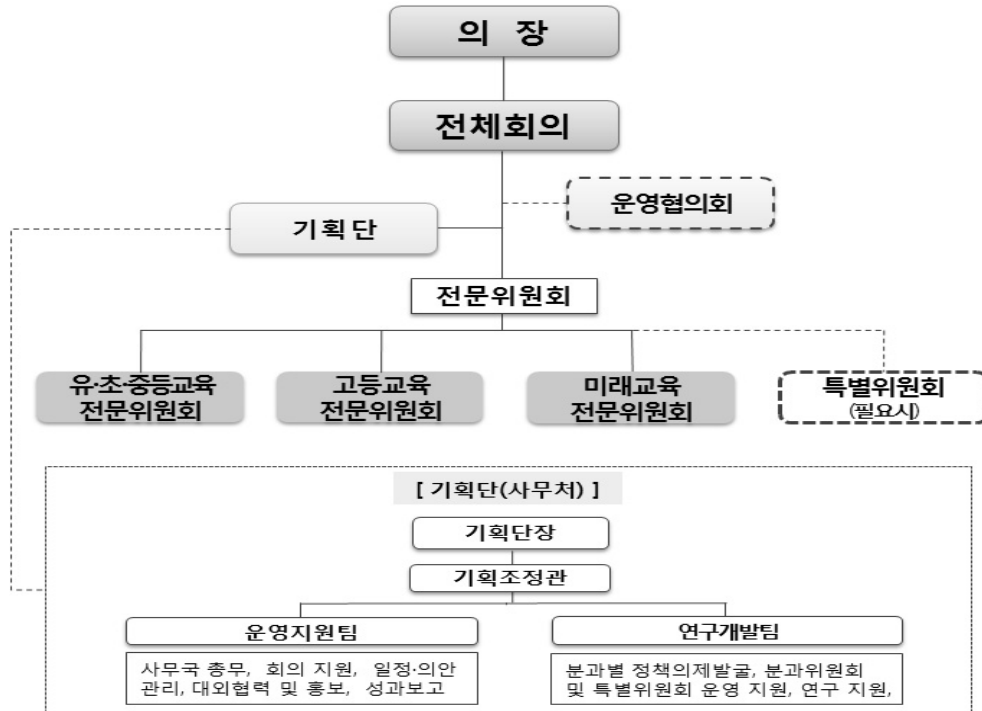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017.9.12.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회의 운영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여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하였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7031-312

[국가교육회의 조직도]



자료: 교육부

그런데, 2018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중 임차료는 총 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회의장 임차 예산은 한 달에 34회, 1년에 408회 회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²⁾ 국가교육회의가 별도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정부서울청사로 이주할 예정임을 고려하여,³⁾ 청사 내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가급적 임차료를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예산 입력 시 당시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위와 같이 입력되었으며 향후 12월×4회×2,375,000원=114,000,000원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즉, 회당 30만원 이내의 소규모 회의를 위한 임차료가 아니라, 대규모 세미나(200명 내외 참석)등을 위한 회당 250만원 내외의 임차료 편성으로 수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00여명 내외가 참석하는 세미나토론회를 매주 1회씩 1년 동안 개최하는 일정 또한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부는 10월 중 정부서울청사로 이주할 예정이나, 기획단(사무처) 사무실 공간 외 별도로 회의실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 중 임차료 산출 근거]

- 임차료 : 226백만원
 - 복합기(팩스 공용), 대형 프린터 및 파쇄기 등 : 35대×181,950원×12월=76백만원
 - 업무용 차량 임차 : 1,000,000원×2대×12월=24백만원
 -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임차 : 1,000,000원×12월=12백만원
 - 회의장 임차 : 34회×279,400원×12월=114백만원

자료: 교육부

둘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및 사무국의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성 경비는 임차료(210-07)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을 신설하는 경우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로 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자산취득비(430-01목)
 -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특별검사제, 대통령 순방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각종 행사 추진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임차(렌트)로 하고(210-07 임차료), 다만,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의 2018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사무용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430-01)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위 세부지침에 따라 가급적 임차하는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 사업 중 유형자산 산출 근거]

- 유형자산 : 50백만원
 - OA 사무용 가구 등 구입 : 6백만원×4분기=24백만원
 - 기타자산 취득 및 유지보수 등 : 6.5백만원×4분기=26백만원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보통교부금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4조 6,976억 4,200만원이 증액된 47조 7,12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보통교부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통교부금	41,639,909	41,299,191	43,014,480	47,712,122	4,697,642	10.9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및 교육행정기관 정원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이를 지방교육재정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하여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총액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산정분으로 구성된다.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교부액은 기준인원에 연간 인건비 단가를 곱한 값에 처우개선비 등을 합하고 여기에 교부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2013년 1조원에서 2016년 1.26조원으로 매년 교부액은 증가하였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501-300

그런데, 2013년~2016년까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시·도교육청이 초과집행을 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집행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200%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 교부액 및 결산액]

(단위: 명, 백만원)

연도	총액인건비 교부액				인건비 결산액(2)	교부액 대비 결산액 비율 (3)=(2)÷(1)
	기준인원	인건비 총액	교부율	교부액(1)		
2013	89,087	1,438,884	70%	1,007,219	2,099,757	208%
2014	89,465	1,631,276	69%	1,130,855	1,987,067	176%
2015	82,571	1,697,380	70%	1,188,653	2,310,437	194%
2016	82,186	1,761,835	72%	1,261,680	2,526,936	200%
2017	80,339	2,002,573	100%	2,002,573	-	-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으며,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교육부는 2017.9.11.「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²⁾을 추진할 계획인 바, 현재의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으로는 실제 집행액과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우선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및 인건비 단가 등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그 동안 공무원만 적용대상으로 시행되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³⁾을 학교회계직원에도 적용하여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및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 2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 '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인상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인력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2016.2)」을 통해 당초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2017년 10월 현재까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2016.2)]

-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 교육청 페널티* 부여 등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정원 (무기계약직) 관리체계 강화(2018~)
- 시·도교육청 조직분석 결과에 따라, 우수교육청에 대해 총액인건비 페널티 부과 규모만큼 차등적 재정지원 검토
 - * 초과 사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다음연도 기준재정수요에 감하여 반영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¹⁾은 국립대가 혁신 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790억원이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학 혁신지원	8,550	21,000	21,000	100,000	79,000	376.1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2017년까지 39개 국립대학 중 일부(16교 내외)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특수 목적지원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별도 선정 평가 없이 모든 대학에 차등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2018년도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유형별 비교]

	유형Ⅰ : 거점 국립대 육성	유형Ⅱ : 지역중심 국립대 등 육성
사 업 비	○ '18년 600억 * '18~'22, 5년간 총 3,000억	○ '18년 400억 * '18~'22, 5년간 총 2,000억
지원대상	○ 거점 국립대 9개교 (교당 평균 66.7억)	○ 거점 외 국립대 30개교 (교당 평균 13.3억)
지원유형	○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	
지원방식	○ 별도 선정평가 없이 대학별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	
성과관리	정부-국립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 정도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되, 매년 성과관리를 통해 책무성 확보 * 국립대는 성과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7031-312

나. 분석의견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2년(1+1)지원]의 중간평가 결과가 2018년 사업비 배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개편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국립대학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등 사업 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2014년 처음 신설된 후 현재까지 2년 단위(2015~2016년, 2017~2018년, 1+1 방식)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선정 당시 대학이 제시했던 과제 이행여부를 중간 점검한 후 2018년에 차등 지원하며, 사업 운영 실적이 현저히 미흡한 대학의 경우 지원 중단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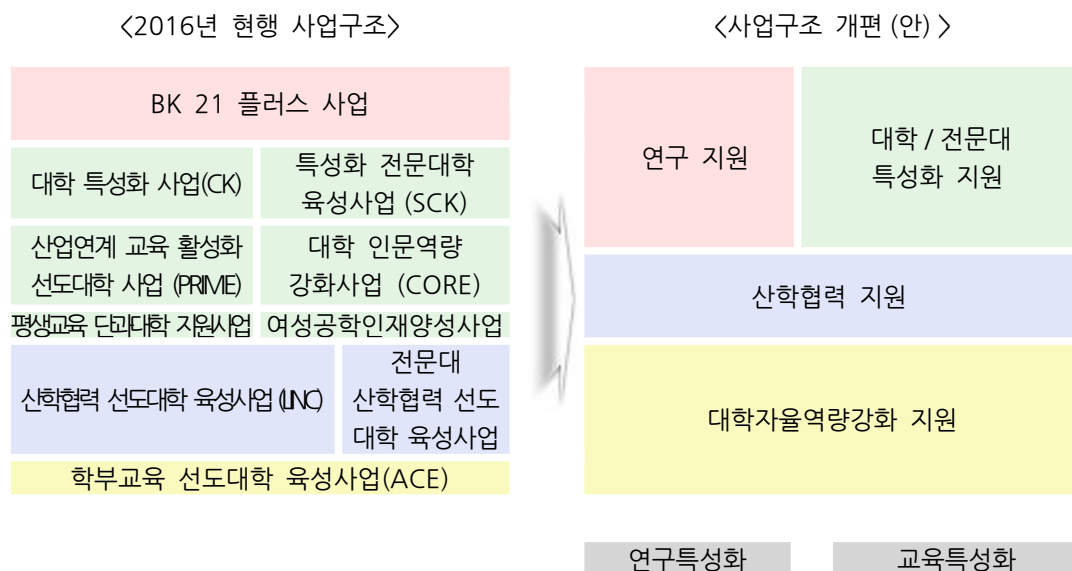
'14년	'15~'16년	'17년~
○ 구조개혁(특성화) ○ 역할 정립 ○ 성과관리 강화	○ 국립대 역할·기능 ○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 대학회계의 정착	○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 ○ 혁신기반 구축 -국립대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의 정착
4개 유형별 (특성별/규모별) 상위 25% 내외 선정 (12교)	4개 패널 기준 총 16개교 내외 (‘15년 18교, ‘16년 19교)	4개 패널 기준 총 16개교 내외 (‘17년 18교 선정)
사업비 100억원 (‘14.7~)	사업비 ‘15년 90억, ‘16년 85.5억 (‘15.8~‘17.2)	사업비 210억원 (‘17.5~)

자료: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이 2018년부터 국립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확대되는 경우 사실상 2017년에 지원한 18개 대학(210억원)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와 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연계할 수 없게 되어 기존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16.7)’에 따라 약 1.5조원에 이르는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특수목적사업(①연구, ②교육(대학특성화), ③산학협력)과 일반재정지원사업(④대학자율역량강화)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하도록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국립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이들 국립대학이 2019년부터 추진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지원받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16.7)]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19년부터 도입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에 39개 국립대학의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와 별개로 2018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목적 및 내용은 상이하다고 설명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과 일반재정지원사업 비교]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018~)	일반재정지원사업 (2019~)
목적	국립대 역할 및 기능 강화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 자율발전 지원
대상	39개 국립대학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일정수준 이상 대학
재정 배분	대학별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	포퓰러 방식으로 배분 (규모, 교육여건 등 고려)
내용	(거점 국립대) 세계 수준 연구 브랜드 육성 및 교육력 제고, 지자체 연계·협력 강화 (거점 이외 국립대) 특수분야 인력양성 등 기능 특화 및 경쟁력 제고	각 대학이 설립목적, 비전, 여건 등에 따 른 기본역량 향상 지원 (자율성 최대한 보장)
성과 관리	정부-개별대학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이행상황 점검	성과협약 이행상황 점검

자료: 교육부

그러나,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대학의 기본역량 지원이라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2018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과 2019년부터 추진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개편에 따른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국립대학을 포함할지 여부 등 두 사업 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 개편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2014년 신설 이후 별도 성과 지표 없이 추진되어 왔는 바, 국립대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의 계량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4년 신설 이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없이 추진되어 왔다. 즉, 개별 대학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수립·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에 따라 전체 대학 공통의 계량화된 성과 개선보다는 사례 위주의 성과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보다 느슨하게 관리되어 온 측면이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 기초·보호학문분야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학문 후속세대 지원 (부산대 SAM, Science, Arts, Mathematics)
○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참여하고 역량강화 지원 (군산대-안동대, 영·호남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개최, 지역이해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

자료: 교육부

비록, 동 사업은 각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일권역 고교출신 진학 비율, 동일권역 내 취업 비율, 기초보호학문 투자 비율, 기초학문 대학원 진학자 비율 등 지역 기반 인재 양성과 국가 발전에 근간이 되는 기초·보호 및 지역전략 분야 연구의 핵심 역할 수행이라는 국립대학 고유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성과관리 지표(예시)]

구분	대상	분 야	주요 내용
공통 지표	전 체 국립대	고등교육	고른기회전형 등록자 비율
		기회균등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율
		지역발전기여	동일권역 고교출신 진학 비율, 동일권역 내 취업 비율 등
		운영 효율화	고용창출 효과, 운영비 지출 효과, 지자체 사업 참여도 등 대학회계 운영 효율화 지수, 조직·인사운영 효율화 지수 등
개별 지표	거점대	기초학문	기초보호학문 투자비율, 기초학문분야 전임교원당 학생수 등
		교육·연구성과 획기적 개선	기초학문 대학원 진학자 비율, 대학원생 학술대회 지원규모 교육환경 개선, 졸업생 취업률, 교원 연구실적 등
	지 역 중심대	지역특화 학문·산업	지역 내 우수인재 유입 비율 보호분야(농수산, 임업, 공업 등) 또는 사립대와 차별화된 특화분야 예산 투자 비율 지역 특화 산업 취·창업자 수, 지역현안 연구 참여도
	특 수 목적대	특수목적	해당 특수목적 분야로의 취업률 또는 진학률 등

자료: 교육부

셋째,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연기관으로 선정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를 참조하여 출연기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연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출연기관으로 선정된 법적 근거로 「학술진흥법」 제5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국립 대 전반의 경쟁력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동 사업의 출연근거]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대학병원 또는 대학치과병원 및 그 부설연구소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생 략)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出捐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

2. ~ 8. (생 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연구재단이고 일부는 사업 특성에 따라 대학교육협의회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출연기관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국립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및 출연기관]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기간	대상 (지원단위)	출연 기관
산학 협력	LINC사업	산학협력 진화형 대학체제 개편	5년 (2012~2016)	학부 (사업단)	연구재단
평생 교육	평생교육단과 대학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전담 단과대학 구성·운영	1년 (2016)	학부 (대학)	국평원
특성화	CK사업	지역사회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5년 (2014~2018)	학부 (사업단)	연구재단
	SCK사업	전문대 강점 중심 특성화	5년 (2014~2018)	전문대 (대학)	연구재단
연구 역량 강화	BK21플러스 사업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과 연구인력 양성	7년 (2013~2020)	대학원 (사업단)	연구재단
학부 교육 육성	ACE사업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확산	4년 (2010~)	학부 (대학)	대교협
사회 수요 맞춤	PRIME사업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한 학과개편	3년 (2016~2018)	학부 (대학)	연구재단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 (CORE)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 학 육성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인재양성	3년 (2016~2018)	학부, 대학원 (대학)	연구재단
기타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대입전형 간소화 등 개선 유도	1년 (2014~)	학부 (대학)	대교협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보통교부금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4조 6,976억 4,200만원이 증액된 47조 7,121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보통교부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통교부금	41,639,909	41,299,191	43,014,480	47,712,122	4,697,642	10.9

자료: 교육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9개 항목 중 방과후학교사업비는 2017년 기준 8,171억원이 교부되었고, 그 중 초등돌봄교실은 3,152억원이 교부되었다. 초등돌봄교실 사업비는 오후돌봄(2,556억원), 저녁돌봄(307억원), 방과후학교 연계돌봄(106억원), 돌봄교실 시설비(183억원)으로 구분된다.

나. 분석의견

저녁돌봄 참여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고 5인 이하 소수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의 비율이 41%에 이르지만,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제외한 돌봄교실 기본운영비는 오히려 저녁돌봄이 높은 수준인 바, 저녁돌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운영시간에 따라 17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과 22시까지 운영되는 저녁돌봄으로 구분된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501-300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돌봄은 학생수 기준 2014년 22만명에서 2016년 23.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녁돌봄은 2014년 2만명에서 2016년 1.2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1실당 평균 학생 수를 비교하면 오후돌봄은 20명 전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저녁돌봄은 2014년 10명에서 2016년 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저녁돌봄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저녁돌봄 참여학교 1,600개교의 41.3%인 661개교가 5인 이하 소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2014	2015	2016
오후돌봄교실 (~17:00)	학교	5,938	5,972	5,998
	교실	10,966	12,380	11,920
	학생	221,310	239,798	238,480
	실당 학생 수	20.2	19.4	20.0
저녁돌봄교실 (~22:00)	학교	1,834	1,693	1,600
	교실	2,018	1,916	1,847
	학생	20,189	16,248	12,488
	실당 학생 수	10.0	8.5	6.8

자료: 교육부

또한, 2017년 기준 저녁돌봄의 지원단가는 1,536만원으로 오후돌봄 지원단가(2,368만원)의 약 65%수준이나, 오후돌봄에 부가적으로 투입되는 프로그램운영비 및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기본운영비만을 비교하면 오히려 저녁돌봄에 지원되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단가]

구 분	오후돌봄	구 분	저녁돌봄
간식비 (저소득층 무상제공)	500만원	급식비 (저소득층 무상 제공)	840만원
수용비	308만원	수용비	120만원
안전관련 운영비	120만원	안전관리 등 보조인력활용	576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080만원		
재료비	360만원		
합 계	2368만원	합 계	1536만원

주: 1실 기준의 연간 운영비

자료: 교육부

한편, 현재 초등학생 대상 저녁돌봄사업으로는 위 초등돌봄교실 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2018년 예산액 1,542억원) 등 지역돌봄기관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출·퇴근시간(6~8시), 초등방과후(17~22시)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 병원이용 등 긴급상황 발생시의 일시·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2018년 예산액 9억 2,500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수요조사와 초등(저녁)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서비스 연계체제를 마련하는 등 저녁 돌봄 수요자가 해당 지역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련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¹⁾은 ①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②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며, ③사회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고, ④대학이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개선 유도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45억 6,100만원 증액된 58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45,900	54,379	54,379	58,940	4,561	8.4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운영 성과가 미흡하여 중간평가에 탈락한 대학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되는 경우에 단순히 입학사정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재선정 대학에게 평가결과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 계획('16.2.26)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16.3.~'18.2., 1년+1년)으로, 사업시행 1년 후('17년) 중간평가를 거쳐 하위대학(10교 내외)에 대해서는 추가선정평가 대상으로 하되, 신규 경쟁공모를 거쳐 2년 차 추가 지원학교를 선정(중간평가 탈락대학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232-304

이에 따라 2017.4월 중간평가를 통해 수도권(대형)에서는 고려대·연세대가,²⁾ 수도권(중소형)에서는 성신여대·대진대가, 지방(대형)에서는 충남대·영남대·부산대가, 지방(중소형)에서는 군산대, 한국교원대 9개교가 각 그룹 내에서 하위평가를 받아 추가선정평가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추가선정평가 시 중간평가 탈락 대학을 포함한 총 46개교가 경쟁하였고, 고려대와 연세대를 포함한 12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나, 고려대는 22.7억원으로 2017년 전체 지원 대학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8.8억원으로 중간평가에 따른 계속 지원 대학의 평균 지원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는 평가목적, 평가지표, 평가자료 등 자체가 서로 다른 별도의 평가이고, 중간평가와 추가선정평가 유형 I의 예산지원기준치는 동일한 산출식으로 하였으며, ‘2017년 채용사정관 규모×45백만원×채용사정관인건비 사용가능비율의 역수×대학규모계수×신분안정화 인센티브 계수’로서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 규모가 사업비 배분 시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7년도 고교교육 정상화사업 사업비 배분기준]

항목	중간평가	추가선정평가	
		유형 I (일반)	유형 II (지방중소형)
지원액	예산지원 기준치×평가순위계수 (최대·최소지원금 조정)	좌동	좌동
예산지원 기준치	2017년 입학사정관규모×45백만원× 입학사정관 인건비 사용가능비율의역수×대학규모계수×신분안정화 인센티브 계수	좌동	3.5억원(지원기준치)× 대학규모계수
평가순위 계수	150~75%	100~85%	115~85%
최대·최소 지원금	최대: 대학별 신청액 최소: 2017년 채용사정관 규모×45백만원	좌동	최대: 5억원 최소: 2억원

자료: 교육부

그러나, 고교교육 정상화사업 평가지표 중 입학사정관과 관련된 부분은 전체의 20% 내외에 불과함에도 사실상 지원금의 규모가 입학사정관의 규모와 연동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계속지원 대학과 추가선정평가로 재선정된 대학 간 지원금액이 역전되는 것은 중간평가를 통한 환류(feedback)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선정대학과 계속지원대학 간 지원액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전형계획 및 운영 (60)	1.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40)	■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규모 및 운영의 적절성(30) - 학생부위주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 (학생부종합전형) 제출서류·평가자·평가절차 등 평가과정의 적절성, 전형 안내 노력 등 -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교과성적의 실질 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10) - 전형별 수능최저기준 설정의 적절성 ■ 대학별 고사의 합리적 운영(-10, -6~0) - 대학별 고사 선발 비율의 적절성,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수준 및 범위 내 출제 기준 위반 여부, 전형 안내 노력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6~0) - 특기자전형 선발 비율의 적절성, 특기자전형 실시 필요성, 선발학과의 적정성
	2.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운영(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규모의 적절성(5)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적절성(5) -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관점에서 운영되는지 여부
	3.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10)	■ 대입전형 간소화 노력(5) - 모집요강 등 전형 설명자료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이해 용이성 등 ■ 전형 공정성 확보 노력(5) - 제적·기피·회피 규정 및 적용 절차, 적용례 - 유사도가 높은 경우 처리 절차, 적용례
전형 운영여건 (20)	4. 입학사정관 확충 등 대입전형 여건(20)	■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 및 향후 확충 계획(8) ■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성 현황 및 향후 제고 계획(8) ■ 입학사정관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 및 계획(4)
사업계획 (20)	5. 사업계획 및 사업비집행계획의 적절성(20)	■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14) ■ 예산 계획의 타당성(6)
'15년 선정교 실적평가(-2~+2)		■ 사업추진의 충실도, 사업추진 성과 등(-2~+2)
총 계		100(±2)

자료: 교육부

가. 현 황

나노디그리운영 사업¹⁾은 4차산업분야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온라인 강좌 및 현장실습 등을 묶어 운영하는, 기업 수요에 맞춘 산업 연계 단기교육과정(6개월 내외)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출연금 내 고유사업이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2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나노디그리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평생교육진흥원출연	10,001	14,407	14,407	9,900	△4,507	△31
나노디그리운영	0	0	0	2,592	2,592	순증

자료: 교육부

예산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핵심직무 발굴 및 세부직무능력평가방식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교육과정당 약 5천만원씩 총 10개 과정을 지원하고, 나노디그리 운영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예산 산출 내역]

항목	내용
신규 과정개발 및 평가	
－ 협의체 운영	230백만원×1식=230백만원
－ 과정개발 및 평가	48.8백만원×10개과정×4개직무*=1,952백만원 * 1개 과정 당 과목 4개 정도 예상
나노디그리 운영 시스템 개발 및 도입	
－ 운영 시스템 개발	100백만원×1식=100백만원
－ 시스템 인프라 도입	310백만원×1식=310백만원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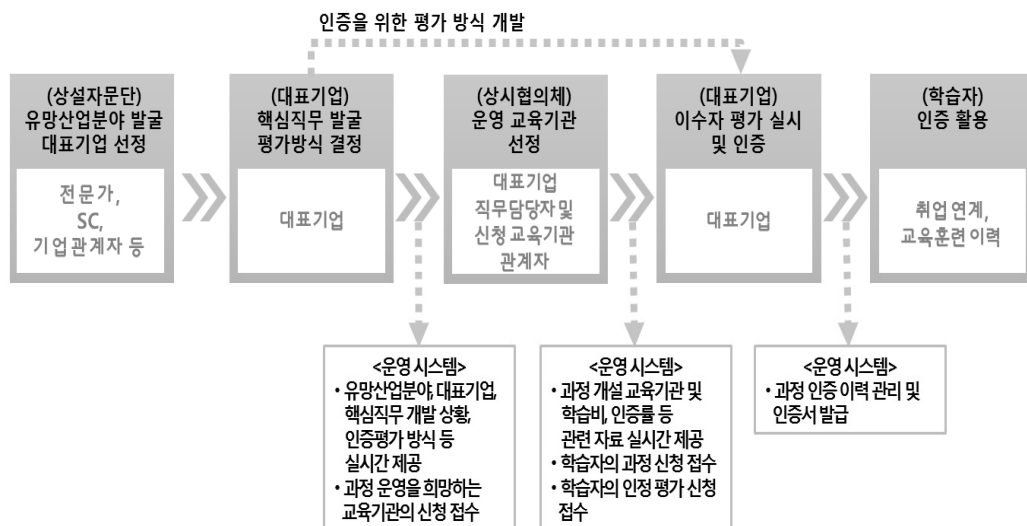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4135-300

나. 분석의견

나노디그리(Nano-degree)운영 사업은 효과성 및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나노디그리의 운영 절차 및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① 미래유망 산업분야 선정 및 핵심직무 발굴·제시 ② 교육기관의 나노디그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③ 기업의 인증 평가 및 인증 결과의 활용 ④ 정보 공개 및 학습자 권익 보호 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교육부는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분야를 제안하고 직무능력 인증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흐름도]



자료: 교육부

그런데, 교육부는 나노디그리 사업 외에도 직업현장과 교육·훈련 간 미스매치 (mismatch) 해소를 위해 계약학과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나노디그리가 ‘기업’이 핵심직무능력을 제안하고 과정 이수자의 실제 직무능력 평가·인증까지 담당하며,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절차를 기업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산업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취업연계교육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취업연계교육 제도 대비 한국형 나노디그리의 특징]

구분	사회수요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직업훈련과정	한국형 나노디그리
대상	(전문)대학생	고등학생, (전문)대학생, (전문)대학 졸업자	구직자, 재직자	(전문)대학생, 구직자 및 재직자 ※과정에 따라 대상자 특화
운영기관	(전문)대학	기업 등	직업훈련시설	대학·전문대학(폴리텍),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기준	학기제 (학점 당 15시간 이상)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사운영기준	NCS교육과정	- 교육기관 자율 구성, 과정 이수 기준 없음 - 단기(6개월 내외)로 운영
교육내용	기업 요구 내용	산업현장 실무내용 (기업보유기술)	산업(기간, 전략, 서비스), 교양 과 정 등 다양	기술혁신에 따른 4차산업분야에 집중
평가인증	(전문)대학-기업 약정에 따라 평가	기업 등이 1, 2차 에 걸쳐 직무능력 및 자격, 학위 평가	교육기관이 과 정 이수 여부 평 가	- (교육기관) 이수 여부 평가 - (기업) 직무능력 평가 → 나노디그리 발급 여부 결정 - (구직자) 취업 연계
결과활용	취업 연계, 학위 취득	취업 연계, 자격 획득, 학위 취득	구직, 승진에 활 용	(재직자) 교육훈련 이력 관리 ※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예정 (19년 개정 추진)
정부역할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지도·감독	운영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제시, 지도·감독	기관 심사	자문단 및 협의체 운영 지원 → 나노디그리 초기 운영 여건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
기업역할	교재 개발, 학생 조기 선발 기준 확립 등 프로그램 전반	제도 참여 신청,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학습근로자 선발	재직자 훈련 참여 지원	직무능력 제안, 교육 결과 평가 (나노디그리 발급)

주: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제도로 (채용조건형)계약학과, (취업약정형)주문식 교육과정, LINC+(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포함

자료: 교육부

그러나, 대표적인 취업연계제도인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별 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과로서,²⁾ 특히,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산업체 참여 확대로 그 중 상당수는 취업이 보장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기존 유사사업에 비하여 나노디그리를 통한 취업연계 등이 보다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2) 2017년 4월 기준 322개 대학, 822개 계약학과에 17,023명이 재학 중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요 운영 예]

대학명	학과명	산업체
경북대	모바일공학 전공	(주)삼성전자
고려대	나노포토닉스공학과	LG이노텍
	나노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부산대	차세대 기관학과	삼성전기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주) 삼성전자
	이동통신전력전자공학과	삼성전기
	글로벌건설엔지니어링학과	삼성물산
연세대	지식서비스보안	(주)안랩 등
	광과학·공학 협동과정	LG이노텍
충남대	차세대 기관학과	삼성전기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LG화학
	소프트웨어대학원프로그램	LG전자
한양대	차세대전력변환시스템공학과	삼성전기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현대자동차 등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부는 위 과정을 통해 취득한 나노디그리의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대표 기업의 직무능력 인증서를 취업·교육훈련에 활용하거나 학위 취득 과정에 학점으로 인정(2019년 이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노디그리 활용 방안]

○ (취업 연계) 나노디그리 인증자 중 일부를 대표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청년고용지원 사업과 연계 추진 ※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 등 청년고용지원 사업과 연계 방안 검토 - 대표기업과 협력하여 대표기업 관련 산업체 및 동일 산업 분야 취업 연계 활용 유도를 위한 홍보 ○ (교육훈련 실적 활용) 재직자의 경우, 해당 기업의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 유도 ※ SC/RC³⁾ 등과 협조하여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 노력 ○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및 (전문)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대학의 제도 개선 유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9.上)
--

자료: 교육부

3) SC: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 RC: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리되는 등록자격이 2만 7천여개, 국가자격이 162개, 국가기술자격이 527개, 공인민간자격이 99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검정하거나 공인하는 형태가 아닌 자격(나노디그리)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즉, 교육부는 나노디그리 운영 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취업연계 등 측면에서의 효과성 및 노동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학창업펀드 사업¹⁾은 대학 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대학생들의 창업 붐 유도를 위해 장기적으로 창업 지원에 대한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대학 내 자체적·자발적인 창업 지원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대학창업펀드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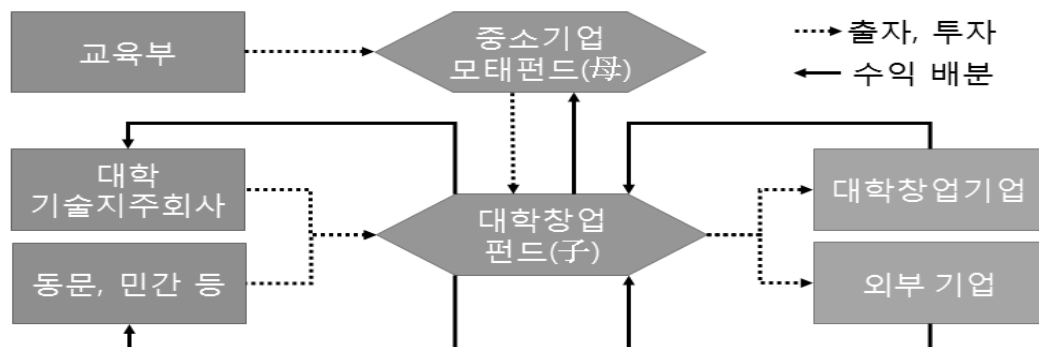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대학창업펀드	0	12,000	12,000	15,000	3,000	25

자료: 교육부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매칭 출자(정부 3 : 대학 등 1)하고, 사업 운영 관리는 한국벤처투자(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에서 담당한다.

[대학창업펀드 운영 구조]



자료: 교육부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238-306

나. 분석의견

교육부가 설정한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상태로서 더 이상 목표치를 높게 설정할 수 없는 바, 지원받은 창업기업의 평균 생존율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당시에는 별도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2018년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이는 모태펀드 출자 약정액을 사업 예산액을 나눈 수치이다. 교육부는 예산이 전액 출자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100%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한다.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4	'15	'16	'17	'18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00	모태펀드 매칭조합 선정 결과	선정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자료: 교육부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 측정방법 및 목표치 설정근거]

- 측정산식 : 모태펀드 출자 약정률 = 모태펀드 출자 약정액 / 사업 예산액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및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18년 하반기
 - 측정수행기관 : 한국벤처투자(주)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모태펀드 출자 결정된 자조합
-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해 '17년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이 전액 출자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100%로 설정

자료: 교육부

한편, 2017년 대학창업펀드 신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지주사 11개, 개인 1개의 총 12개 조합이 302.5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요청(2017년 예산액은 120억원)하여 이미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상황이며,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상황에서 100% 이상으로 목표치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창업펀드 신청 접수 및 선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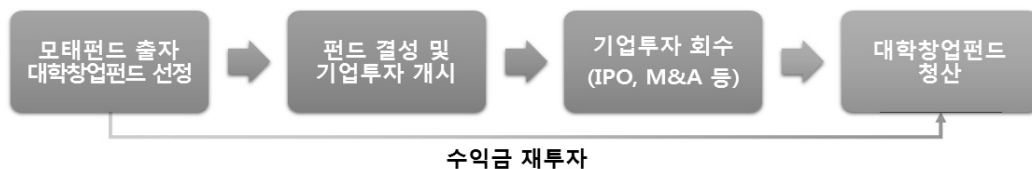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 번	유형	업무집행조합원 (기술지주회사)	조 합 명	모태출자 요청액	대학 등 부담액	결성 예정액
1	기 술 지주형	강원지역대학연합	지 스타 플러스 투자조합	7.5	2.5	10
2						
3						
4		삼육대학교	SUH 글로벌 1호	15	5.0	20
5						
6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케이이룸 개인투자조합	18	7.0	25
7						
8		부산지역대학연합	부산연합 제2호 개인투자조합 (선정)	22	8.0	30
9						
10		연세대학교	연세기술지주 대학창업기업 투자조합 (선정)	22.5	7.5	30
11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창업 제1호 투자조합 (선정)	22.5	7.5	30
		포스텍	포스텍 Challenge Seed 투자조합	30	10	40
		전남대학교	NUC-4 대학창업투자조합(선정)	30	10	40
		전북지역대학연합	제1호 JB미래가치개인투자조합	30	12	42
		서울대학교	서울대 대학창업 펀드 (선정)	30	20	50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창업 엔진 투자조합	45	30	75
12	전 문 투자형	황○○	○○○ 캠퍼스펀드1호	30	10	40
합 계				302.5	129.5	432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5년간 투자한 후 6년차~10년차까지 투자액을 회수하기 때문에 5년차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기간 동안은 산출(output) 또는 결과(outcome)지표로서의 성과지표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학창업펀드 운용 절차]



자료: 교육부

그렇지만, 현 성과지표로는 위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를 받은 대학창업기업의 초기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의 생존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지 여부 등을 보조지표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²⁾

2) 창업기업은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좌초하는 경우가 많아 3년 후 생존율이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위 사업은 Death Valley단계에 있는 대학 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마련 등을 통한 사업 성공가능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여 대학 내 창업 기업들의 성공 궤도 진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 현 황

교육급여 사업¹⁾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대비 30억 2,800만원이 증액된 1,3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교육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급여	118,159	128,216	128,216	131,244	3,028	2.4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방식 차이로 인해 수혜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바, 제도 간 연계를 위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적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주 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 교육부, 시·도교육청('15.7~)	교육부,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 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 예산 (’17년)	총 2,540억원	시·도교육청 교특회계 7,781억원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기초수급자, 법정차상 위 등 포함)
지원 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연 133.5만원) - 고교 교과서(연 9.35만원) - 중·고 학용품비(연 5.41만원) - 초·중·고 부교재비(연 4.12만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고교 학비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 원비: 연 170만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 비만 지원 - 초·중·고 급식비(연 63만원) - 초·중·고 방과후수강권(연 60만원) - 초·중·고 교육정보화지원 - (PC 설치, 인터넷통신비 연 21만원 등)
지원 방식	- 기초수급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교과서대 및 학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해 당 학교로 송금	- 납부금을 3월에 선 납부, 대상자 선정 시 4~5월에 환급 ※ 교육급여 수급자 등 법정자격 대상자는 납부유예 처리 - 이후 납부금은 학교에서 면제처리
관리 시스템	-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 교육부

그런데, 수혜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교육복지서비스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의 소득재산조사 방식이 달라, 동일 가구이더라도 소득인정액에 차이가 있어 수급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수급자에게 일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일부 민원인이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를 혼동하여, 본인이 교육급여를 신청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음.
- 신청조사와 결정통지가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신청, 조사처리, 결과 통보 각 단계에서 민원 발생
- 민원발생 시 교육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무조건 문의하라는 안내로 인해 민원인이 선정결과 문의에 대해 혼선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중합계획(18~20)」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와 교육비 동시 신청을 제도화하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연계·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득·재산 조사 방식 일원화²⁾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나 예산상의 문제³⁾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혜자 입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상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담당자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두 사업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소득인정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 재산, 공제항목과 같은 상세분류 수준에서 교육급여는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비 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계상되는 다수의 세부항목이 제외되어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있어서도 교육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1/3 수준을 적용하여 교육급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보다 완화된 교육비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예산 부담 가중 예상[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가 38만 명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국고 약 300억원, 지방비 60억 원 추가 소요(17 단가 유지 가정)]

가. 현 황

2018년도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안에 편성된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는 학교경영지원사업(지출)¹⁾의 7억 1,400만원과 이에 대응하는 기타잡수입 항목(수입)²⁾이 있다.

해당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데, 사학기관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비 수입과 사업비 지출을 각각 편성한 것이다. 사학기관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은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회계·세무·노무·자산구매·경영기획 등 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사학행정지원 연수사업(수입대체경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부문	사업명(목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지출	학교경영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694	683	683	714	31	4.5
수입	기타잡수입	756	683	683	714	31	4.5

자료: 교육부

한편, 현재 사학진흥기금의 운용 주체인 재단은 학교경영지원사업 외에도 기금을 재원으로 직원 보수, 수용비 등 경비를 집행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지원,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건설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수행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관련 수입과 경비를 기금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사학진흥기금 2274-450

2) 코드: 사학진흥기금 69-691

[사학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수입내역		
		2015년	2016년	2017년(예상)
맞춤형 컨설팅지원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15년 신규)	99 (3개교)	119 (3개교)	158 (6개교)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지원 (16년 신규)	-	161 (2개)	60 (6개)
대학생 공공· 연합기숙사 건설지원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후 준공까 지(약 2~3년) 설계, 건설관리, 공정 관리, 민원 관리 지원(16년 신규)	-	79 (4개)	229 (6개)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기금운용계획에 계상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맞춤형 컨설팅지원, 사학기관 재산관리지원,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건설지원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재단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3)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을 사용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와 국회는 재단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였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맞춤형 컨설팅지원 등 3개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금 재원으로 경비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개수)·보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총계주의⁴⁾란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제한되며,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 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⁵⁾

특히, 위 사업 중 대학생 공공연합기숙사 건설지원 사업은 재단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행복기숙사지원사업(용자) 세부사업⁶⁾과도 관련성이 있는데 해당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행복기숙사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행복기숙사지원사업	113,099	101,790	101,790	111,620	9,830	9.7

자료: 교육부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도록 상기 3개의 사업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행정부 감독과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5)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5, p. 166.

6) 코드: 사학진흥기금 2271-300

가. 현 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5년에 설립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고용주 부담금, 피고용자 부담금, 기금운용수익금, 보유부동산 운영사업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지급여의 지급 및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회관운영 사업¹⁾은 보유회관의 사무실 등을 임대·운영하는 사업으로, 회관 관리, 회관 개·보수,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2018년에 1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12억 9,3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상기 증액 금액은 주로 서울회관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18년도 회관운영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회관운영사업	12,175	15,407	15,407	16,700	1,293	8.4

자료: 교육부

상기 회관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2018년 계획안 상 건물대여료 수입²⁾으로 2017년 대비 31억 7,200만원 증액된 13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7년 계획 시에는 서울회관의 재건축을 2017년부터 가정하여 건물대여료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였으나, 2018년 계획안에서는 2018년까지 정상 운영 후 2019년에 재건축 착공을 가정하여 건물대여료 수입이 2017년 계획 대비 증가하였다.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033-302

2) 코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1-512

[2018년도 건물대여료 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건물대여료	14,186	10,222	10,222	13,394	3,172	31.0

자료: 교육부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서울회관을 비롯한 아래의 5개 회관을 보유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보유 회관 현황]

(단위 : m²)

	서울회관	오류회관	둔산회관	부산회관	나주회관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부산 부산진구	전남 나주
개관일자	1982.10.12	1994. 8. 4	1998.10.23	1996. 9. 4	1914.12.15
대지면적	10,142	2,145	5,645	2,469	10,897
건물연면적	41,608	25,418	46,049	31,711	9,917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8년 계획안 상 각 회관 별 건물대여료 수입과 회관운영사업 비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회관 중 서울회관에서의 건물대여료 수입이 52억 4,600만원으로 전체 건물대여료 수입 133억 9,400만원의 39.2%를 차지한다.

[2018년 계획안 상 회관 별 건물대여료 수입, 회관운영사업 비용]

(단위: 백만원)

		서울회관	오류회관	둔산회관	부산회관	나주회관	합계
건물대여료 수입	임대료	3,748	413	1,125	1,625	33	6,944
	관리비	1,498	827	2,253	1,823	49	6,450
	합 계	5,246	1,240	3,378	3,448	82	13,394
회관 운영사업 비용	회관관리	3,578	1,539	2,689	2,428	1,189	11,423
	회관개보수	0	0	320	614	0	934
	임대보증금반환	2,863	429	509	542	0	4,343
	합 계	6,441	1,968	3,518	3,584	1,189	16,700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회관운영사업 및 건물대여료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건물대여료 수입 중 서울회관으로부터의 수입은 2018년까지 정상운동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이나, 2018년 서울회관 재건축 추진과 2017년 서울회관의 입점업체별 계약해지가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할 때, 해당 수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건물대여료 수입 계획안에 포함된 서울회관의 수입은 임대료 37억 4,800만원, 관리비 14억 9,800만원을 포함한 총 52억 4,600만원이다. 이는 2016년 결산 금액 63억 1,200만원의 83.1% 수준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서울회관의 재건축 착공 시점을 2019년으로 계획하여 2018년 말까지 정상 운영을 가정하되, 일부 건물대여료 수입의 감소를 가정하여 이와 같이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회관 연도별 건물대여료 수입]

(단위: 백만원, %)

	결산					예산(안)		
	2012	2013	2014	2015	2016 (a)	2017	2018 (b)	비율 (b/a)
임대료	4,730	4,819	4,571	4,063	4,187	1,870	3,748	89.5
관리비	2,238	2,273	2,229	2,094	2,125	965	1,498	70.5
소계	6,968	7,092	6,800	6,157	6,312	2,835	5,246	83.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편, 2018년 계획안 상 회관운영사업 비용에 반영된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43억 4,300만원 중 서울회관은 28억 6,300만원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8년 말 서울회관의 보증금 잔액 추정액 41억 8,100만원³⁾에서 입주 업체들의 이전 시기를 조사하여 2018년도의 이주 비율 68.5%를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⁴⁾

3) 해당 입주 업체의 계약만료일은 대부분 2017년 12월 31일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1년에 한 번 씩 임대계약을 갱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4) 2018년 말 보증금 잔액 추정액 41억 8,100만원 × 68.5%(금액기준) = 28억 6,300만원. 나머지 31.5%의 임대보증금은 2019년 반환 예정이다.

[2018년 회관운영사업 비용 계획안 중 임대보증금 반환액]

(단위: 백만원)

서울회관	오류회관	둔산회관	부산회관	합 계
2,863	429	509	542	4,343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그런데 아래 표 [2017년 중 계약해지 입주 업체 현황(7월 말 현재)]에서와 같이 2017년 입주 업체 계약 해지는 원래의 계약 만료일이 2017년 12월 31일임에도 연초부터 7월 까지 평균적으로 발생하였다.

[2017년 중 계약해지 입주 업체 현황(7월 말 현재)]

(단위: 천원)

	보 증 금	비 고	계약만료일
A사	37,041	1월 해지	2017.12.31
B사	23,370	1월 해지	2017.12.31
C사	96,061	2월 해지	2017.12.31
D사	35,742	4월 해지	2017.12.31
E사	247,790	4월 해지	2017.12.31
F사	32,280	4월 해지	2017.12.31
G사	7,310	4월 해지	2017.12.31
H사	2,617	4월 해지	2017.12.31
I사	60,973	4월 해지	2017.12.31
J사	1,304	5월 감평	2017.12.31
K사	1,413	6월 해지	2017.12.31
L사	54,917	7월 해지확정	2017.12.31
M사	9,580	7월 해지확정	2017.12.31
N사	9,580	7월 해지확정	2017.12.31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8년 계획안 중 서울회관으로부터의 건물대여료 수입은 2018년까지 정상운동을 가 정하여 산정하였으나, 2017년 입주 업체 계약 해지 현황을 볼 때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수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감소하고 있는 회관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서울회관을 비롯한 5개 회관의 회관운영 수익률을 살펴보면, 2012년 4.62%에서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0.54%로 4.08%p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의 수익 감소는 서울회관에서 20억 4,000만원(△33.29%p)으로 가장 컸으며, 부산회관에서 △3.29%p의 수익률이 감소하였고, 오류회관에서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전체 회관의 운영수익률 0.54%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2016년 운용 수익률 3.89%에 크게 미달하는 수익률이며, 이는 2016년 평균 정기예금금리(1.54%)와 1년 만기 국고채 금리(1.43%)에도 미달하는 수치이다.

[보유회관 연도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분		2012 (A)	2013	2014	2015	2016 (B)	차이 (B-A)
서울 회관	손익	3,415	3,404	2,285	1,333	1,375	△2,040
	운영수익률	34.15	3.92	1.40	0.82	0.86	△33.29
오류 회관	손익	△101	△436	△354	△778	△849	△748
	운영수익률	△0.55	△2.04	△1.47	△3.30	△3.70	△3.15
둔산 회관	손익	837	630	1,048	273	13	△824
	운영수익률	2.30	1.35	1.85	0.49	0.02	△2.28
부산 회관	손익	1,945	241	1,766	1,201	915	△1,030
	운영수익률	6.12	0.72	5.27	3.64	2.83	△3.29
전주 회관	손익	△756	△1,106	△1,084	△9,843 (△244)	-	-
	운영수익률	△3.96	△5.88	△5.92	△72.25 (△1.79)	-	-
손익 합계		5,340	2,733	3,661	△7,813 (1,786)	1,456	△3,884
전회관 운영수익률		4.62	1.32	1.24	△ 2.71 (0.62)	0.54	△4.08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		6.42	3.94	2.65	3.72	3.89	-
정기예금금리		3.48	2.81	2.45	1.78	1.54	-
국고채(1년만기) 금리		3.12	2.66	2.44	1.70	1.43	-

주: 1. 나주회관은 주로 본부사옥 용도로써 회관운영수익률에서 제외함

2. 전주회관은 2015년 매각하였으며, () 안은 전주회관 매각손실 미반영 시 수치임

3. 정기예금금리는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임

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대전 오류회관은 매각, 대전 둔산회관은 용도변경, 서울회관은 재건축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회관 운영 수익률 제고를 위해 상기 제시한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서울대학교병원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국립서울대학교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교육부의 국립대병원지원 사업¹⁾은 국립대병원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병원경영 적자폭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으로 병원의 재정적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60억 2,700만원(11.3%) 감소한 472억 2,7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해당 세부사업의 서울대학교병원과 관련한 내역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 사업을 위해 65억 2,300만원, 서울대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6억 3,300만원, 서울대병원 종합진료 지원동 건립을 위해 20억 3,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립대병원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병원지원	58,744	53,254	53,254	47,227	△6,027	△11.3
서울대병원 지하복합 진료공간 개발	1,102	4,880	4,880	6,523	1,643	33.7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950	1,266	1,266	633	△633	△50.0
서울대병원 종합진료 지원동 건립	0	1,463	1,463	2,032	569	38.9

자료: 교육부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235-301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진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상기 서울대학교병원과 관련한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2016년과 2017년 8월 말까지의 실집행율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2016년의 실집행률이 0%이며, 2017년 8월 말까지의 실집행률은 10.7%이다. 또한, 2017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사업의 2017년 8월 말까지의 실 집행률은 30.1%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관련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2017 (8월 말)				2018 예산안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예산 현액 (a)	집행액	실 집행액 (b)	실 집행률 (b/a)	
서울대병원 지하복합진료공간개발	1,102	1,102	921	83.6	5,061	5,061	5,061	100.0	6,523
서울대병원 본관 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950	950	0	0.0	2,216	238	238	10.7	633
서울대병원 종합진료지원동 건립	0	0	0	-	1,463	500	441	30.1	2,032

자료: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 지연 등으로 인해 2017년 공사계약 및 사업비 집행이 지연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2017년도 예산 산정 시, 2018년까지의 예상 공정률은 60% 였으나, 2018년 예산안 산정시에는 2018년까지 52%수준의 공정률을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종합진료 지원동 건립 사업 또한 2017년 예산 산정시에는 2018년까지의 예상 공정율을 82.7%로 예상하였으나, 2018년 예산안 산정시에는 2018년까지 공정율을 33%로 조정 하는 등, 일정이 종전 계획보다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²⁾

2) 서울대학교병원은 이에 추가하여,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과 서울대병원 종합진료 지원동 건립 사업 모두 2017년 말 까지 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 설명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관련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지연 원인 및 사업 일정 변경 내역]

	사업 진행 지연 원인 등			
서울대병원 본관수술장 확충 및 리모델링	○ 의생명연구원 리모델링이 지연되어 본관 수술장 확충 공간 확보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및 사업비 집행이 지연됨.			
	2017년 예산 편성 시 사업 일정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일정	
	기간	진행계획	기간	진행계획
	‘16.7월 ~ ’16.12월	1단계 공사	~ ’17. 10월	평면계획 / 설계
	‘17.1월 ~ ’17.12월	2단계 공사	‘17.10월 ~ ’17.12월	시공사 선정 등
	‘18.1월 ~ ’18.12월	3단계 공사	‘17.12월 ~ ’18.10월	1단계 공사
	‘19.1월 ~ ’19.12월	4단계 공사	‘18.11월 ~ ’19.6월	2단계 공사
			‘19.7월 ~ ’19.11월	3단계 공사
	2017, 2018년 각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연도별 예상 공정률			
	(단위: %)			
서울대병원 종합진료 지원동 건립		2017	2018	2019
	2017 예산	46.0	60.0	100.0
	2018 예산안	0.0	52.0	100.0
	○ 현재 설계시행 중으로 2017년도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었으며, 2018년 말에는 당초 계획과 공정률을 맞추어 예정임.			
	2017년 예산 편성 시 사업 일정		2018년 예산안 편성 시 사업 일정	
	기간	진행계획	기간	진행계획
	~ ’17.09월	평면계획/설계	~ ’17.12월	평면계획/설계
	‘17.9월 ~ ’17.12월	시공사 선정 등	‘18.1월 ~ ’18.3월	기존시설 철거 및 시공사 선정
	‘18.1월 ~ ’19.12월	공사	‘18.3월 ~ ’19.12월	공사
	‘20.1월 ~	운영개시	‘20.1월 ~	운영개시
	2017, 2018년 각 연도 예산안 편성 시 연도별 예상 공정률			
	(단위: %)			
		2017	2018	2019
	2017 예산	14.0	82.7	100.0
	2018 예산안	0.0	33.0	100.0

자료: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병원지원 사업의 경우 아래 표 [국립대병원지원 사업 연도별 실집행 내역]에서와 같이 상기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각 대학병원에서 연례적으로 사업 지연과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2014~2016년간 이월액이 90억 6,100만원에서 171억 8,500만원 발생하였으며,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을 또한 73.6~86.0% 수준이다.

[국립대병원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기관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d/c)
2014	54,215	54,215	51,248	13,932	65,180	49,329	15,430	421	75.7
2015	52,100	52,100	51,589	14,605	66,194	48,755	17,185	254	73.6
2016	58,744	58,744	58,744	6,322	65,066	56,005	9,061	0	86.0
2017. 8	53,254	20,623	20,623	9,526	30,149	20,288	0	0	67.2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각 국립대병원의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과 사업 지연을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및 관련 예산의 철저한 집행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국립치과대학설치법」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1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2018년 예산안에는 국립대병원지원 세부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경북대치과병원 개원준비비 지원사업 31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는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2016년 6월 1일 자로 개원하면서, 초기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개원 준비비(개원 후 운영비 3개월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경북대치과병원 개원준비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대병원지원	58,744	53,254	53,254	47,227	△6,027	△11.3
경북대치과병원 개원준비비	0	0	0	3,119	3,119	순증

자료: 교육부

이는 아래와 같이 2016년 6~8월간의 인건비 20억 6,175만원과 재료비 3억 5,899만원, 복리후생비, 외주용역비 등의 6억 9,925만원의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총 31억 1,998만원의 개원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개원 후 운영비 3개월 분 상세 내역]

(단위: 천원, %)

		2016년			
		6월	7월	8월	합계
인건비 (급여)	겸직교수	112,772	125,569	117,363	355,703
	레지던트	236,531	197,719	182,893	617,143
	인턴	95,126	75,408	74,562	245,096

안옥진 예산분석관(ojahn@assembly.go.kr, 788-3731)

1) 코드: 일반회계 2235-301

(단위: 천원, %)

		2016년			
		6월	7월	8월	합계
	임상강사	15,831	10,473	10,461	36,765
	일반직	223,310	224,858	169,050	617,218
	임시직	42,228	42,468	67,520	152,217
	근로학생	5,403	16,209	15,992	37,603
	소계	731,200	692,704	637,840	2,061,745
재료비	진료재료비	81,773	128,405	137,620	347,798
	일반약품비	3,943	2,623	4,628	11,194
	소계	85,716	131,028	142,248	358,992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27,613	95,718	117,534	240,865
	외주용역비	47,617	38,008	51,294	136,919
	전기수도료	23,545	25,529	27,841	76,916
	지급수수료	17,395	22,170	23,147	62,712
	부서운영비	14,450	14,500	14,300	43,250
	교육훈련비	1,823	16,856	1,273	19,952
	수선비	558	4,584	12,847	17,988
	접대비	5,852	5,800	6,090	17,742
	세금과공과금	7,476	6,299	3,520	17,295
	행사비	0	5,467	10,765	16,232
	연료비	2,166	5,587	5,744	13,497
	환경관리비	2,861	3,996	2,854	9,710
	통신비	4,435	2,749	2,236	9,420
	지급임차료	2,585	2,585	2,558	7,728
	여비교통비	894	445	433	1,772
	보험료	1,666	0	0	1,666
	차량유지비	664	701	0	1,365
	잡비	520	429	340	1,289
	도서인쇄비	719	480	0	1,199
	소모품비	260	340	519	1,118
	연구비	240	160	0	400
	광고선전비	0	212	0	212
	소계	163,338	252,615	283,294	699,247
합 계		980,255	1,076,346	1,063,382	3,119,984

자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나. 분석의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개원준비비 지원사업은 초기 운영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나,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2016년도 당기순이익 발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제2항으로, 이에 따르면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대치과병원 개원준비비 지원 근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자료: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그런데 상기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개원 초기 3개월인 2016년 6~8월간 경영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수익은 46억 3,607만원, 의료비용은 31억 1,998만원 발생하여 의료이익(의료수익 - 의료비용)이 15억 1,609만원 발생하였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개원초기 3개월 의료손익]

(단위: 천원)

		2016			
		6월	7월	8월	합계
의료수익 (A)		1,551,754	1,455,700	1,628,620	4,636,074
의료비용 (B)	인건비	731,200	692,704	637,840	2,061,745
	재료비	85,716	131,028	142,248	358,992
	관리운영비	163,338	252,615	283,294	699,247
	소계	980,255	1,076,346	1,063,382	3,119,984
의료이익 (A-B)		571,499	379,354	565,237	1,516,091

자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개원 후 2016년 전체 손익계산서 검토 시에도 2016년에는 8억 5,422만원의 의료이익(의료수익 - 의료비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부금, 이자손익 등 의료외수익·비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반영한 후 최종적으로 5,803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²⁾은 실제 발생한 금액이 아닌 세금 절감 목적으로 향후에 지출할 금액을 미리 비용처리 한 것으로서, 이를 감안 시 2016년에는 실제 8억 5,196만원의 당기순이익(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이 발생하였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6년(6~12월)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2016
의료수익 (A)		9,720,649
의료비용 (B)	인건비	5,874,415
	재료비	837,049
	관리운영비	2,154,969
	소계	8,866,433
의료이익 (C=A-B)		854,216
의료외수익 (D)		229,735
의료외비용 (E)		231,98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손익 (F=C+D-E)		851,96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G)		91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후 당기순손익 (F-G)		△58,038

자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6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6년 6~12월 간의 현금흐름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부터 22억 3,7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장기차입금 8억원을 상환 하는 등의 결과로 총 현금은 11억 5,559만원 증가하였다.

2) 이는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제4조②항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의 세금절감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이 고유목적사업이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한 준비금을 비용처리 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기의 실제 발생 비용이 아닌 향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비용 처리한 것으로, 2015년 12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의 당기순손익을 각각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6년(6~12월)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201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A)	2,237,81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B)	△282,224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C)	△800,000
현금의 증감 (A+B+C)	1,155,595

자료: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016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앞서 언급하였듯 예산 지원 관련 근거법 상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는 우선적으로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6년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의 당기순이익 발생과 현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지원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³⁾

3)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은 이와 관련하여, 조기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개원초기의 긴축경영 방침에 의거하여 경직성비용 지출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치과병원 건립 차입금 60억원의 채무 승계, 향후 임시직의 정규직화 및 연차적 인력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진료공간 부족(외래진료 공간의 경우 부산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 전북대치과병원 대비 60~72% 수준)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하였다.

가. 현 황

특별교부금¹⁾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²⁾ 및 제5조의2제1항³⁾에 따라 교육 관련 지역현안, 국가시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1,4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1조 8,45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별교부금	1,521,593	1,632,545	1,704,017	1,845,768	141,751	8.3

자료: 교육부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코드: 일반회계 1502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

2. 해당 연도의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이 사용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잔액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한국교육개발원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Wee⁴⁾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Wee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 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Wee 프로젝트 운영	770	770	770	580	△190	△24.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은 Wee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학교 단위에 설치된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된 학생상담지원시설인 Wee센터나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Wee스쿨을 지원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개발원이 동 사업에서 추진 중인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은 다수의 전문상담교사 등이 전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Wee 관련 운영기관의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생 대상 진단·상담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선진 외국의 교육부, 학교, 민간기관 등을 방문하여 해당 기관의 종사자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는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2017년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 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은 인원 54명을 대상으로 대만과 일본에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은 태국에서, 2017년은 영국의 런던 등에서 외국의 대학, 상담센터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을 의미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방문국가 (도시)	방문기관	인원	일자	집행액
2015	대만 (타이페이, 카오슝, 짜이시)	○ 타오위엔장선생기금회 ○ 국립중정대학 ○ 카오슝 학생상담센터 ○ 운산중고등학교	27명	2015.1.26.(월) ~ 1.30.(금)	90
	일본 (오카야마, 히로시마, 후쿠오카)	○ 오카야마 소자시약소 ○ 소자시립중학교,소학교 ○ 히로시마대학 ○ 히로시마시립칸온중학교	27명	2015.1.26.(월) ~ 1.30.(금)	
2016	태국 (방콕-1팀)	○ [공통] 유네스코 ○ [공통] 예백국제대학교 ○ [팀별] 교육부 ○ [공통] BROMSGROVE 국제학교	28명	2016.1.25.(월) ~ 1.30.(토)	90
	태국 (방콕-2팀)	○ [공통] 유네스코 ○ [공통] 예백국제대학교 ○ [팀별] Chula Demonstration School ○ [공통] BROMSGROVE 국제학교	28명	2016.01.25.(월) ~ 1.30.(토)	
2017	영국 (런던)	○ 교육부 ○ London Steiner School ○ Red Ballon Leaner Centre ○ Summer Hill ○ Kidscape ○ Off Centre	26명	2017.2.19.(일) ~ 2.25.(토)	9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연수 방식의 전문성 강화 사업은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며, 단기간 교육으로 참여자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연수 사업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예산의 한계상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의 목적은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지만, 2015~201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국외연수 사업기간이 예산 관계상 4박 5일, 5박 6일 등 단기간 교육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의 연수로 상담교사 등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동 해외연수 사업은 일정에 다수의 문화탐방, 관광일정이 포함되어 해외연수로 인한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국외연수 사업 일정 중 공식 일정으로 해외 교육상담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도 있지만, 다수의 문화탐방, 관광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15년 일본의 경우 구리시키 미관지구, 히로시마 평화 대공원 등을 관광하는 일정이 있었으며, 2017년 영국에서는 내셔널 갤러리, 트라팔가 광장, 벨슨제독 기념탑 등을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다.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 중 문화탐방·관광(예시)]

연도	국가(도시)	문화탐방·관광일정
2015	일본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	○ 구리시키 미관지구(1.27) ○ 히로시마 평화 대공원, 원폭돔(1.28) ○ 히로시마성(1.29)
2017	영국 (런던, 캠브리지)	○ 내셔널 갤러리, 트라팔가 광장, 벨슨제독 기념탑(2.22) ○ 런던 과학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2.22) ○ 타워브릿지, 런던브릿지, 테이트모던(2.2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교육청 해외출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연수 사업방식을 국외연수보다 Wee 프로젝트 운영 관계자인 학교 진단·상담 교사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내 교육 과정 등의 방안으로 개선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연수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글로벌 교육지원(ODA)³⁾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개도국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원조 수요조사, 모델 발굴 및 사업지원을 통해 맞춤형 교육원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출연금 등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9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글로벌 교육지원(ODA)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글로벌 교육지원(ODA)	4,531	4,241	4,241	14,075	9,834	231.9

자료: 교육부

동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사업출연금으로 실시하는 ODA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대학, 연구기관 등을 공모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공모를 통해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지원 및 확산: 교육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ODA 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과제의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2018년까지 각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5~2017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과제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

이동엽 예산분석관(bimil0@assembly.go.kr, 788-4681)

1) 국제학생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 for Development

3) 코드: 일반회계 4333-302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지원 및 확산 주제의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예산안
예산액	50	50	50	5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동 과제의 성과지표를 수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중심으로 하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출한 2017년 ‘캄보디아의 OECD PISA-D 사업 지원 및 확산: 교육 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과제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PISA-D 성공적 시행을 위한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의 목표치는 현지 연수,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투입·과정지표에 해당한다.

ODA 개발컨설팅 사업의 성과는 해당 국가의 정책 반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도 해당 개발컨설팅 사업 내용이 캄보디아의 교육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반영한 지표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해당 과제 성과지표 현황]

지표명	기준치	목표치	목표치 산출 근거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PISA-D 성공적 시행을 위한 평가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0	최소 3회 이상	현지 연수, 컨설팅 및 세미나 개최 계획 이행 여부	○ 현지 연수 및 컨설팅 개최, ○ 국내외전문가 협의회 개최 ○ 세미나 개최 ○ 총 횟수
캄보디아 국가수준 보고 자료	0	발간여부	본 사업의 결과물	○ 캄보디아 국가수준 보고자료 발간 여부
만족도	0	4.0 이상	5점 척도의 설문문항 사용	○ 워크숍 참여자 만족도 평균 (5점 척도)
역량 강화 및 인식 변화(이해도)	0	4.0 이상	5점 척도의 설문문항 사용	○ 워크숍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인식변화 (5점 척도) 평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현황	0	참가여부	참가여부	○ 국제 자문단 회의 동반 ○ 참가 여부
결과 보고서	1종	100%	현지조사 및 지원	○ 보고서 제출 건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향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 관련 개발건설링 ODA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를 투입·과정지표에서 수원국의 실질적 교육 정책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¹⁾은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정부 출연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399억 8,900만원 증액된 3조 9,957억 7,200만원이다.

[2018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894,596	3,945,043	3,955,783	3,995,772	39,989	1.0
국가장학금	3,604,595	3,634,621	3,634,621	3,684,541	49,920	1.4
대학생 근로장학금	250,602	262,911	273,651	262,939	△10,712	△3.9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8,115	18,910	18,910	19,688	778	4.1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1,284	28,601	28,601	28,604	3	0.0

자료: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지원 대상을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과 연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방의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다자녀 가구 우대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2018년도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원유형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7 예산 (A)	2018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국가장학금	3,634,621	3,684,541	49,920	1.4
- 국가장학금 I유형	2,891,700	2,941,600	49,900	1.7
- 국가장학금 II유형	400,000	400,000	0	0.0
- 지방인재 장학금	80,000	80,000	0	0.0
- 다자녀 장학금	260,000	260,000	0	0.0
- 사업운영비	2,921	2,941	20	0.7

자료: 교육부

나. 분석 의견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은 소득 연계형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소득구간별 차등지원을 대학에 권고하고 있으나, 기초~2분위를 제외한 분위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원칙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연계형 장학사업 취지에 맞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중 국가장학금 I유형 사업은 소득연계형 장학사업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소득구간 9~10분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²⁾

[국가장학금 I유형 사업의 소득분위별 1인당 지원금액]

(단위: 만원)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520	390	286	186	120	67.5	67.5

자료: 교육부

2) 소득구간(분위)은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계값을 조정하여 공표(총 10분위)하며, 소득구간은 1분위가 최저소득 계층으로 구간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상승한다.

반면 대학연계형 지원사업인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및 한국장학재단 실행계획에서 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기타 중분위 학생에 대한 지원 여부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어,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라는 국가장학금 사업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래 [표]와 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에서 기초~2분위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의 중복지원 금지에 따라 기초~2분위 학생의 지원 금액에 상한선이 있고, 국가장학금 II유형이 대학의 자율적 장학금 지원액에 대한 대응투자적인 성격에 따라 대학에 선발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의 소득분위에 따른 1인당 지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2년 1학기	0.57	0.52	0.48	0.45	0.51	0.47	0.40	0.36	0	0	0
2012년 2학기	0.62	0.71	0.70	0.68	0.76	0.70	0.63	0.60	0	0	0
2013년 1학기	0.44	0.31	0.28	0.27	0.25	0.23	0.20	0.19	0.17	0.77	0.69
2013년 2학기	0.49	0.48	0.63	0.71	0.73	0.69	0.68	0.66	0.66	1.01	1.04
2014년 1학기	0.46	0.35	0.32	0.30	0.29	0.30	0.29	0.28	0.26	1.11	1.12
2014년 2학기	0.48	0.40	0.38	0.40	0.41	0.43	0.45	0.43	0.41	0.94	0.94
2015년 1학기	0.47	0.37	0.36	0.33	0.33	0.33	0.32	0.31	0.29	0.41	0.20
2015년 2학기	0.68	0.68	0.70	0.92	0.90	0.99	0.98	0.99	0.97	0.85	0.85
2016년 1학기	0.47	0.40	0.38	0.33	0.34	0.33	0.31	0.29	0.27	0.39	0.25
2016년 2학기	0.60	0.59	0.61	0.81	0.80	0.86	0.79	0.71	0.69	0.66	0.61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은 소득분위에 따른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고, 대학에게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선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소득구간 9, 10분위 학생에게도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시 저소득 계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대학 측에 권고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소득구간 2분위 대상자에게는 실제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 지원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정책적 수단은 부재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소득분위별 1인당 평균지원액간 편차가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일정수준 의무화하고 낮은 소득분위 학생부터 낮은 등록금 수혜 학생 수가 늘어가도록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¹⁾은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어 옴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소외계층 생애주기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영재교육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8년도 12억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영재교육지원 사업	290	276	276	1,562	1,286	465.9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 교육 지원 사업	0	0	0	1,275	1,275	순증
영재교육기초 및 정책연구수행	130	135	135	180	45	33.3
국가창의인재관리 시스템 운영	100	100	100	100	0	0
전국 영재교육관계자 정책 협의회 및 홍보자료 발간	30	21	21	7	△14	△66.7
영재교육 국가정책 및 현안지원 사업	30	20	20	0	△20	△1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이라는 목적이 유사한 사업이 국고와 특별교부금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우려되는 바, 신규로 추진되는 국고사업의 목적 및 사업방식을 차별화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031-305

신규사업은 소외계층 영재 일부(시도별 약 30명씩 총 510명)를 선발하여 최대 9년 간 맞춤형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 개요]

- (지원대상 학년) 공교육 상의 영재학교 대상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등 510명 (시도별 약 30명)
 - ※ 최대 지원기간은 9년 이내로 하며, 평가주기는 별도 정함
- (지원영역)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발명 영역 등
- (지원 자격 기준)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나, 경제적·사회·문화·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기 어려운 학생
 - ※ 소외계층 기준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탈북민 등도 포함)
- (지원내용) 17개시도×30명×250만원

학교급	지원 내용		지원 학생수
	인지적 역량 (학기 중 프로그램)	정의적 역량 지원 (방학 중 프로그램)	
초등학생(4~6학년)	연중 150만원	연 1~3회 100만원	510명
중학생(1~3학년)	(체험 및 학습 멘토링	(리더십 캠프, 진로	
고등학생(1~3학년)	프로그램 등 운영)	멘토링 등 운영)	

- 예산안 산출 내역
 - 인건비(석사급/위촉직) 120백만원(2.3백만원×12개월×4명+법정부담금)
 - 학기 중 프로그램(학습 멘토, 체험형 프로그램 등) 645백만원 (17개시도×30명×1.3백만원)
 - 방학 중 프로그램(진로 멘토, 리더십 프로그램 등) 510백만원 (17개시도×30명×1백만원)

자료: 교육부

한편, 위 신규 사업과 별도로 교육부는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12조2) 및 「제3차 영

2) 「영재교육법」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에 따라 국가시책 특별교부금³⁾으로 영재교육기관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2017년 기준 11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즉, 현재 영재교육은 국고로는 국가 영재교육 정책 방향 제시 및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창의인재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 종합 현황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지원⁴⁾을 하고 있고, 특별교부금으로는 영재교육 연수과정 운영, 창의·융합형 영재 프로그램 개발 등 영재교육 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은 기존 특별교부금 사업과 비교할 때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현장 지원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고, 추가적으로 일부 영재를 선발하여 리더십 캠프 및 학습·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다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특별교부금과 유사한 사업을 국고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운용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외계층 영재지원사업(신규)와 특별교부금사업 비교]

구 분	국고 사업(신규)	특별교부금 사업
재 원	국비(1,275백만원, '18기준)	지방비(1,100백만원, '17기준)
사 업 주 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위탁)	시도교육청
예 산 배 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시도별 차등 지원 (46백만원~73백만원)
수요자	소외계층 영재 일부 (510명 예정)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 전체 (16,120명, '16기준)
사 업 내 용	맞춤형 영재교육프로그램* 지원 * 리더십 캠프, 학습·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체험교육 등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에 소외계층 영재학생 운영비* 지원 * 영재학급 교육비(수강료 등) 소외영재 사이버영재교육 운영
지 원 기 간	지속 지원가능(최장 9년(초4~고3) 추진)	기간제한 (특별교부금 사업은 최대3년 지원 원칙)
차이점	국고사업은 소외계층 중에 잠재력 있는 학생 일부를 선발하여 지원	특교사업은 소외계층 영재교육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

자료: 교육부

3)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중 '8. 과학수학교육 활성화' 내 단위사업인 영재교육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4) 영재교육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참조(p.130)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지속적 추진이 제한되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고, ② 전국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되며, ③ 학생의 꾸준한 관리와 중앙단위 교육·연수 등을 통한 질 제고가 어렵고, ④ 2018년 특별교부금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시·도 자율성 강화로 사업의 선택·운영을 담보할 수 없어 소외계층에 대한 시·도간 격차가 발생하여, 국고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비록, 소수 영재에 대해서 장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는 기존 특별교부금 사업과 목적 및 사업방식을 차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사업¹⁾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가 학교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의 내역사업이다. 2017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1,875	1,282	1,282	1,282	0	0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110	110	110	110	0	0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	1,054	1,040	1,040	1,040	0	0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680	108	108	108	0	0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	31	24	24	24	0	0

자료: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사업은 총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교육과정심의회 운영(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연구(중장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차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운영(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대국민 교육과정 정보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은 국가차원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업이며,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즉, 교원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세욱 예산분석관(sewook@assembly.go.kr, 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031-302

나. 분석의견

교원연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사업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 교원연수 관련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원연수 사업은 위 국고 사업 외에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내 ‘2015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별 현장교원 연수(34억원),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17억원) 등 총 102.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2017년 기준). 그 중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는 강사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고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국고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 비교]

구분	국고(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특별교부금(2015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
재원	국비(108백만원, '17 기준) - 교과별 핵심교원 연수(108백만원)	-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1,712백만원) 지방비(10,258백만원, '17 기준) - 권역별 교육과정 총론 연수(200백만원) - 통합사회, 통합과학 신설과목 연수(4,946백만원) - 시도별 현장교원 연수(3,400백만원)
사업주체	교육부(직접 수행)	시도교육청
목적	국가 차원 핵심교원 연수 (선도교원 연수를 위한 강사요원 양성)	시도교육청별 선도교원 연수 (현장교원 연수를 위한 강사요원 양성)
대상	교과별 핵심교원(108명 강사요원)	교과별 선도교원(5,202명) ※ (참고) 현장교원 연수 : 22만여명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고사업인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은 약 5,000여명에 이르는 교과별 선도교원 연수를 위한 핵심 강사요원을 양성하고 연수자료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과 차이가 있으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에서 개발되므로 현장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국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중 ‘19.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내 단위사업이다.

그러나, 국고로 양성하는 핵심교원(108명)과 시도교육청이 양성하는 선도교원(5,202명)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강사요원 양성이라는 본질적 측면은 동일하나 단지 연수대상 및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교원연수 관련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일원화하고, 국고로는 전국단위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대국민 대상 홍보 등 특별교부금과 중복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및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2조 4,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원(9.5%)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64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04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13억원, 영화발전기금 605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억원, 언론진흥기금 206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8,86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3,519억원이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2,360	60,157	60,157	67,476	7,319	12.2
- 일반회계	51,892	49,080	49,080	56,396	7,316	14.9
- 지역발전특별회계	25,757	10,436	10,436	10,436	0	0.0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711	641	641	644	3	0.5
기 금	2,240,860	2,645,179	2,645,179	2,380,370	△264,809	△10.0
- 문화예술진흥기금	78,145	240,609	240,609	61,348	△179,261	△74.5
- 영화발전기금	77,695	71,873	71,873	60,459	△11,414	△15.9
- 지역신문발전기금	409	99	99	127	28	28.3
- 언론진흥기금	12,896	20,797	20,797	20,605	△192	△0.9
- 관광진흥개발기금	803,814	1,001,888	1,001,888	885,952	△115,936	△11.6
- 국민체육진흥기금	1,267,901	1,309,913	1,309,913	1,351,879	41,966	3.2
합 계	2,333,220	2,705,336	2,705,336	2,447,846	△257,490	△9.5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5조 1,7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36억원 (11.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9,75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759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61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451억원, 영화발전기금 65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83억원, 언론진흥기금 231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9,61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574억원이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801,702	2,905,508	2,954,931	2,812,353	△142,578	△4.8
- 일반회계	1,810,449	2,012,892	2,062,208	1,975,254	△86,954	△4.2
- 지역발전특별회계	914,443	821,417	821,417	775,910	△45,507	△5.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6,810	71,200	71,307	61,190	△10,117	△14.2
기 금	2,770,588	2,791,594	2,861,719	2,360,663	△501,056	△17.5
- 문화예술진흥기금	226,073	228,226	228,226	245,114	16,888	7.4
- 영화발전기금	59,703	74,847	74,847	65,714	△9,133	△12.2
- 지역신문발전기금	9,361	9,207	9,207	8,308	△899	△9.8
- 언론진흥기금	22,398	23,195	23,195	23,132	△63	△0.3
- 관광진흥개발기금	1,075,677	1,058,575	1,128,700	960,990	△167,710	△14.9
- 국민체육진흥기금	1,377,376	1,397,544	1,397,544	1,057,405	△340,139	△24.3
합 계	5,572,290	5,697,103	5,816,651	5,173,016	△643,635	△11.1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억원(2.1%)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491억원에서 2018년 564억원으로 14.9%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104억원으로 전년대와 같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716억원에서 615억원으로 14.1% 감소하였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1,892	49,080	49,080	56,396	7,316	14.9
지역발전특별회계	25,757	10,436	10,436	10,436	0	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88,697	71,491	71,598	61,510	△10,088	△14.1
합 계	166,346	131,007	131,114	128,342	△2,772	△2.1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9,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6억원(2.5%)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2조 1,371억원에서 2018년 2조 1,171억원으로 0.9% 감소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는 8,214억원에서 7,759억원으로 5.5% 감소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716억원에서 615억원으로 14.1% 감소하였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896,435	2,087,636	2,137,059	2,117,076	△19,893	△0.9
지역발전특별회계	914,443	821,417	821,417	775,910	△45,507	△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76,810	71,491	71,598	61,510	△10,088	△14.1
합 계	2,887,688	2,980,544	3,030,074	2,954,496	△75,578	△2.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수입계획안은 3조 5,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7억원(12.5%)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402억원에서 3,481억원으로 35.6% 감소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조 4,936억원에서 1조 2,113억원으로 18.9% 감소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 5,978억원에서 1조 5,764억원으로 1.3% 감소하였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390,857	540,207	540,207	348,067	△192,140	△35.6
영화발전기금	292,402	327,374	327,374	326,198	△1,176	△0.4
지역신문발전기금	10,917	9,696	9,696	8,616	△1,080	△11.1
언론진흥기금	32,368	35,736	35,736	33,146	△2,590	△7.2
관광진흥개발기금	1,505,927	1,423,431	1,493,556	1,211,288	△282,268	△18.9
국민체육진흥기금	1,659,333	1,597,810	1,597,810	1,576,384	△21,426	△1.3
합 계	3,891,803	3,934,254	4,004,379	3,503,699	△500,680	△12.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지출계획안은 3조 5,0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7억원(12.5%) 감소하였다. 주요 기금별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402억원에서 3,481억원으로 35.6% 감소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조 4,936억원에서 1조 2,113억원으로 18.9% 감소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조 5,978억원에서 1조 5,764억원으로 1.3% 감소하였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390,857	540,207	540,207	348,067	△192,140	△35.6
영화발전기금	292,402	327,374	327,374	326,198	△1,176	△0.4
지역신문발전기금	10,917	9,696	9,696	8,616	△1,080	△11.1
언론진흥기금	32,368	35,736	35,736	33,146	△2,590	△7.2
관광진흥개발기금	1,505,927	1,423,431	1,493,556	1,211,288	△282,268	△18.9
국민체육진흥기금	1,659,333	1,597,810	1,597,810	1,576,384	△21,426	△1.3
합 계	3,891,803	3,934,254	4,004,379	3,503,699	△500,680	△12.5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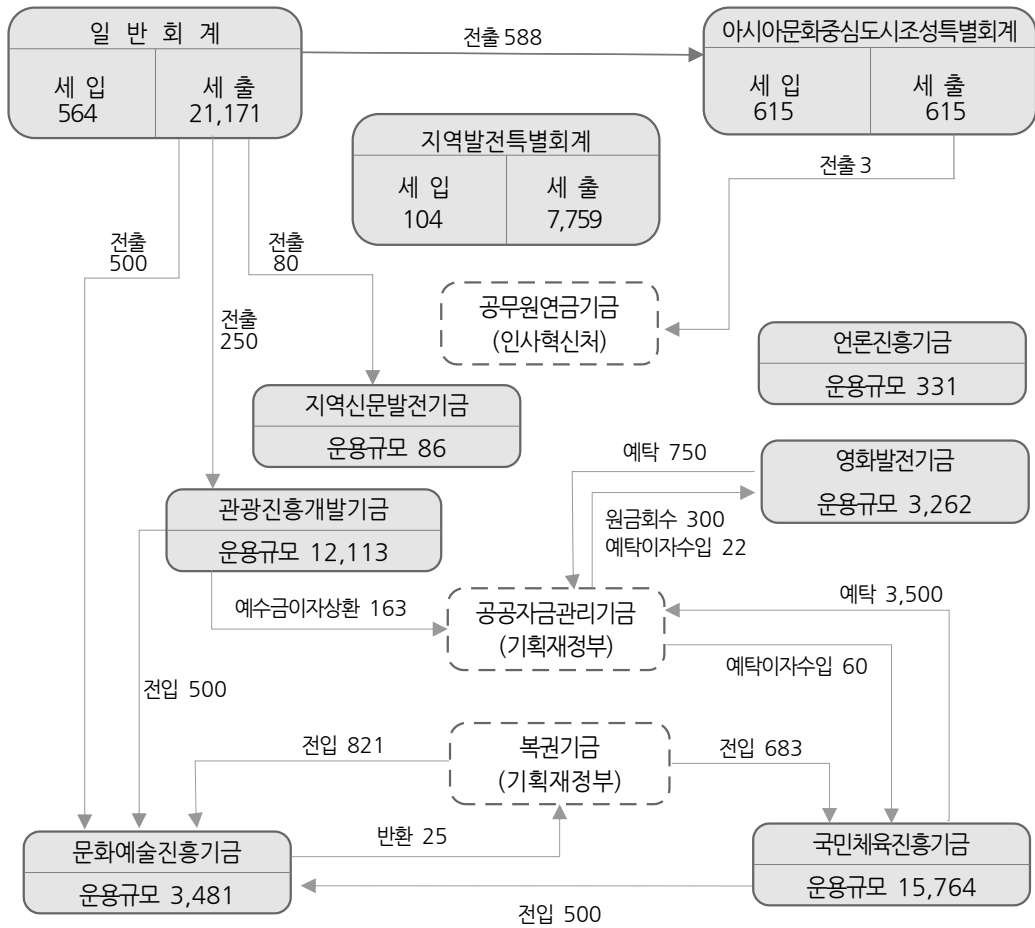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 588억원, 일반회계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80억원,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500억원,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250억원 전출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억원 전출된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5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5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821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25억원을 반환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683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 수입으로 60억원을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500억원 예탁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원금회수하고, 22억을 예탁이자 수입으로 받으며, 750억원을 예탁할 예정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이자로 163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개(총지출 기준 9개) 사업, 4,935억원(총지출 기준 343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 준공예정인 미술품 수장보존센터(청주)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되었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사업은 융복합 관광서비스 연구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관련 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어 오다가 2018년도 예산안에 처음 재정사업으로 편입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2018 예산안
일반회계(7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880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200
	4차산업혁명대비 국어 거대자료(빅데이터) 구축	1,157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운영	8,000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정보화)	1,818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50,000
	일반회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전출금	25,0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1개)	아시아문화역량강화지원(ODA)	400
관광진흥개발기금(1개)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208
국민체육진흥기금(4개)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15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원	17,432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350,000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통화금융기관으로의 예치금	34,226
합 계		493,4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② 국립해오름극장 리모델링 ③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은 완성보증계정 출연 증액 및 이차보전제도 도입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국립해오름극장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완료에 따라 공사비 편성으로 예산이 증액 되었으며, 올림픽스포츠클럽 조성사업은 공사 진행률에 맞춰 해당 예산규모가 확대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19개)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332	6,332	13,332	7,000	110.5
	국가전략프로젝트(R&D)	500	500	833	333	66.6
	예술창작활동 지원	1,939	1,939	4,177	2,238	115.4
	예술의 산업화 추진	1,948	1,948	3,039	1,091	56.0
	문화예술ODA	105	105	200	95	90.5
	아시아예술계인력양성 (ODA)	717	717	978	261	36.4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2,375	2,375	11,376	9,001	379.0
	국립춘천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836	2,836	4,566	1,730	61.0
	국립공주박물관 권역별 수장고 건립	760	760	4,126	3,366	442.9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900	900	3,749	2,849	316.6
	박물관정보서비스구축 운영 (정보화)	1,276	1,276	2,459	1,183	92.7
	국립극장 지하주차장 건립	777	777	6,381	5,604	721.2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	4,267	4,267	19,616	15,349	359.7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313	313	485	172	55.0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19,395	19,395	25,320	5,925	30.5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79	379	10,285	9,906	2613.7
	미디어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5	35	58	23	65.7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84	484	1,312	828	171.1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306	306	412	106	34.6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지역발전 특별회계 (2개)	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	1,629	1,629	6,359	4,730	290.4
	관광자원개발(생활)	239,678	239,678	254,667	14,989	6.3
문화예술 진흥기금 (3개)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107,074	107,074	118,119	11,045	10.3
	인건비(문예)	7,507	7,507	10,344	2,837	37.8
	기관운영비(문예)	3,377	3,377	6,523	3,146	93.2
영화발전 기금 (1개)	영화발전기금에서 공공자 금관리기금으로 예탁 (총괄계정)	19,000	19,000	75,000	56,000	294.7
관광진흥 개발기금 (2개)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지자체, 사회서비스)	5,117	5,117	6,735	1,618	31.6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18,750	18,750	25,077	6,327	33.7
국민체육 진흥기금 (7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3,124	43,124	54,920	11,796	27.4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	19,972	19,972	29,972	10,000	50.1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1,256	1,256	4,658	3,402	270.9
	주최단체 지원	110,654	110,654	127,409	16,755	15.1
	도핑방지활동지원	7,401	7,401	9,766	2,365	32.0
	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19,463	19,463	32,513	13,050	67.1
	올림픽스포츠컴플렉스 조성	7,767	7,767	27,372	19,605	252.4
	합 계	657,413	657,413	902,138	244,725	37.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총지출 기준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41억원(9.2%)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②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1만원 인상(6→7만원)하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③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를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및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④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금고 구축, 기초예술분야의 안정적 지원기반을 위해 문예기금 재정확보 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가 확대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콘텐츠기업을 위한 이차보전제도가 신설되어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콘텐츠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규모가 확대된 완성보증제도나 모태펀드 출자 또한 증액 편성분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신규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데, 도시재생 지역의 활동가인 ‘커넥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 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의 경우 사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약 1,370만명이나 동 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인원은 7만명으로, 사업 수혜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 조성 또한 현재 사업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도에 수행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비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규로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확대 가능성, 조성 공간의 규모 및 역할, 운영 가능 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에 콘텐츠누림터,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센터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향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공간의 기능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조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제도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¹⁾ 사업과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²⁾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문화콘텐츠 업계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금융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사업은 전년에 비해 70억원(110.5%)이 증액된 13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사업은 50억원(9.4%)이 증액된 58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금융제도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6,622	6,332	6,332	13,332	7,000	110.5
완성보증계정출연	5,000	5,000	5,000	10,000	5,000	100.0
콘텐츠기업 투융자 기반조성	1,622	1,332	1,332	1,332	0	0.0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지원	0	0	0	2,000	2,000	순증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36,000	53,000	53,000	58,000	5,000	9.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231-306

2) 코드: 일반회계 1231-322

1-1. 완성보증계정출연 증액의 효과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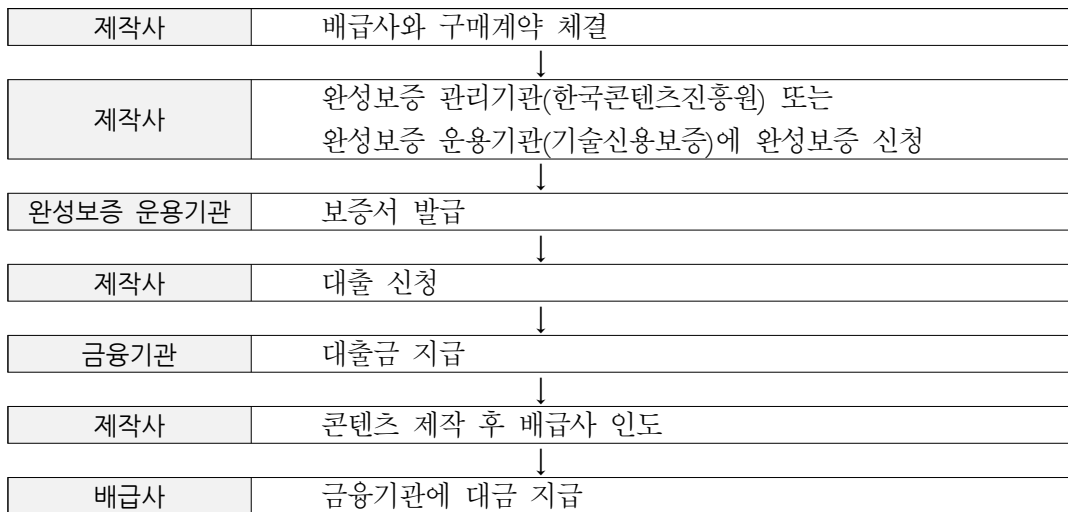
가. 현 황

완성보증계정 출연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³⁾에 따라 문화콘텐츠 제작을 담보로 하는 프로젝트성 보증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는 담보 능력이 낮은 콘텐츠 제작 기업이 콘텐츠 제작이라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민간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작사가 완성보증 관리기관(콘텐츠진흥원) 또는 완성보증 운용기관(기술신용보증)에 완성보증을 신청하면 기술신용보증은 콘텐츠 제작을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하면 향후 완성품 인도 시 배급사가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7년 4월까지 완성보증을 통해 331건, 1,886억원을 보증했으며, 보증잔액은 98건, 386억원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50억원(100%)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완성보증 진행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3)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완성보증계정 출연금 증액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완성보증계정의 기본재산⁴⁾은 162억원이며 운용배수⁵⁾는 2.4로, 보증잔액⁶⁾은 386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50억원을 완성보증계정에 출연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올해의 두 배인 10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완성보증 운용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4월
보증잔액	1	59.8	144.2	210.3	223.6	237	251	446	386
기본재산	22.5	46.0	91.2	86.8	85.9	92.1	122.1	130.6	162.0
운용배수	0.04	1.3	1.6	2.4	2.6	2.6	2.1	3.4	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출연금 증액이 기본재산의 증가로 연결되어야 하며, 운용배수도 현재 수준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정 시점의 보증 규모인 보증잔액이 기본재산과 운용배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완성보증의 사고율이 기술보증기금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증액된 출연금이 대위변제로 사용된다면 기본재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완성보증 사고율 현황]

(단위: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기금전체	5.1	5.1	4.0	4.5	4.2	4.5
완성보증	6.6	4.4	11.4	7.1	7.5	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이란 상법상 회사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본금에 해당하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기본재산은 보증공급의 규모를 결정하는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로서의 보증채무 변제를 위한 재원역할을 한다.〔중소기업청 전문용어〕

5)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으로 나눈값을 말한다.〔중소기업청 전문용어〕

6) 보증발급 후 해지되지 않고 현 시점에 남아 있는 보증금액의 총합을 의미한다.

실제로, 완성보증계정에 현재까지 정부가 출연한 금액은 총 290억원이나,⁷⁾ 2017년 4월 기준으로 기본재산은 162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정부 출연금의 일부가 대위변제에 사용되어 기본재산 적립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성보증의 운용배수가 일반 기금에 비해 낮은⁸⁾ 2.5~3.5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 역시 완성보증의 높은 사고율에 기인한다. 사고율이 높을수록 완성보증계정에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많아지므로 보증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완성보증의 높은 사고율로 인해 기본재산의 확충 및 운용배수 확대에 한계가 있어 정부 출연금의 증가가 당초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평가 및 콘텐츠평가를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완성보증의 부실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기업에게 보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⁹⁾

7) [연도별 정부출연액]

(단위: 억원)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22.3	23	54.7	0	20	20	50	50	50	29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6~7배 정도이며,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7~8배 내외이다.
(「보증기금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3. 5., p.71.)

9) 완성보증제도에 의해서 작품이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은 담보되지만 콘텐츠에 대한 작품성과 흥행성과 같은 질적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완성보증 제도들의 경우 위험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게 되기 때문에 제작자나 금융기관 모두 도덕적 해이상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급속한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영화산업 완성보증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류종호, 2010. 11., p.29.)

1-2. 이차보전 제도 도입의 적절성 검토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 기업의 운영자금 및 프로젝트 제작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차보전 제도는 정부가 금융기관 등 융자기관의 융자금리와 정책적으로 정한 융자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보전 이율을 2.0%p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20억 규모의 이차보전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기업들은 평균 3.5% 수준의 이자율을 부담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체부담 금리(예상)]

대출취급은행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업체부담
5.5%	2.0%	평균 3.5%
(2017년 기업은행 문화 콘텐츠기업 평균대출금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콘텐츠기업들은 대출승인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차보전 제도가 콘텐츠기업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금융기관에서는 융자금 회수를 위해 융자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보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콘텐츠기업들의 경우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콘텐츠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까다로운 대출심사(34.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매출액 및 재무제표 중심 기준(18.8%)’, ‘과도한 담보 혹은 보증요구(18.6%)’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이차보전 제도가 도입되어도 대출 심사 방식 등에 차이가 없는 한 기업들이 이차보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콘텐츠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시 어려움]

(단위: 개, %)

구분	까다로운 대출심사	매출액 및 재무제표 중심기준	과도한 담보 혹은 보증요구	높은 대출금리	어려움 없음	신용대출 곤란	예적금 가입요구	기타	계
응답 기업 수	150	81	80	58	32	19	5	5	430
비 중	34.9	18.8	18.6	13.5	7.4	4.4	1.2	1.2	100

자료: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금융환경 조사」, 리서치테라, 2017.2., p. 33.

즉,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형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자산으로 하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출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까다로운 대출심사나 과도한 보증 요구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기업들은 신규 제도 도입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완성보증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완성보증 사업의 보증 규모가 작아 연간 지원 건수가 많지 않다는 한계 등이 있을 뿐 아니라,¹⁰⁾ 동일 건에 대해 보증과 이차보전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부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완성보증 지원 실적]

(단위: 건, 억원)

구 분	’09~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4.		지원 합계		보증 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완성계정	66	413	36	250	40	240	67	353	94	529	28	101	331	1,886	98	386
일반계정	33	369	14	191	17	262	33	248	38	217	21	116	156	1,403	63	323
합 계	72	782	48	441	57	502	100	601	132	746	49	217	458	3,289	161	708

주: 1. 완성계정은 완성보증을 위해 정부가 출연한 계정이며, 일반계정은 은행이 출연한 계정임

2. 2013년까지 완성계정·일반계정(은행출연금) 중복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절성 검토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에 문화계정을 조성하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¹¹⁾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태펀드에 출자를 하면, 모태펀드가 자펀드에 출자를 하고 자펀드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사업으로, (주)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의 운용사이다.

문화계정 조성이 시작된 200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69개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며, 결성액은 총 1조 5,392억원이고 총투자액은 1조 8,576억원이다.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50억원을 증액한 58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투자가 영화분야에 치우쳐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출자금을 증액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펀드가 문화산업에 투자한 내역을 보면, 총 투자액 1조 8,576억원 중 영화분야에 9,130억원(49.15%)가 투자되었고, 다음으로는 공연(2,337억원, 12.58%), 게임(727억원, 3.92%) 순이다.

[문화계정 자펀드의 분야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영화	공연	게임	음원	전시	애니/캐릭터	방송 콘텐츠	유무선 콘텐츠	출판/만화	기타	합계
금액	913,018	233,695	72,768	35,529	28,591	145,732	138,178	1,500	6,980	281,578	1,857,569
비율	49.15	12.58	3.92	1.91	1.54	7.84	7.44	0.08	0.38	15.16	100.0
건수	1,635	510	160	149	63	254	180	1	26	308	3,286

주: 1. 2017년 6월 말 기준

2. 기타 투자내역: 모든 지분투자, 프로젝트(팬미팅, 페스티벌, 기타 미디어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1)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관광계정, 스포츠계정에 출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영화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영화 이외의 분야에 투자할 유인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장르별 투자수익률 현황]

(단위: 백만원, 배)

구분	영화	공연	게임	음원	전시	애니/ 캐릭터	방송 콘텐츠	유무선 콘텐츠	출판/ 만화	기타	합계
투자 원금	592,472	166,540	46,722	25,943	20,951	48,117	88,610	1,500	2,980	88,383	1,082,218
회수 총액	612,198	153,013	33,014	25,909	15,970	23,886	86,056	1,303	2,147	77,020	1,030,516
수익 배수	1.03	0.92	0.71	1.00	0.76	0.50	0.97	0.87	0.72	0.87	0.95

주: 1. 2016. 9월 말 기준

2. 수익배수는 회수 총액을 투자 원금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클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음(1 미만일 경우 회수액이 투자 원금보다 작아 투자가 손실을 보는 상황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동 펀드의 조성 사유가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은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므로, 다양한 장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영화 이외의 장르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에 영화계정을 별도로 조성하여 영화발전기금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출자하고 있는데,¹²⁾ 영화 분야를 위한 펀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문화계정의 영화 분야 투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49.15%)에 육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화 분야에 대한 투자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한 후 출자금 증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12)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현황]

(단위: 억원,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안)	합계
출자액	60	50	100	100	100	100	180	100	790
실 투자액	164	242	338.1	220.1	215.2	196.9	198.5	-	1574.8
투자편수	21	28	32	37	40	30	29	-	217

주: 2017년 실 투자액은 2017.8월까지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및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문화 진흥 사업¹⁾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내역사업으로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 지방문화원 연합회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원 연합회 지원,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45억원),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2억원), 지역문화실태조사(1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172억 2,200만원(47.5%) 감액된 189억 7,200만원이다.

[2018년도 지역문화 진흥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문화 진흥	7,688	36,194	36,194	18,972	△17,222	△47.5
지역문화 역량 강화	1,205	19,103	19,103	2,491	△16612	△87.0
한국문화원 연합회지원	1,733	1,560	1,560	1,716	156	10.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	300	300	300	300	0	0.0
생활문화 활성화	1,000	1,150	1,150	1,150	0	0.0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3,000	12,921	12,921	8,115	△4,796	△37.1
문화적 도시재생	0	0	0	4,500	4,500	순증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0	0	0	200	200	순증
지역문화실태조사	0	0	0	100	100	순증
안산문화광장 활성화	150	0	0	0	0	0.0
영호남 문화인재 양성	300	0	0	0	0	0.0
지역문화교류 활성화	0	800	800	400	△400	△50.0
도청이전터 개발	0	360	360	0	△360	순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533-300

2-1.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예산 검토 필요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진흥의 내역사업인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2)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 제4조3)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의 연합회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을 위해 1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세부 편성 내역]

- 지역문화 계발·활용 사업 : 252백만원(42개 프로그램*×6)
 - * 청소년지역창조프로그램, 향토문화공모전 등 지역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 활성화 : 360백만원(16개 시도연합회×22.5)
-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컨설팅) : 65백만원(3회×21.6)
- 지방문화원 홍보 발간 사업 : 285백만원(15회×19)
 - * 우리문화발간, 향토사대중서, 연감 등 제작·보급
- 지방문화원 균형발전 지원 : 54백만원(2회×27)
 - * 대한민국문화원상, 지방문화원 활성화 등 행사 및 연구 지원
- 연합회 사업관리 등 경상운영비 : 700백만원(12월×5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에서는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업도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수립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된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다.

한편,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사업 내의 ‘지역문화 계발·활용 프로그램’에서는 공모를 통해 지방문화원을 선정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공모를 통해 32개 문화원을 선정하여 500~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도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
향토사 지킴이	과천문화원	6,000
2017 청소년 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서천문화원	5,000
생활연극 만들기 - “함께 어루만지다.”	곡성문화원	5,000
장보는 동(童)안	임실문화원	8,000
대구 중구의 인물, 문화콘텐츠 사용설명서	대구중구문화원	6,500
만화로 그려볼까? 제주신화전설 이야기!	제주문화원	6,000
2017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_셀위나나니?	인천중구문화원	5,000
우리 마을 특과원	구미문화원	5,000
연극으로 펼쳐보는 포천 설화	포천문화원	6,000
얼쭈! 동래학춤, 고고한 자태에 빠지다	동래문화원	5,000
우리동네 계양, 나의 미디어 일기	계양문화원	5,000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남동문화원	5,000
백제의 무사를 깨워라	청주문화원	4,950
청소년 큐레이터 학교	시흥문화원	6,500
2017 평택문화나눔미 '인문과학탐구부'	평택문화원	6,000
랩으로 태어나는 품바 타령	무안문화원	6,500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사하문화원	5,000
청소년지역문화창조	여수문화원	6,000
과학문화 멘티사업(과학문화로 샤샤샤~!!)	유성문화원	5,000
동막골 장동 소리 탐색대	대덕문화원	5,000
우리동네 실화로 엮어보는 '청소년 북콘서트'	고양문화원	6,500
광산청소년버스킹 '리얼스토리'	광산문화원	5,000
우리동네 역사유적탐방 -탄본체험과 향토서적 만들기-	양평문화원	5,000
만경강 굽이굽이 어깨동무 친구들과 자연속으로	완주문화원	6,500
2017년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거창문화원	6,500
나는 우리동네 문화해설사	김포문화원	5,000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단위: 천원)

사업명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
2017년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장흥문화원	5,000
디카시창작수업 - 나도시인, 디카시로 표현하는 시적 감상	고성문화원	6,500
2017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공주문화원	5,000
강원감영 FUN FUN한 이야기	원주문화원	6,000
청소년지역문화창조프로그램	창녕문화원	5,000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청소년 무용마당	논산문화원	6,500

자료: e-나라도움(www.gosims.go.kr)

즉, 지방문화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이 지방문화원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8호5)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위탁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에서의 지방문화원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공모 여부 등 지방문화원 선정 방식은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와 연관성이 없으며, ② 「지방문화원진흥법」의 취지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업무를 지방문화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방문화원이 운영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은 개별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동 사업에서는 지방문화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나 역량강화 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2.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가. 현 황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⁶⁾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비 45억원이 편성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까지 70여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선정하면, 이 중에서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사업 대상 지역 15곳과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지역 15곳을 각각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사업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기록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문화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생 사업,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사업 등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커넥터’를 선발하여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개요]

사업목적	지역 고유 역사·문화자산 및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지원형태	일반회계 / 민간경상보조(보조사업자 미정) * 지자체 50% 매칭
사업기간	’18년~
지원대상	’18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대상 지역 중 도시문화 기록화의 시급성·필요성 ·문화적 역량이 열악한 지역 및 문화적 도시재생 선도 지역
사업내용	도시문화 기록 및 활용 : 지역 관련 사진, 영상, 구술, 자료 등 아카이브 구축 [1,500백만원(100백만원 x 15개소)]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 프로그램 지원 : ‘문화재생 커넥터’를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에 파견 및 이들이 문화재생 컨설팅과 마중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3,000백만원(200백만원 x 15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서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 분석의견

사업 계획을 보다 철저히 마련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2월까지 대상 지자체를 확정하고 3월부터는 예산 교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선정기준 및 수행방식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계획]

계 획	지자체 대상 사업 공고(17.12월 말~)→ 사업계획서 접수(18.1월) → 심의 및 확정(18.2월) → 예산 교부 및 사업 추진(18.3~12월)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시범 사업 최종 선정지(70곳) 중에서 ▲사업 필요성, ▲사업 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사업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수행방식	성공적인 문화도시 재생을 위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시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문 컨설팅, 사업평가 및 피드백 지원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관리 ※ 전문기관 역할 문화적 도시재생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확정된 사업대상 계획수립 지원, 중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사업 관리 기능 담당

주: 2017. 10. 12.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신규로 수행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컨설팅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어 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인 핵심관광지 육성 사업⁷⁾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은 2016년에 선정 되었으나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PM단의 구성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7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지자체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등 사업 수행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문화재생 커넥터 활동의 경우 기존의 지역 문화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초 현재 커넥터의 자격 요건, 활동 범위, 활동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지역문화시설 및 지역공동체에서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한 사

7)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163-304

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⁸⁾ 문화재생 커넥터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역문화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준비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여 대상 지역 선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지역문화시설 현황]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시설수	128개소 (개관81개/조성74개)	229개소	100개소
사업시작년도	2014년	2005년	2004년
주요사업	-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추진 -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역 생활문화 확산지원	- 지역문화계발·활용 사업 - 지방문화원 네트워크 활성화 -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 - 지방문화원홍보 발간 사업	- 생활프로그램 지원 - 사업운영자 교육 - 컨설팅 워크숍 - 생활문화포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3.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가. 현 황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은 서소문공원 일대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서소문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74억 9,600만원이며, 국비 부담율은 50%이다.

2018년에는 공사비 81억 300만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원 등 8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사업개요]

- 목 적: 조선후기 역사와 문화가 집적된 장소인 서소문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사업위치: 서울시 중구 의주로2가 16-4 서소문공원 일대
- 사업기간: 2014년 ~ 2018년(4년)
- 사업규모: 대지 21,363㎡, 연면적 24,781㎡
- 총사업비: 57,496백만원(지자체 50%) *국유지 무상사용분(212억원) 제외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자치단체자본보조/서울특별시(중구청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지방비(구비)가 전액 미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으로 진행되는 자치단체보조사업이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구비가 전액 미확보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구비 미확보 사유는 사업 선행절차 미이행을 사유로 구의회에서 구비 예산의 의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⁹⁾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해당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청은 동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집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¹⁰⁾

[추진 경위]

- 2012. 9. 서소문역사문화기본계획 수립
- 2013.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 2013. 10. 서울시 투자심사
- 2013.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 2014. 1.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위원회 심의 통과
- 2014.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근린공원→역사공원)
- 2016. 11. 본공사 착수
- 2016. 12. 2017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제출(부결)

자료: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구비가 전액 미확보 되었으나 지방비가 미확보 되더라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¹¹⁾ 2017년도에 편성된 국비 129억원은 교부된 상태이며, 교부된 국비 및 시비 중 40억원이 공사비로 집행되었다.

한편,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추후 지방비가 미확보 될 경우 차년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내 구비의 매칭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0) 「제23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2017.2.

11)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한다.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2017. 1., p.119.)

3-1. 수입지출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의전당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다.²⁾ 예술의전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³⁾에 따라 설립되어 기관 내 오페라하우스, 음악당, 한가람미술관, 한가람디자인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공연, 음악, 미술, 서예 등 예술사업과 시설물 대관사업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9억 2,700만원(27.3%)이 증액된 8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술의전당지원	9,522	7,069	7,069	8,996	1,927	27.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은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예술사업, 부대사업, 대관사업, 임대사업수입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에 발생할 예술의전당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예상되는 지출 418억 4,600만원에서 자체수입분 328억 5,000만원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1631-304

2) 이 사업은 과목구조개편으로 2018년 예산안부터 문화예술단체운영지원 세부사업(코드: 일반회계 1631 - 300)에서 분리되어 신규 세부사업으로 신설되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37조(예술의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전당을 둔다.② ~ ⑤ (생략)

을 제외한 수지차 금액을 89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다.

자체수입을 전년 대비 축소 편성한 사유는 2017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술사업 등이 과다 계상된 점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상 사업수입액을 2016년도 결산 실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에 식음료, 매표시스템운영사업의 철수에 따른 부대사업수입 감소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자체수입 감소분에 따라 사업비도 조정되어 전반적인 수입·지출 총액이 감소하였다.

[2018년도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예산안(b)	차이 (b-a)	비고
지출 (A)	인건비	8,244	9,125	10,170	1,045	17년도 증원인력 인건비(44), 경상비에 계상된 4대보험경비 (정규직·무기계약직대상) 이관(757) 등
	경상비	16,473	19,278	18,521	△757	4대보험경비 이관(△757)
	사업비	16,483	17,086	13,155	△3,931	예술사업, 부대사업 비용을 결산실적에 맞추어 조정
	기타	△4,717	-	-	-	처분전 결산잉여금(△)
	계	36,483	46,189	41,846	△3,643	
자체 수입 (B)	이월결산잉여금	△2,029	79	-	△79	
	사업수입	28,907	38,126	32,767	△5,359	
	(예술)	8,379	14,805	10,016	△4,789	
	(부대)	5,729	6,505	5,074	△1,431	예술사업, 부대사업 수입을 결산실적에 맞추어 조정
	(대관)	11,105	11,527	12,917	1,390	
	(임대)	3,450	4,222	4,082	△140	
	(기타)	244	1,067	678	△389	
	사업외수입	83	215	83	△132	이자수입을 결산실적에 맞추어 조정
	계	26,961	38,420	32,850	△5,570	
보조금(A-B)		9,522	7,069	8,996	1,927	

자료: 예술의전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예술의전당은 자체 수입 및 지출경비 부족으로 발생한 결산상 손실분을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 또는 새로운 자원 마련 등 예술의전당의 수지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결산 기준으로 예술의전당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사업수입의 정체(연평균 0.3% 증가)와 인건비, 경상경비의 부담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가(연평균 19.3% 증가), 그리고 사업비의 축소(연평균 11.9%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2016년 기준 △54억 4,900만원의 결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예술의전당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수입	1. 자체수입	35,858	36,229	32,559	33,197	28,989	△5.0
	- 사업수입	28,872	31,104	32,436	33,070	28,906	0.3
	예술사업	7,245	7,657	8,776	8,848	8,379	4.0
	부대사업-식음료	5,494	6,028	5,599	5,504	1,266	△19.0
	부대사업-주차	2,226	2,453	2,379	2,266	2,370	1.7
	부대사업-직영매표	828	1,104	1,170	1,131	1,158	9.6
	부대사업-기타	522	1,017	792	1,235	935	26.1
	대관사업	8,655	10,267	10,789	10,912	11,105	6.7
	임대사업	2,136	2,280	2,484	2,732	3,450	13.0
	기타수입	1,766	299	448	442	244	△19.8
	- 사업 외 수입	6,986	5,126	123	127	83	△38.9
	이자수입	286	126	123	127	83	△22.4
	차입금	6,700	3,300	-	-	-	△75.4
	기부금	-	1,700	-	-	-	△100.0
	2. 이월결산잉여금	8,925	△4,108	△2,186	△2,095	△2,029	△50.0
	- 전기이월금	8,925	△4,108	△2,186	△2,095	△2,029	△50.0
	- 전전기 이월금	-	-	-	-	-	-
	3. 수지차지원(국고보조금)	5,172	8,222	7,222	8,907	9,522	19.3
	4. 이월사업비	-	-	-	-	-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지출	1. 인건비	7,708	7,311	8,576	8,097	8,244	2.1
	2. 경비	17,032	16,299	15,607	15,722	17,205	0.4
	3. 사업비	28,552	18,188	15,508	18,219	15,660	△11.9
	4. 예비비	770	732	-	-	823	△52.5
	5. 처분전 결산잉여금	△4,108	△2,186	△2,095	△2,029	△5,449	28.6
	- 퇴직급여 적립금	-	-	-	-	-	-
	- 경영평가 성과급	-	-	-	-	-	-
	- 차기이월	△4,108	△2,186	△2,095	△2,029	△5,449	28.6
	6. 이월사업비(사고이월)	-	-	-	-	-	-
총 계		49,955	40,343	37,595	40,009	36,483	△7.1

주: 각 년도 결산 기준

자료: 예술의전당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해당 손실을 사업수익 개선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만회하지 않고 시설 내 임대계약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말 기준으로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임대보증금은 74억 8,539만원인데, 해당 자금을 결산손실에 충당하여 연차적으로 사용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임대보증금은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부채이자 유동자산으로서 임대계약 만료시 임차인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지 적자를 이유로 해당 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다른 지출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임대차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필요한 차입도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어 추가 자금이 확보되더라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예술의전당의 수지 구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예술의전당의 적자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은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에 맞추어 지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비만 무리하게 감축할 경우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기관 고유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 또는 새로운 재원 마련 등 예술의전당의 수지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2. 노후시설 리모델링 효과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분 반영 필요

가. 현 황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⁴⁾은 국내 최대의 공연장·미술관이자 연간 250~300만명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술의전당 내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전당에 민간자본보조(320-07) 방식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데,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16억 4,000만원(△36.4%) 감액된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2,300	4,500	4,500	2,860	△1,640	△3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내 내용연수가 초과한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연장, 전시장용 시설이 존재하는데, 주요 설비 파손 등으로 공연·전시 장애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소규모 개보수로 해결 불가능하여 노후 장비 철거 후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⁵⁾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은 개관 후 30년 이상 사용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를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으로 음악당 주차장 리모델링(30억원), 노후공조설비(10억원), 노후전기설비(5억원, 1차)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4) 코드: 일반회계 1636-301

5)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2016. 1. 29.)>

· 내용
- 예술의전당 시설물 리모델링 추진 부적정
- 각종 설비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고장으로 인한 공연·전시의 중단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각종 설비의 에너지효율이 저하되어 공공요금 납부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리모델링 공사예산 집행 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공기조화설비 등을 먼저 교체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마련

자료: 예술의전당

예산안으로는 빙축열시스템 도입(14억원) 및 터보냉동기·냉각수 배관(11억원), 노후전기설비(3.6억원, 2차) 교체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 주요 공조, 전기설비 운용 현황]

구분	장비명	설치년도	사용년수	내구연한
공기조화기	오페라 공조기	1993	23년	15년
	음악당 공조기	1988	28년	15년
	한가람미술관 공조기	1990	26년	15년
	한가람디자인미술관 공조기	1990	26년	15년
공조배관	오페라 공조배관	1993	23년	15년
	음악당 공조배관	1988	28년	15년
	한가람미술관 공조배관	1990	26년	15년
	디자인미술관 공조배관	1990	26년	15년
열원설비	터보 냉동기	1988	28년	23년
배전설비	수변전설비 차단기	1992	24년	15년
		1997	19년	15년
		1998	18년	15년
		1999	17년	15년
	수변전설비 변압기	1992	24년	17년
		1995	21년	17년
	수변전설비 배전반	1992	24년	15년
비상발전기	운전반	2001	15년	15년
운전반, 냉각탑	냉각탑	1992	24년	15~20년
전동기 제어반	전동기 제어반 MCC	1987	28년	15년
		1989	26년	15년
		1992	23년	15년
고압케이블	고압케이블	1987	29년	20~40년
		1992	24년	20~40년

자료: 예술의전당

나. 분석의견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빙축열 시스템은 전력 소비가 많은 여름철 낮에 에어컨을 돌리지 않고 밤에 열음을 얼렸다가 한낮에 이를 녹여 건물을 냉방하는 냉방 방식으로서,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대형 건물에 빙축열 방식의 냉방을 장려하고 있다. 노후저효율 터보냉동

기·냉각수 배관 교체공사는 공연장·전시장·사무 공간의 주요 냉방열원·부속설비인 냉각탑용 냉각수 공급·환수관과 구형 터보 냉동기를 교체하여 전력 피크타임 적용시 원활한 냉방공급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전력 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한 공사이다. 노후전기설비 공사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에너지 효율 증대에 따른 전기요금·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3개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공통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강화와 안정적 가동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터보냉동기교체·빙축열시스템 도입으로 전기요금의 절감 효과가 연간 1.3억원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실시 중인 노후설비 교체도 쾌적한 관람환경이라는 서비스 질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터보냉동기교체·빙축열시스템 도입 효과 - 에너지효율화 측면]

구분	단위	도입전(A)	도입후(B)	증감폭(B-A)	증감률(B/A-100%)
전력량	kWh	1,476,246	1,046,540	△429,706	△29%
냉동기 피크전력	kW	1,200	800	△400	△33%
전체전력량 중 냉동기 비중	%	32%	25%	△7%p	△22%
전기요금	백만원	235	102	△133	△57%

주: 냉동기 가동기간 (5~10월, 6개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지차 방식으로 예술의전당에 지원할 국고보조금을 산정하는 과정(세부사업명: 예술의전당 지원 사업⁶⁾)에서 지출항목의 경상경비 중 전력수도료와 연료비 등 공공요금을 전년 대비 동결하거나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하여 인상, 계상하고 있어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료비, 전기료와 수도료를 합산한 공공요금 중 국고보조금 부분은 2018년 예산안에서 27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900만원(52.4%)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관이 2017년 예산에 편성한 공공요금 총액(국고부담+자체부담)인 24억 5,500만원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6) 코드: 일반회계 1631-304

[2018년도 예술의전당 공공요금 예산안 요구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2017			2018	증감 (B-A)	비고
	국고(A)	자체부담	계	국고(B)		
연료비	218 (33×12월×55%)	700	1,700	355 (33×12월×89%)	137	월 연료비 동결
전기료	1,000 (142×12월×59%)	55	355	2,032 (195×12월×87%)	777	월 전기요금 인상 (5,300만원)
수도료	300 (30×12월×85%)	182	400	315 (30×12월×87%)	15	월 수도료 동결
계	1,518	937	2,455	2,702	9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의전당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부처와 기관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으로 전기요금의 연간 절감 효과(1.3 억원)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해당 사업 예산안에 노후시설 교체에 따른 사업 성과를 구체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하여 이 사업 성과지표 공정율과 공정 건수 등 산출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이 사업 성과지표를 추가해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사업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달성도]

(단위: %, 건)

성과지표	구분	'14	'15	'16	'17	'18	'18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공정율	목표	80	100	50	100	100	리모델링 사업 공정진행도	총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공사진행율 측정
	실적	80	100	38	-	-			
	달성도	100	100	76	-	-			
노후설비 교체공사 완공 공정수	목표		신규	4	3	3	현장의 필요성과 예산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적 목표치 를 설정	완공공정수 합계	결과 보고서
	실적			3	-	-			
	달성도			75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강북지역에 국립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국립 서계동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¹⁾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연시설과 복합업무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며 2016년에 종료된 서계동 부지 매입 사업에서 55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개요]

- 목 적: 서계동 구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조성
- 규 모: 지하4층/지상15층, 연면적 43,446㎡
- 기 간: 2015년~2021년
- 예 산: 총 1,737억원(부지매입 551억원(국고), 시설조성 1,186억원(민간투자유치))
- 사업방식: BTL 방식

[사업 추진 경과]

- | | |
|-----------------|---------------------------------|
| 2014.3. |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 2014.5.~2015.6. | KDI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 2015.7.1.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1.03, AHP>0.528) |
| 2015.12. | 문체부-국방부 유상관리전환 협약 |
| 2016.3. | 부지매입 완료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636-306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BTL²⁾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는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립 서계동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0	0	0	200	2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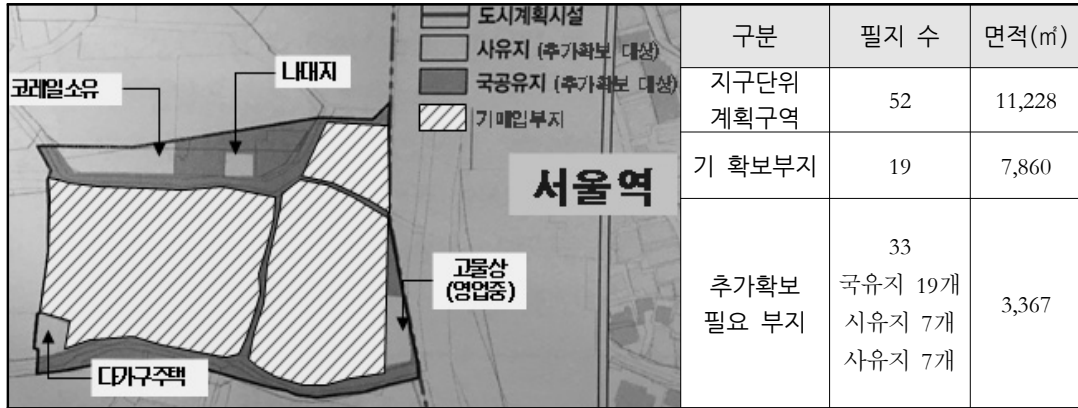
2017.5.18. 서울특별시는 동 사업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조성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였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다.³⁾ 서울특별시는 ‘문체부 복합문화관광 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로 조성을 위하여’ 동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열린문화예술공간 조성 지역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2) BTL(Build-Transfer-Lease)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건설한 시설이 정부로 기부채납되며 민간이 건설한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 권할을 획득하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 제15절

[부지 확보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는 33개 필지로, 이 중 사유지는 7개이다.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BTL 민간사업자 모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부지 결정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과정 중에 있으므로,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편성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평가비와 협상비 등 2억원의 편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¹⁾에서 종교문화 체험시설, 유적지 복원,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12억 9,200만원이 증액된 375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9건의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18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6,489	36,240	36,240	37,532	1,292	3.6
10. 27 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1,069	22,780	22,780	25,482	2,702	11.9
천태종 전통문화유산 전승센터 건립	1,500	4,500	4,500	0	△4,500	△100.0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건립	1,380	2,760	2,760	1,380	△1,380	△50.0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200	1,000	1,000	2,170	1,170	117.0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500	1,000	1,000	2,000	1,000	100.0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0	500	500	2,000	1,500	300.0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0	900	900	900	0	0.0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0	800	800	1,000	200	25.0
내포해미 세계청년 문화센터 건립	0	800	800	1,600	800	100.0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0	300	300	1,000	700	233.3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0	900	900	0	△900	△100.0
배티 순례성지 조성 등 종료사업	1,840	0	0	0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나. 분석의견

일부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사업의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 실적행률은 2016년의 경우에는 18.5%, 2015년에는 27.7%로, 매년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의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4	15,009	15,009	12,380	12,380	9,200	21,580	11,356	10,224	0	75.7
2015	32,950	32,950	10,935	10,935	10,224	21,159	9,143	11,970	46	27.7
2016	70,972	70,972	6,489	6,489	11,970	18,459	13,116	4,123	1,220	18.5
2017. 8.	36,240	36,240	5,367	5,367	4,123	9,490	277	0	0	7.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사업 중에서도 일부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0.27 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으로 토지매입비 253억 1,100만원 등 25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 실적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시 소유 2필지와 사유지 21필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2016년과 2017년에 토지매입비를 총 754억 8,8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17년 9월 말 현재 10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매입이 완료된 토지는 2필지에 불과하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또한 당초 사업 계획을 민간자본보조 방식(국비 54억, 자부담 126억)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방식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국비가 전혀 교부되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안 20억원의 집행가능성도 불분명하다. 또한, 현재 동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비목 변경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¹⁾ 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지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보다 5억 7,000만원이 증액된 8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59,604	173,813	173,813	169,107	△4,706	△2.7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6,740	7,716	7,716	8,286	570	7.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 중 문화도시는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시·군을 선정하여 도시 당 매년 7.5억 원 씩 총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이며, 문화마을은 문화도시보다 규모가 작은 마을단위에 매년 2억원 씩 총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에는 문화도시 20곳과 문화마을 32곳 등 총 52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문화도시 26곳, 문화마을 25곳 등 총 5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사업 개요]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원 대상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중장기 문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 도시 사업을 추진 중인 시·군	주민협의체를 통한 문화적 사회활동이 활발하거나 잠재적 문화 역량이 높은 마을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지역발전특별회계 1551-300

구분	문화도시	문화마을
지원 예산	1개 도시당 7.5억원 (국비 3억, 지방비 4.5억)	1개 마을당 2억원 (국비 0.8억, 지방비 1.2억)
지원 기간	5년	3년
사업 내용	○ 시민제안 및 공모형 문화활동 사업 및 전문가 문화기획 프로그램 ○ 도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 (휴먼웨어 네트워크, 문화기관 네트워크) ○ 도시 문화허브 활성화 사업(문화거점)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사업 ○ 도시재생 및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 ○ 도시 문화브랜드 사업	○ 마을단위 문화공동체 활동 및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마을 축제 운영 및 관리 ○ 마을 가치자산 활성화 프로그램 (역사·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 유희공간 활성화 사업 ○ 지역문화 창의인재 육성 사업 ○ 지역단위 마을문화 교류활동
사업 규모	(2017년) 20개소 → (2018년) 26개소 (신규7, 계속 19, 완료1)	(2017년) 32개소 → (2018년) 25개소 (신규8, 계속 17, 완료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도시’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²⁾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내년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도시 지정 전 단계인 ‘예비사업’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예산을 지역문화 진흥 사업³⁾ 내의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사업에 2억원 편성하였다.

[2018년도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문화 진흥	7,688	36,194	36,194	18,972	△17,222	△47.5
문화도시 지정 및 평가관리	0	0	0	200	2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1533-300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10년 동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50개 내외의 도시(광역시 및 시·군·구)를 선정하여 5년간 지원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계획 중에 있다.

나. 분석의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이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사업 목적 및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양 사업을 향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2017년 10월 중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나,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전의 예비사업 단계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문화도시 지정 절차(안)]

- | |
|---|
| ① 지자체 문화특화지역 사업 추진 → ② 문화도시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 제출(2년차) → ③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및 문화특화지역 사업 컨설팅(3~4년차) → ④ 문화도시 지정심의 및 지정(5년차) → ⑤ 문화도시 본 사업 추진 |
|---|

주: 2017. 10. 11. 제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양자는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하여 문화도시의 가치를 발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인 사업 목적이 동일하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며, 법정 문화도시의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기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알기 어렵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예비사업 단계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전 단계이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함에도, 기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연계할 경우 예비사업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한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도 기존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부처 내 사업 조정을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⁴⁾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7곳의 문화도시를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양 사업의 연계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문화도시를 신규로 지정할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⁵⁾

4)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예비사업으로 문화특화지역사업을 통한 기초적인 문화기반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의 경우 문화특화지역 사업지가 지자체 수요조사(2017년 3~4월)와 사업적정성 검토(2017년 5월)를 거쳐 2017년 5월에 확정되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조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공연예술종합공간을 조성·운영하고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에서는 17개 시·도에 19개 공연연습공간 조성을 목표로 연간 3~4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공연연습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조성 후에는 5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한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연습공간 5개소 신규 조성비 65억 4,500만원, 연습공간 운영 지원 16억 2,000만원, 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리비 1억 2,100만원 등 83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1,696	10,381	10,381	13,484	3,103	29.9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6,000	5,685	5,685	8,371	2,686	4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신규 공간의 조성공사가 매년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도에 신규로 조성될 공간의 운영비 반영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습공간 조성 후 3년간은 운영비의 100%, 4년차는 초기 대비 50%, 5년차는 초기 대비 20%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도는 2014년에 조성된 연습공간에는 운영비의 50%, 그 이후에 조성된 연습공간에는 운영비의 100%를 지급하고자 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632-308

[연습공간 운영지원 계획]

연번	구성년도(연차)	개소수	지원액	산출근거
1	2014(4년차)	5	325백만원	130백만원×50%×5개소
2	2015(3년차)	3	390백만원	130백만원×100%×3개소
3	2016(2년차)	3	390백만원	130백만원×100%×3개소
4	2017(1년차)	3	390백만원	130백만원×100%×3개소
5	2018(신규)	5	125백만원	25백만원×5개소
계		19	1,62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 중 2018년도에 신규 조성되는 5곳의 운영비 1억 2,500만원은 예산 반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 진행 절차 및 현재까지의 실적을 고려할 때, 2018년에 신규로 조성을 시작하는 곳의 경우 2018년 내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 후보지 선정 → 사업 지역 선정 → 공사 계약 → 공사 완료 → 운영 시작’의 절차를 거치는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리모델링할 만한 유헴공간을 우선 마련하여야 하므로 사업 지역 선정에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사유 등에 따라 현재까지 신규로 조성된 공간 중 당해 연도에 운영이 시작된 경우는 없었다.

[연습공간 조성사업 현황]

연도	지역	사업 후보지 선정	사업 지역 선정	공사 계약	공사 완료 시점	운영시작 시점
2014	서울	2013.12	2014.4	2014.7	2015.4	2015.6
	대구					
	부산					
	춘천					
2015	창원	2015.6	2015.9	2015.7	2016.2	2016.4
	인천					
	부산					
2016	전주	2016.5	2016.8	2016.9	2017.2	2017.4
	울산				2017.8	2017.9
	광주				2017.8	2017.10(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더욱이 2015~2017년에는 매년 3개소를 조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사업 지역 선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편성된 신규 조성 공간에 대한 운영비는 예산 반영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서 시·군·구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지 시·군·구 당 1개소를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²⁾ 내년부터 중생활권 수준의 ‘생활권형(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 323억 3,500만원으로, 이 중 42억원이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다. 연구용역비 2억원, 개소당 2억원씩 20개소 지원 예산 4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61,744	43,124	43,124	54,920	11,796	27.4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6,800	29,700	29,700	32,350	2,650	9.0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0	0	0	4,200	4,2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35개소를 건립할 계획이고, 1개소 당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3-300

2)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현황]

(단위: 개)

	'97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계
계	3	17	5	7	10	13	16	12	6	7	13	29	20	10	10	6	19	11	6	4	2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규모는 약 60억원(국비 30%, 지방비 70%)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 규모는 잠정적인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은 내년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개요(안)]

- 사업기간 : 2018~2022년(5개년)
- 사업규모 : 총 135개소/ 8,100억원(1개소당 60억원) *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
 - * 2022년까지 400개소 필요(소생활권 포함 / 2014년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발표)
 - 지원규모 : 매년 27개소 내외/ 1개소당 국비 20억원/매칭비율 30%
- '18년 요구 : 4,200만원
 - 생활권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200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

그런데, 동 사업은 향후 5년간 총사업비가 8,100억원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상의 재정지출이 56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와 같은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년도 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확정할 예정으로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인 신규 건립 수요 등에 대한 파악도 미흡한 상황이다.³⁾

더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서비스단위를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으나,⁴⁾ 지자체에 따라 지역을 중생활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목표하고 있는 서비스 단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⁵⁾

3) 신규 건립 수요의 경우 지리적 시설 접근성, 인구 규모, 기존의 생활체육시설, 지역별 인구분포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4) [생활권 위계 기준]

생활권 위계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공간범위	보행으로 10분 이내	대중교통으로 10~15분	자기완결성을 갖는 하나의 도시적 범위
인구규모	2~3만인	10~20만인	60만인 내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역을 1개 대생활권과 2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역시의 경우 중생활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활권을 구분하여 동 사업의 서비스범위를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인천광역시 생활권 설정]

생활권	인구 수(2015년 기준)	비고
중부생활권	95만	동구, 남구, 남동구 일부
남부생활권	45만	연수구, 남동구 일부
동부생활권	90만	계양구, 부평구
서북생활권	51만	서구
영종생활권	6만	중구, 옹진군 일부
강화생활권	7만	강화군
옹진생활권	2만	옹진군 일부

자료: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인천광역시, 2015.11.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¹⁾에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문학진흥법」 제18조²⁾에 따라 설립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문학유산 및 원본자료의 수집·보존·복원과 연구·전시·교육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문학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원과 자료수집비 20억원 등 3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술창작활동 지원	946	1,939	1,939	4,177	2,238	115.4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0	800	800	3,000	2,200	27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현재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총사업비 확정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당초 2016년 하반기에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며 2017년에는 실시설계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633-300

2)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당초 계획]

○ 2016. 4~5.	건립부지 신청 요지 및 접수
○ 2016. 3분기	우선협상대상 후보지 대상 세부협상 및 협약 체결
○ 2016. 하반기~2017.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 2017. 하반기	실시설계
○ 2018~2019.	공사
○ 2020.	개관 및 운영 시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2017년 10월 현재 부지 선정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³⁾ 이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2016년에 한 차례 추진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건립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 수렴 절차에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립부지의 선정·발표를 완료(11월 예정)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는 계획이다.

[국립한국문학관 설립 향후 계획(안)]

○ 2017. 10~11	건립 부지 선정 관련 의견 수렴
○ 2017. 11월 중순	건립 부지 선정 및 발표
○ 2017. 11~2018. 1.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18. 2~4.	총사업비 협의
○ 2018. 5~2021. 5.	설계 및 시공
○ 2021. 9.	개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즉, 현재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총사업비를 비롯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와 자료수집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되는데,⁴⁾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내년도에 편성해야 하는 설계비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② 자료수집비의 경우 자료 수집 시작 이전에 수집 대상 자료 조사, 수집 자료와 전시 계

3)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건립 지역 및 부지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실시한 것으로, 올해 말 부지 확정 후 기본계획 용역을 다시 수행하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4)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7. 1., p.229

획과의 연계 방안 마련, 수집 범위 확정 등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 집행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도에 수행한 용역에서는 자료구입비를 별도 계획하지 않고 있어,⁵⁾ 자료구입비의 소요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 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도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기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향후 확정되는 총사업비를 토대로 연차별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⁷⁾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며,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은 전체 건립 예산 규모에 비추어 작은 규모여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행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에 동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기본계획 확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6. 3., p.413.

6)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7. 1., p.132.

7) 2018년도 예산안은 총사업비 608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2015년에 실시한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총사업비를 446억원(10,000㎡)으로 계획하였으나, 2018년도 예산안은 당초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건립 규모 14,000㎡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¹⁾에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및 매달 마지막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정하여 문화시설 가격 할인 및 기획 공연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이 2016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개정 전의 「문화기본법」은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²⁾

문화가 있는 날에 제공되는 관람 할인 혜택은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민간의 참여로 진행되며,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의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4억 2,200만원 증액된 176억 2,2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① 지역 특화프로그램(30억원), ② 청춘 마이크(38억원), ③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41억원), ④ 참여 문화시설 지원(64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민문화활동 지원	14,742	17,200	17,200	17,622	422	2.45
종합안내센터 운영지원	200	200	200	200	0	0.0
기획프로그램 운영	14,542	16,000	16,000	17,422	1,422	8.9
문화박스쿨 설치 및 운영	0	1,000	1,000	0	△1,000	순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531-307

2)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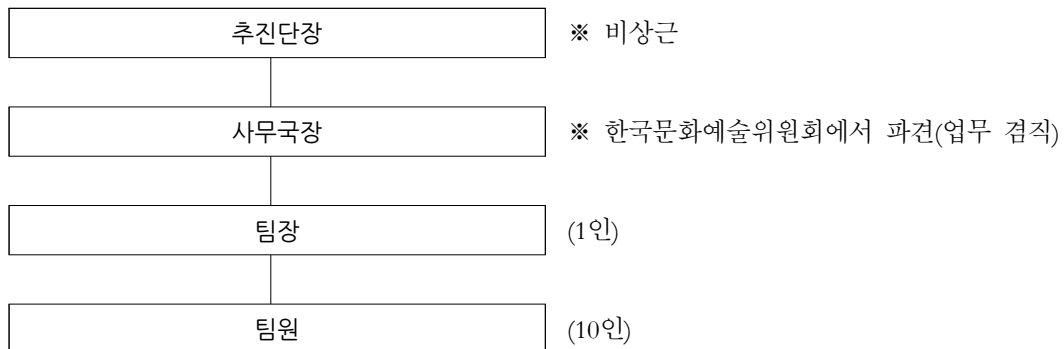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1차 보조사업자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을 2차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그러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은 사무국장 1인 외에는 전원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조직의 안정성이 낮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 조직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은 ① 연간 예산이 17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이며, ②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므로 사업 범위가 넓고, ③ 단순한 집행관리 뿐만 아니라 사업의 기획·컨설팅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단’을 해체하고, 이를 비영리 민간재단법인인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³⁾

그러나 생활문화진흥원 또한 2016년 7월에 설립되어 설립 초기 단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운영할 역량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법인의 설립 취지인 생활문화 진흥이 동 사업의 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3) 「국민 의견 반영해 새롭게 달라지는 ‘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6.27.

다는 지적이 있으며, 생활문화진흥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현재 사업을 추진할 적합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기타 생활문화진흥 사업을 분리하여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목적을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하여 일상 생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성이 낮거나, 사업의 형태를 문화가 있는 날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생활 속 문화활동 사업에서 ① 문화예술 소셜다이닝 지원, ②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③ 직장배달콘서트를 수행하였는데, 문화예술 소셜다이닝 지원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은 사업을 수행한 날이 문화가 있는 날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⁴⁾ 또한 양 사업 모두 교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특정 일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에 사업을 수행한 비중이 67%에 불과하였다.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 구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예산			비고
			2016	2017	2018(안)	
지역 특화 프로그램		- 특정 장소와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에서 특정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3,130	5,300	3,000	
청춘 마이크		- 다중밀집지역에서 버스킹 공연 진행	3,600	2,800	3,800	
생활 속 문화활동 지원	문화예술 소셜다이닝 지원	- 문화예술 재능인들이 모임을 개설하여 상호 소통의 장 마련	100	200	200	자발적인 모임의 형태이므로 특정 일자에 국한하지 않음 바람직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	- 지역문화시설에서 생활문화동호회 운영	1,600	1,800	2,500	
	직장배달 콘서트	- 문화가 있는 날에 직장으로 찾아가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400	400	400	
참여문화시설 지원		- 문화재단,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 문화시설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4,230	5,417	6,439	

주: 2016년도 운영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동 사업에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한되어 진행되는 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이 아닌 날에도 진행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를 분리하여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7조¹⁾에 따라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도시법」 제28조²⁾에 따라 아시아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아특회계’) 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의 보조사업자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각종 수익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사업비는 「아시아문화도시법」 제42조³⁾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특회계에서 편성된다. 2018년도 아특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15억 1,000만원이다.

나. 분석의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수입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에, 결산은 아특회계 세입에 처리되고 있어 세입 조치의 회계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①국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의 역할을 수행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한다.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아시아문화원의 설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관련 홍보·교육·연구 및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아시아문화도시법」이 2015.3.13. 개정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익금의 특별회계 세입 근거규정이었던 같은법 제42조제3항제8호가 삭제되었다.

[「아시아문화도시법」 제42조 개정 경과]

개정 전	개정 후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운영 수입금 9.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 삭제 <2015.3.13> 9.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이에 따라 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익금은 아특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되고 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는 건물대여료 2억 1,500만원, 입장료수입 5억 9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4,000만원 등 9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운영 수익금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건물대여료 (51-512)	215	극장, 다목적홀, 컨퍼런스홀 등 전당 시설 대관료 85 편의시설 사용료 130
입장료수입 (64-641)	509	문화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예술극장 입장료 수입 509 (문화정보원·민주평화교류원은 무료 입장)
기타 잡수입 (69-691)	240	주차장 수입 240
계	96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당해년도 운영 수입금의 결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아특회계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고금관리법」 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재무관서는 아특회계에만 생성할 수 있고, 일반회계 관서는 생성이 불가능하여 수입금 결산 시 불가피하게 아특회계 결산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당 및 아시아문화원 운영 수익금의 2016회계연도 아특회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건물대여료(51-512)	0	0	156	0
입장료수입(64-641)	0	0	2	0
기타 잡수입(69-691)	0	0	135	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의 취지는 아시아문화원의 운영 수입을 국고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익사업 및 수입대체경비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고 한다.⁴⁾ 그러나 현재 아시아문화원의 수익 사업 수행 역량 부족 등의 사유로 대규모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수입이 현재 아특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4) 2015.3.13. 개정 시 특별회계 세입 조항 이외에 ① 아시아문화원의 설립, ② 국가의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③ 아시아문화원의 수익사업 가능 조항 등을 신설하였는데, 이를 종합할 때 개정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문화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일부를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의 수입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은 일반회계에, 결산은 아특회계에서 수행되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과 결산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특회계 지출 규모 산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입 조치의 회계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¹⁾에서 뉴욕과 파리에 관광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관광문화센터는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 관광·문화 관련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고,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LA, 북경, 상해, 동경의 4개 도시에 관광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뉴욕과 파리에도 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관광문화센터는 201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뉴욕문화센터는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뉴욕문화센터 건립 예산으로는 공사비 22억 700만원, 감리비 3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13억 400만원 등 총 38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42,605	23,669	23,669	6,860	△16,809	△71.0
뉴욕관광문화센터	20,185	9,842	9,842	3,898	△5,944	△60.4
파리관광문화센터	22,420	13,827	13,827	2,962	△10,865	△7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재 반영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362-300

뉴욕관광문화센터는 2008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동 사업의 진행이 지연된 사유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잦은 공사유찰 및 미국 철도청의 시공 동의 절차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실집행률이 10% 내외로 부진하였다.

[뉴욕관광문화센터 연도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2016	20,185	2,000	22,185	320	21,865	0	1.4
2015	2,086	0	2,086	0	2,000	86	0.0
2014	2,000	17,933	19,933	9	0	19,924	0.0
2013	13,417	5,135	18,552	489	17,933	130	2.6
2012	5,839	0	5,839	694	5,135	10	11.9
2011	11,293	1,365	12,658	0	0	12,658	0.0
2010	13,960	0	13,960	806	1,365	11,789	5.8
2009	17,957	7,779	25,736	0	0	4,177	0.0
2008	10,000	0	10,000	2,221	7,779	0	2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에 총사업비를 변경(669억→771억) 하여 총사업비 부족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미국 철도청과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 98억 4,200만원 중 1억 8,0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이 저조하다.

2017.8.31.에 미국 철도청과의 공사 관련 합의서 작성은 완료되었으나, 후속 조치로 도면 검토 과정 등을 완료해야 하므로 공사 시작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도면 검토 과정에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도면 검토를 완료한 후에는 중단되었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2017년에 편성된 공사비도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용 또는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6년도 이월액의 미집행분 및 2017년도 예산안의 이월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도 공사비를 현재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사업¹⁾에서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운용 사업은 정부가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출자하고, 이로부터 관광기업에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현재 세 개의 자펀드가 구성되어 있으며, 결성액은 440억원이다.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18개 기업, 22건에 총 215억원이 투자되었다.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 현황]

조합명	운용사	결성일	조합규모		
			결성액	모태펀드출자	출자비율
에스제이-창조관광 밸류업벤처조합	에스제이 투자파트너스	'15.09.30	220억	130억	59.1%
AJ창조관광 제1호투자조합	AJ캐피탈파트너스	'16.11.30.	200억	100억	50.0%
케이비-에스제이 관광벤처조합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 KB증권(공동GP)	결성 중	270억 (예정)	150억	55.6%

주: 2017. 9월 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운용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에 비해 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34-313

[2018년도 관광기업육성펀드 조성·운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2,200	18,750	18,750	25,077	6,327	33.7
관광기업육성펀드	10,000	15,000	15,000	20,000	5,000	3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관광기업육성펀드의 운용사 선정 및 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출자액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에 관광기업육성펀드에 150억원을 출자하였으나, 현재까지 펀드 결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운용사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운용사 선정 이후에도 민간 출자자 모집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용사 선정의 경우 2017년에는 제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시 관광계정 출자를 지원한 운용사가 없었으며, 지난 7월 제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을 실시하여 운용사를 선정하였다. 더욱이 제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시 지원한 운용사는 한 곳에 불과하다.

[펀드 결성 현황]

출자 사업 공고일		지원 운용사 list	선정 운용사	운용사 선정일	펀드 결성일
2015년 1차 정시	'15.02.02	-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 캐피탈원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 유니온투자파트너스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15.03.30	'15.09.30
2016년 1차 정시	'16.01.29	- 지비보스톤창업투자	-	-	-
2016년 2차 정시	'16.04.29	-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 이에스인베스터	-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16.06.27	'16.11.30
2017년 1차 정시	'17.01.29.	-	-	-	-
2017년 2차 정시	'17.06.19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B증권(공동GP)	-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KB증권(공동GP)	'17.07.28	결성 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즉, 관광기업육성펀드의 운용사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펀드 결성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정부의 출자금이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재정 지출의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현재 관광산업이 침체된 상황에서 창업 초기 단계의 관광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기업육성펀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조성하고자 하는 펀드도 9월 말 현재까지 결성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펀드 출자액 확대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와 함께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등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신규 관광서비스 발굴을 위해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¹⁾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는 기존에 수행하던 관광서비스혁신 R&D 지원사업이 일몰사업 평가 결과 일몰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융복합 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R&D)	0	0	0	2,208	2,208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할 융복합 관광서비스 활성화 R&D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주제를 ‘관광코스 안전 연계 시스템 개선 기술’과 ‘취약계층 대상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기술’의 두 가지로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한다.

[2018년도 융복합 관광서비스 활성화 R&D 사업 계획(안)]

- 관광코스 안전 연계 시스템 개선 기술 : 1,100백만원

‘안전여행 보장’을 위한 주요 관광코스 안전 및 안내체계 개선,
광역 관광루트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기술 개발 지원

- 다/상 신규과제 : 700백만원 (2개×466백만원×9/12개월)
- 다/상 신규과제 : 400백만원 (1개×533백만원×9/12개월)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601

- 취약계층 대상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기술 : 1,000백만원

국민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장애인, 영유아동반 가족, 청소년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광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및 관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기술 개발 지원

○ 다/상 신규과제 : 1,000백만원 (2개×633백만원×9/12개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분석의견

연구개발사업(R&D) 일몰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규 사업과 일몰 사업 간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결과, 관광서비스혁신(R&D) 지원사업은 일몰 시점을 준수하여 2018년에 일몰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동 사업의 일몰 사유는 ① 사업 목표가 광범위함에 따라 성과 평가가 어렵고, ② 누적 매출액(7.2조원) 저조 등 사업화 실적이 부진하여 당초 목표로 설정한 500억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목적을 ‘국민 국내여행 및 지역방문 비율 증가(내국인 대상)’와 ‘국민여행향유권 확대(취약계층 대상)’로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 역시 5억원 이상 대규모 지원을 다년도 수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사업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당초 일몰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나, 건당 지원 규모 등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에서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관광서비스 혁신 R&D 사업 중 대규모, 다년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과제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총사업비
방한 외래관광객의 언어불편 해소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주)제이엠피시스템	2015.06.01.~2016.05.31.	667,000
위치기반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기술 개발	(주)다비오	2013.06.03.~2014.05.30.	219,898
		2014.06.02.~2015.06.01.	158,000
AR 및 VR 기술을 활용한 여행상품 사전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포스트미디어	2013.06.03.~2014.05.30.	223,700
		2014.06.02.~2015.06.01.	150,000
관광객 유치를 위한 디지털 구전 홍보마케팅 설계 및 효과측정	(주)스위트케이	2013.06.03.~2014.05.30.	220,934
		2014.06.02.~2015.06.01.	266,011
빅 데이터 기반 한류 관광객 마케팅 클라우드 및 연동형 관광지원 App 개발	(주)씨온	2015.07.01.~2016.05.31.	520,000
		2016.06.01.~2017.05.24.	244,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신규 R&D 사업이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 목표의 구체화 및 사업 방식 변화와 더불어 R&D 사업이 사업화 및 고용 증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사업¹⁾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을 편성하였다. 콘텐츠누림터란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동 사업에서는 지역 유희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장소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2개소의 조성 비용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며, 지자체매칭(50%)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2018년도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 지원	14,000	11,200	11,200	10,100	△1,100	△9.8
지역특화콘텐츠개발	14,000	11,200	11,200	9,100	△2,100	△18.8
콘텐츠누림터 조성	0	0	0	1,000	1,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 예산 10억원으로 지역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전시 및 프로그램 구성(6억원), 콘텐츠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제작(4억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지방비로는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및 시설구축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231-325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 세부 편성 내역]

- (국고예산) 지역민들이 문화콘텐츠를 향유, 창작,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복합 문화 여가 공간 조성 : 1,000백만원
 - －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콘텐츠를 향유, 창작, 소비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 제작 및 구성 : 300백만원×2개소
 - － 콘텐츠체험 프로그램 제작 및 시설제작 : 200백만원×2개소
- (지방비 및 자부담) 누림터 공간 리모델링 : 1,000백만원
 - － 누림터 조성을 위한 기존시설 리모델링 및 시설구축비용 : 500백만원×2개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충실히 마련한 후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향유, 창작,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²⁾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모델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업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인지를 비롯한 기본적인 사업 계획은 리모델링 등 시설 구축 비용, 전시 규모, 향후 추가 구축 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사업비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동 사업을 통해 거점형 공간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련하고 있는 콘텐츠 전시·활용 시설을 검토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 및 조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³⁾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생활밀착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해당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내년

2) 예를 들어, 기 구축된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체험 공간을 조성하며, 공연과 각종 홍보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3) [거점지역 콘텐츠 전시·활용 시설 현황]

도에 2개소 가량을 조성한 이후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대 계획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명확히 제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별 콘텐츠 인프라를 감안하여 역량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인데, 문화콘텐츠 발달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콘텐츠 향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설 현황	위치
부산	콘텐츠체험전시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2층
광주	전시홀, 콘텐츠 홍보홀, G시네마(영상물·미디어 체험)	광주영상복합문화관
전북(전주)	플레이그라운드(전시, 체험)	전북콘텐츠코리아랩 3층
경북(안동)	라키비움(전시, 도서관, 네트워킹)	경북콘텐츠코리아랩 3층
대구	콘텐츠 쇼룸	대구콘텐츠코리아랩 2센터 1층
인천	다목적홀(공연기획, 전시), 다목적전시홀	인천콘텐츠코리아랩 1층, 2층
충남(천안)	열린마루(전시, 공연)	충남콘텐츠코리아랩 1층
대전	시민액션체험장	대전액션영상센터 지하1층

가. 현 황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사업은¹⁾ 콘텐츠분야 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콘텐츠 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에 비해 19억 6,200만원이 증액된 65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103,165	63,747	63,747	65,709	1,962	3.1
콘텐츠분야 기업육성	68,477	49,957	49,957	51,777	1,820	3.6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34,688	13,790	13,790	13,932	142	1.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에서 (구)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내년에는 사업을 큰 틀에서 개편할 예정으로 현재 ‘문화·관광 합동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지하1층 및 7~10층을 (구)문화창조벤처단지로 활용하여 콘텐츠 산업의 벤처 기업들의 입주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구)문화창조벤처단지에는 콘텐츠기업 약 40여개사가 입주해 있었으며 당초에는 기본 입주 기간을 2년으로 하여 1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입주가 끝난 경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가적인 입주업체 선발은 하지 않을 예정이며 지원 공간도 축소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의 제1센터를 대학로에 개소하였다.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는 대학로 아트센터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공간을 폐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231-316

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8개월분의 임차료 및 관리비 8억 8,000만원과 공간을 반납하기 위한 원상 복구 비용 2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구)문화창조벤처단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초 (구)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 역할을 하고자 계획하여, 다수의 콘텐츠 업체 및 지원 업체들이 입주하였다. 그러나 2017. 9월 말 현재 기준에 확보했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문화창조벤처단지 층별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층	공간 활용 현황(2017. 10. 기준)	향후 계획
17층	○ 운영사무실, 회의실, 라운지 등	*관광 등 다른분야 등과 공동 사용('18년 예정)
16층	○ 지원기관(파트너) 입주 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비즈니스 센터 운영	
15층	○ 입주공간 : 41개업체	*5개층 중 1개층 관광공사 반환('18년 예정)
14층	○ 회의실 : 10실 (각층 2실)	
13층	○ 식음공간 : 5실 (각층 1실)	
12층	○ 휴게공간 : 5실 (각층 1실)	
11층	○ 샤워실 : 5실 (각층 1실)	
10층 (열린공간)	○ 1인 창업기업 공간 : 테이블 40개 ○ 4인 스타트업 공간 : 테이블 20개 ○ 회의실 : 4실 ○ 식음공간 및 샤워실 : 각 1실	
9층	○ 렌더팜룸, LED룸, 버추얼센터, 프로젝션 테스트룸 등	
8층	○ 강의실, 시연 및 프로젝트룸, 회의실, 개인연구실 등	관광공사 반환(예정)
7층	○ 관광벤처 입주공간	
B1층	○ 공연장(가변형 블랙박스, 분장실, 연습실 등) * 객석 : 수납식(171석, 최대 263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이 대폭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문화창조벤처단지의 기업 입주 제도는 축소하더라도, 창업 이후의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등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폐쇄 후 서울 지역의 콘텐츠 기업 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로의 콘텐츠코리아랩은 콘텐츠코리아랩의 제1센터로서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창업지원 및 제작지원 등 콘텐츠 기업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조성을 시작으로, 지역마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이 조성되어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 대학로의 콘텐츠코리아랩을 폐쇄할 계획이며,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이 담당하던 기능의 이관 등은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 사업체의 32%, 종사자 수의 51%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등 콘텐츠 산업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대학로의 콘텐츠코리아랩의 기능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시설로 홍릉시연장과 콘텐츠 멀티유즈랩(관교 창조경제밸리 내 입주) 등이 있으나, 각 시설의 경우 기능 및 지원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콘텐츠코리아랩이 수행하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홍릉시연장은 융복합 콘텐츠를, 콘텐츠 멀티유즈랩은 원소스멀티유즈(OSMU)와 지식재산(IP)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콘텐츠산업 지원 관련 시설 비교]

구 분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멀티유즈랩	홍릉시연장
기 능	○ 기초 예술활동이나 콘텐츠 창작의 아이디어를 문화콘텐츠화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 ○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창업지원 또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 이미 완성된 콘텐츠를 보유한 영세 업체의 ‘유통’ 측면 지원 강화 ○ 우수한 원천콘텐츠의 경우 라이선싱을 통한 2·3차 창작 ○ 기성 콘텐츠IP 보유자와 사용자 간 비즈니스 매칭	○ 창작된 융복합 콘텐츠 또는 개발된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연 기회 제공
지원대상	○ 기초예술 창작자, 1인 콘텐츠 제작 및 창업자(스타트업)	○ 콘텐츠 IP를 보유한 기업 및 창작자의 IP 거래 및 활용 지원 * 상시입주 운영 없음	○ 공연 및 특수효과(홀로그램, AR / VR, 로봇 등) 관련 업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따라서 (구)문화창조벤처단지의 활용 방안 및 세부 내용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기능의 유지 및 이관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¹⁾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에서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에 한정하여 시범 실시를 수행 중인데, 지난해까지 292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166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5~2017년 강원도 와이파이 구축 실적]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구축 와이파이 수		143개	149개	166개
집행액	정 부	270	270	350
	지자체	767	877	896
	통신사	1,037	1,147	1,2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예산안은 동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1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부 12%, 지방자치단체 38%, 통신사 50%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한 개소 당 와이파이 설치비가 약 2,000만원임을 고려하여 전국 585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다.²⁾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19

2) 「2018년 예산안 생활밀착 사업 70선」, 기획재정부, 2017.8., p. 42.,

[2018년도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마트관광 활성화	6,024	6,254	6,254	7,407	1,153	18.4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301	380	380	1,404	1,024	26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통신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 수립 시 민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 여부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우 정부의 계획대로 통신사에게 사업비의 50%를 부담시키고자 한다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통신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편성 당시 사업 참여 여부 및 비용 부담 범위 등에 관해 통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강원도지역의 시범사업 분담비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고,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정부와 통신사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³⁾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버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5:5)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으로 통신사 부담분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신사가 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사업에만 사업비를 투입할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지양해야 하며, 통신사와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4548-320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사업¹⁾의 기업경영지원 내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18년도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포츠산업 활성화	13,295	23,107	23,107	28,995	5,888	25.5
기업경영지원	4,631	6,442	6,442	8,683	2,241	34.8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0	0	0	3,000	3,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스포츠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역량을 고려하여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우수한 스포츠산업 중소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5~6개 기업에 5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보조사업자로 수행할 예정이며, 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계획되어 있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 세부 편성내역]

- 사업고도화(컨설팅)지원 : 1,200백만원(국내외 컨설팅 2억*6개사)
- 해외판로개척 지원 : 1,134백만원(해외전시참가 1.89억*6개사)
- 홍보마케팅 지원 : 600백만원(홍보마케팅지원 1억*6개사)
- PMO 용역비 및 기타운영비 : 66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365-301

나. 분석의견

첫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타 사업에 비해 기업 당 지원 단가가 5억원으로 높은 편이므로, 사업 계획을 보다 충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스포츠기업 지원 사업에서 기업 1개 당 4,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스포츠산업 기업들 중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당 5억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을 보면, 수출 초기 단계의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400~3,000만원 수준으로, 유사 사업과 비교할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현황]

	수출역량강화사업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첫걸음기업
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기업	· 수출기업화: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 수출고도화: 100만불~500만불	전년도 수출 전무 내수기업
지원규모	최대 2,500만원	·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 수출고도화: 최대 3,000만원	최대 1,400만원
지원내용	무역교육, 통·번역, 시장조사,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무역교육, 현지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패키지 지원	종합 컨설팅, 바이어 상담 주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마케팅을 위하여 국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드클래스 300’사업²⁾과 비교하여 동 사업의 지원 규모가 적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대상 기업은 중견 기업을 포함하므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으며, ② 지원 내용 또한 ‘R&D 지원’

2)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4831-306(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R&D)), 4832-301(글로벌 중견기업육성 인프라 구축) 등에서 지원

15억원, ‘수출 마케팅 지원’ 1억원으로, 컨설팅·마케팅·해외전시참가에 약 5억원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지원 사업과 지원 내용 상 차이가 있다.

더욱이 10월 초 현재까지 동 사업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의 정의, 선정 기준, 지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 할 계획이며 이를 참고하여 세부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타 부처의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지원 금액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원 방식에 있어 동일한 기업에 컨설팅지원(2억원)·해외전시회 참가지원(1.9억원)·홍보마케팅 지원(1억원)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 컨설팅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홍보마케팅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마다 처한 경영 상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 제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임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지원 제도를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이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일정 규모의 바우처를 제공 받고, 컨설팅·마케팅·전시회참가·해외진출자문 등 수출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나의 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¹⁾에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센터(가칭)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지역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공간을 신규로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에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60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예술교육활성화	97,733	119,734	119,734	125,426	5,692	4.75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지원	5,360	5,495	5,495	11,495	6,000	109.2
유희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0	0	0	6,000	6,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거점형 1개소, 밀착형 3개소의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보조율 50%)로 운영할 계획이다. 거점형 공간 1개소에는 30억원, 밀착형 공간에는 1개소 당 10억원 씩 지원하고, ① 기존의 문화공간, 공공시설 내 여유공간 등을 활용한 교육 공간 조성과 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637-302

나. 분석의견

첫째, 내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말까지 대상 지역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는 내년부터 공간 조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밀착형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공간 조성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거점형의 경우 대규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희공간을 공연문화시설로 개선하는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경우도, 공사 계약 및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²⁾

즉,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내년도 설치 예정인 거점형 공간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과 기존 문화예술교육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교육에 비해 상시적인 공간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2) [연습공간 조성사업 현황]

연도	지역	사업후보지 선정	사업 지역 선정	공사 계약	공사 완료 시점	운영 시작 시점
2014	서울	2013.12	2014.4	2014.7	2015.4	2015.6
	대구					
	부산					
	춘천					
2015	창주	2015.6	2015.9	2015.7	2016.2	2016.4
	인천					
	부천					
2016	전주	2016.5	2016.8	2016.9	2017.2	2017.4
	창원					
	울산					
	광주					
					2017.8	2017.10(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현황]

	수행 방식	내용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사업	학교 방문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4년 동안 문화예술 교육 실시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지원	다양한 계층의 아동으로 오케스트라 구성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각종 지역 문화예술기관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30회차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기존의 특정 프로그램 위주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2월 중 사업 계획 컨설팅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나,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시적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 선정 후 학교 등 지역교육기관과의 협의를 충실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예술교사 파견과 같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 사업과 특정 일자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동 사업은 상시적인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에 비해 사업 대상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참고로, 동 사업이 모델로 하고 있는 핀란드의 ‘아난팔로’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학교 정규과정 혹은 방과 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인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였다.³⁾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 예를 들어, 아난팔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5X2 수업이 있는데, 지역 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5주동안 미술,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헬싱키의 120개 이상 초등학교가 참여하며,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가나 교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도 사업 수행 지역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기관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수행 지역 선정 후 관련 교육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신규로 설립될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상시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 사업¹⁾의 내내역사업으로, 근로자 휴가경비 일부 지원을 통해, 직장 분위기 등으로 휴가를 가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휴가를 여행으로 유도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근로자 휴가 경비로 1인당 10만원씩 7만명을 지원하는 등 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18년도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B-A)/A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12,468	16,046	16,046	22,715	6,669	41.6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	0	1,300	1,300	9,914	8,614	662.6
- 근로자 휴가비 지원	0	0	0	7,500	7,5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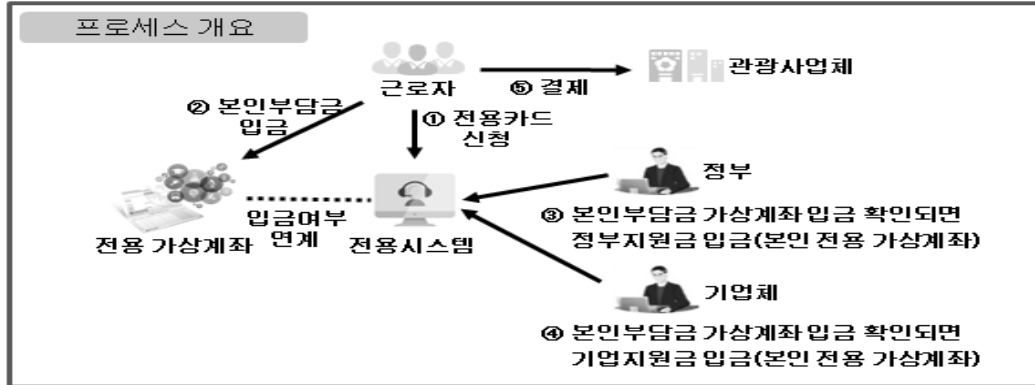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 평균 숙박여행 비용 40만원의 25%인 10만원을 정부지원 상한액으로 정하고, 근로자 가입액(50%) 및 기업 지원액(25%)과 연동하여 분담비율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복지팀’을 신설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을 해당연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되, 미사용 시 차년도 1월에 환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길환 예산분석관(ghlim@assembly.go.kr, 788-468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9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운영 프로세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 의견

첫째, 휴가비의 25%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1차 년도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7만명에 대한 세부 선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16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인 평균 숙박여행 비용(391,874원)을 기준으로 40만원을 휴가비용으로 산정하고 이중 정부와 기업이 25%씩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동 수치는 1인당 평균 숙박여행 금액으로, 국내여행경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적정 비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한편,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35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수는 전체의 79.6%이며 약 1,37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만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 당 근로자 수를 제한하여야 하는데, 공모에 참여할 예상기업의 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 기업당 지원 근로자 수 제한 기준 등 세부실행을 위한 치밀한 사업기획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월평균소득 350만원 이하 근로자 추계]

(단위: 명, %)

기업 분류	근로자수		350만원 이하 비율	
1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	10,242,374	13,700,517	86.2%	79.6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3,458,143		73%	
중견·대기업(300 이상)	2,326,709		47.4	
전체	13,700,517		68.4	

주: 1. 근로자 수 통계는 고용노동부 2014년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자료 인용

2.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하 근로자 수 비중 통계는 통계청 2017년 「임금근로자별 소득분포 분석」

자료 인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한국관광공사에서 동 사업의 시범사업 형태로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실시해 본 결과, 180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참여기업 근로자 총 9,485명의 26.7%인 2,538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지원금은 2.5억원이 조성되어 이중 약 1.9억원(74.2%)이 소진된 바 있다. 사업 전체적으로는 약 10억원이 조성되었고 이중 약 8억원이 소진되어 79.2%의 소진율을 보였는데, 이를 약 28배 확대하여 신규 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효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적정 사업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휴가비지원 시범사업(2014) 여행분담금 사용현황]

(단위: 원, %)

	조성액	소진액	잔액	소진율
근로자 / 기업체 분담금	757,800,000	612,844,695	144,955,305	80.9
관광공사 지원금	252,600,000	187,510,014	65,086,986	74.2
합 계	1,010,400,000	800,354,709	210,045,21	7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둘째, 참여기업 선정, 가맹점 관리·운영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이용 사례를 방지하고 연중 상시 휴가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업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ck Vacances) 제도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업이지만 사업 구조면에서는 차이가 있다.²⁾ 프랑스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공동 분담하고, 정부는 가입 근로자들에게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관리 등의

2) 프랑스의 체크 바캉스는 1982년 프랑스에서 자국민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전담기관인 ANCV(L'Agence Nationale pour les Cheques-Vacances; The National Agency of Holiday Voucher)를 설립하여 관리·운영된다.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있다. 즉 정부는 휴가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할인권(Voucher)을 발행해 주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일부 소외계층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경우, 정부가 여행경비의 25%(최대 10만원)를 근로자의 카드에 적립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고, 가맹점에서 사용 시 적립된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식이다. 직접 지원이 아닌 포인트 적립 방식이 참여기업, 가맹점, 근로자 간에 허위 신고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사업비를 편취하는 등 부정이용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부정이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이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될 경우,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수요는 연중 상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즉, 가맹점 모집, 참여기업 선정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발생하는 휴가수요를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연중 상시 휴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지원 사업은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예술인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빠른 재기를 돕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의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¹⁾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²⁾의 내역사업 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예술인 복지금고는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운영할 예정이다.³⁾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예산안에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을 위한 인건비, 정보시스템 마련 등 운영비로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18년도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25,006	25,111	25,111	28,053	2,942	11.7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지원	0	0	0	1,500	1,5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용 방식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예술인복지재단은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 상품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고 운영 방안은 2017년 말에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2018년에 연구용역을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2013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중이 86.1%이며, 예술인복지금고 통한 융자혜택 의향이 있는 예술인 비중이 70.6%로 조사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민정책금융의 경우, 창업자금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거나(미소금융), 자영업자, 농·어업인 및 근로자만 대상(햇살론)으로 하여 프리랜서 예술인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한다.

2) 코드: 일반회계 1633-302

3) 「예술인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통해 상품 내용, 대출상품 제공시 이율에 따른 참여의사 등 실태조사를 포함한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⁴⁾

나. 분석의견

금고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거나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용 방식 연구에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구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예술계 자부담, 문화예술사업자기업 기부금, 국고 통해 총 1,500억원 규모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인데, 구체적 재원조성 방안은 2018년도에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⁵⁾

다만, 예술계 자부담, 문화예술사업자기업 기부금으로는 금고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예술진흥법」⁶⁾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예진흥기금 기부금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의 기부금 총액이 1,034억원 수준이고 대부분 기업들이 수혜단체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조건부기부금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예술인 복지금고 추진계획>

- (2017년) 금고 재원조성 방안 마련
 - 예술인 재원납부, 신규재원*, 타기금 전입, 일반기업 기부금 조성 등
 - * (사례) 언론인금고(언론종사자 대출)의 정부광고대행수입/ 햇살론(서민대출)의 휴면예금
- (2018년) 금고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구축
 -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시스템, 금고 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상품 개발(대출상품 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요건) 등
- (2019년~) 예술인복지금고 운영 개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5)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조성 방안을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대출상품 용도, 이자율, 대출요건 등을 포함한 운영상품 등 세부운영 방안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2018년에 수행할 예정이다.

6)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기부금 모집 현황(2012~2016년)]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누계
기부금액	147	194	216	269	207	1,034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또는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금고 재원을 충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금고 재원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18년도에 복권기금과 타기금 등으로부터 전입받은 1,821억원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500억원을 추가 전입받는 등 재원의 여유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금고가 일반회계 위주로 재원을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중 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결산	2017계획액		2018 예산안(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총 계	390,857	540,207	540,207	348,067	△192,140	△35.6
전입금	137,199	137,199	137,199	232,103	94,904	69.2
- 일반회계전입금(91-911)	0	0	0	50,000	50,000	순증
- 기금전입금(91-913)	137,199	137,199	137,199	182,103	44,904	3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인금고(언론종사자 대출)의 정부광고대행수입이나 헛살론(서민대출)의 휴면예금 등을 예시로 들어 예술인 복지금고도 별도의 신규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언론인금고의 운용자산 539억원에는 금고의 운용주체인 언론진흥재단의 출연금이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술인복지금고의 운용 주체인 예술인복지재단의 2017년 총사업비 251억 960만원 중 국고보조금(250억 2,100만원)이 99%를 차지하여 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언론인금고 사례와 같은 재원 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용 계획에 앞서 재원확보 방안이 부실할 경우, 취약한 재무구조의 제약으로 생계자금 대출 조건이 엄격해지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 규모와 기준이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운용 방식 연구에 있

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금고 운용 자산 현황(2017년 7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출연금	잉여금 추가적립	운영수익금	합계
기본재산	국고 - 생활	908	2,092	2,729	5,729
	주택	0	1,000	793	1,793
기본재산 소계		908	3,092	3,522	7,522
보통재산	국고 - 생활	6	0	87	93
	공익 - 생활	9,700 (5,000:재단출연금)		12,709	22,409
	공익 - 주택	11,600 (5,000:재단출연금)		12,234	23,834
보통재산 소계		21,306	0	25,030	46,336
합 계		22,214	3,092	28,552	53,859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술인복지재단 수입지출계획(2017년도)]

(단위: 천원)

수입		지출	
항목	예산	항목	예산
보조금	25,101,000	2016년 예술인창작 안전망 구축사업	25,021,000
- 국고보조금	25,021,000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인건비)	1,005,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80,000	- 예술인복지재단 운영지원(운영비)	853,000
대행수입	8,600	- 직업역량강화	8,238,000
		- 창작역량강화	12,645,000
		- 불공정관행개선지원	1,080,000
		- 사회보험가입지원	1,000,000
		- 문화예술인패스	200,000
		2017년 예술인 의료비지원	80,000
		기타	8,600
합 계	25,109,600	합 계	25,109,600

자료: 예술인복지재단, 「2017년 수입지출계획서」

가. 현 황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¹⁾은 문화포털(www.culture.go.kr) 및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2018년에 신규사업으로 18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정보 중심의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위치기반, 융·복합 문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부 내 문화관련 정보의 통합운영 및 관리를 통해 문화정보 분석기반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한편, 문화포털은 정부가 대국민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포털사이트로서 한국문화정보원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도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0	0	0	1,818	1,818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 사업은 문화정보 중심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용역(2016)으로 구체화되어 2017년 문화정보 중심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ISP(5억원)가 추진되어 (2017.5~10.) 구체적 수립계획 및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화 사업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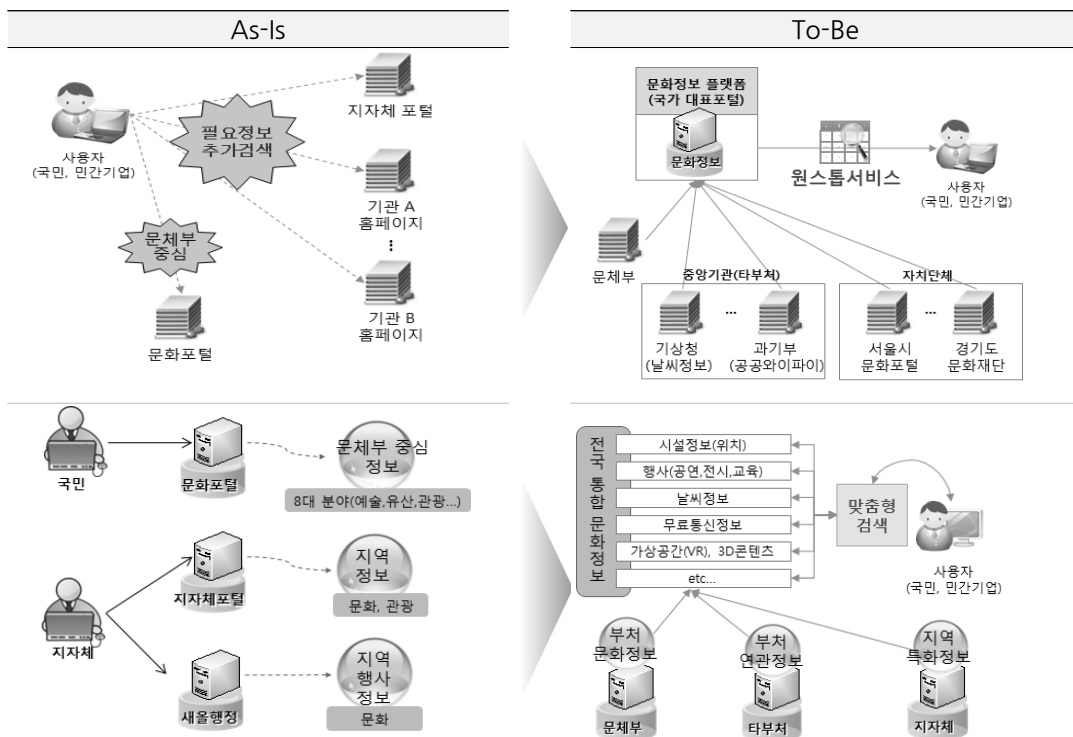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로서, 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산하 기관 중심의 기관별 문화정보를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문화정보(공연, 전시, 축제 등)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② 국민에게 실시간, 위치기반으로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소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일반회계 7133 - 512

규모, 전통 공연·전시·문화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행사에 관한 홍보 플랫폼의 부재 상황을 해소하며 ③ 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문화데이터 연계, 수집이라는 한정적인 범위에서 범정부 및 지자체로 문화데이터 연계, 수집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1,800여개 사이트)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벤처 창업 등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④ 부처·지역·기관별 문화관련 개별 데이터, 서비스 중복 구축 운영으로 인한 비용 문제를 공통의 문화관련 플랫폼(데이터표준 및 공통서비스) 기능 제공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정보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이 사업으로 재구축된 문화포털을 통해 대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재구축된 문화포털을 통해 국가가 민간부문보다 경쟁력 있는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재구축이 필요하다더라도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정부 문화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문화정보와도 적극적으로 공유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문화포털이 대국민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문화 정보 제공 체계 미흡으로 타부터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는 못함을 지적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부문 전반의 문화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과 민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문화정보에 대한 민간포털 의존도는 높으나 제공 정보의 신뢰도가 낮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정보의 상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정보, 문화유산정보, 소규모공연 정보 등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해 정부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문화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있어 한국문화정보원이 직원 55명²⁾으로 플랫폼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를 통해 전체 국민의 문화수요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할지 조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이 보유한 문화정보 중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정보와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정보 등 특정 정보가 전체의 93.46%를 차지하고 있어 정보 보유에 편향이 있으며, 타부처 및 기관의 문화정보까지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수요자 맞춤의 문화정보를 충실히 제공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2) 2017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기준

* 55명 = 임원 1명, 정규직 34명, 계약직 20명(무기계약직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문화데이터 공개현황(2016년 상반기 기준)]

(단위: 개, 건, %)

분야	해당 기관수	건수	비중	비고
문화예술	16	195,115	0.29	
문화유산	16	408,923	0.62	
문화산업	10	30,511,718	46.05	한국저작권위원회 29,489,432건(44.51%)
관광	2	803,126	1.21	
체육	7	826,992	1.25	
도서관	2	30,679,823	46.31	국립중앙도서관 30,675,415건(46.30%)
여건조성	8	264,281	0.40	
홍보지원	3	2,561,492	3.87	한국언론진흥재단 1,747,316건(2.64%)
합 계	64	66,251,470	100.00	상기 3개 기관 합 93.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의 문화콘텐츠, 개인블로그와 SNS의 문화정보가 다소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는 측면은 있으나, 정보의 양과 즉시성 측면에서 공공부문 문화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향후 민간부문 문화정보와도 연계하여 플랫폼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문화정보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다부처 문화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문화기본법」 제11조제3조에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고³⁾ 문화정보화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 정의⁴⁾하고 있을 뿐, 문화정보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

3)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조(정의)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육관광부는 제안요청서에서 문화정보를 8대 체계로 분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다부처 연계 대상 문화정보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악정보, 출판정보, 도서정보, 한글번역 정보, 여행지 정보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국정홍보, 문화여건 조성 관련 정보까지 문화정보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연계 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정보화, 문화정보의 정의 및 범위]

- 문화정보화 정의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활용성을 도모하는 것

- 문화정보 범위 (8대 분류체계)

구분	분야	관련정보
문화예술분야	문화관련 교육, 공연, 전시 분야	국악정보, 미술정보, 공연정보, 예술 복지 정보 등 문화예술 정보
문화유산분야	문화재, 복원기술, 학술자료, 한국학, 유물 분야	박물관 정보, 유물정보, 역사사료 정보 등
문화산업분야	저작권, 방송·영상, 콘텐츠, 게임, 영화 및 음악 분야	영화정보, 디자인정보, 게임 정보, 출판정보, 저작권 정보 등
관광분야	관광정보 및 여행안내 분야	관광정보, 관광통계정보, 여행지 정보 등
체육분야	전문체육육성, 공공체육시설보급, 생활체육 육성, 체육학술 분야	전문체육정보, 생활 체육 정보, 태권도 정보 등
도서관 및 도서분야	도서관, 도서관 장서의 수집/정리/제공/관리 분야	도서 정보, 도서관 정보 등
국정홍보분야	국정홍보방송, 국정홍보자료 분야	정책홍보콘텐츠, 언론정보콘텐츠, 정책방송 데이터 등
문화여건조성 정보 분야	한글 및 국어정보화 분야	한글(국어) 정보, 한글번역 정보, 한글 교육정보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제안요청서(문화정보중심 다부처 연계서비스 플랫폼 구축ISD)

따라서, 다부처가 보유한 정보 중 연계 대상이 되는 문화정보에 대한 범주 설정을 분명히 하는 등 구체화함으로써, 범정부 및 국민이 문화정보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추상적인 정보의 연계로 인한 데이터 구축비용을 방지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 현 황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체육회에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상담 등을 수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지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7,300만원(△10.0%)이 감액된 303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78,704	77,286	77,286	68,782	△8,504	△11.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32,084	33,717	33,717	30,344	△3,373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하여 지도하되, 구체적 지도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된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지자체경상보조 유형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의 운영 및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지역(시·도/시·군·구)체육회에서 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 및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감액분(△33억 7,300만원)은 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의 10%에 해당하는 140명, 120명 감원에 따라 감액된 것이다.

윤희호 예산분석관(yoonhh@assembly.go.kr, 788-4683)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2

[생활체육지도자 구분 및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대 상	2017 예산		2018 예산안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일반지도자	모든 계층	17,926	1,400	16,133	1,260
어르신지도자	65세 이상	15,791	1,200	14,211	1,080
계		33,717	2,600	30,344	2,3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 축소가 우려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등 사업주체는 이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감축 및 고용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사업 예산 감액은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본 사업의 취지와 달리 예산이 체육지도자의 인건비성 및 운영비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를 체육지도자의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등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²⁾³⁾

다만,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46호)의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2) [국고보조사업 종합평가 주요 내용]

기 관 명	문화체육관광부
사 업 명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보조유형	지자체경상보조
총평	○ 본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체육지도자의 활동을 근거로 수당 개념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체육지도자의 인건비성 및 운영비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사업방식을 변경할 필요 - (1안) 체육지도자의 활동 및 성과를 바탕으로 수당개념으로 지급되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경우 감축없이 진행(사업방식변경) - (2안) 1안의 제도개편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개편방안의 지속성이 부족한 경우 예산 감축 (10% 감축)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II)」2016. 9.

3)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는 수당제로의 전환이 야기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악화 및 법적인 문제를 우려하여 대안으로 성과관리체계의 도입·운영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서 전년대비 예산 10% 감액 편성되었다.

통합하면서 통합의 이유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의 확대 필요성과 생활체육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 연계 강화를 들고 있다.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해당 사업 예산이 점차 감액되어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라는 체육회 통합의 취지와 예산 감축이라는 예산편성방침이 상충되는 경우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는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의 적용을 받으며,⁴⁾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제12조⁵⁾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근무성적평점 매우 미흡(70점 이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종사하는 지도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4년 정도로서 근로의 지속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계약은 근로계약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 | | |
|--------------|-------------|--------------|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12조(채용계약) ①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2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점이 70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시·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체육회장은 해당 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시·도체육회 지도자 배치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과장 이상)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해당 지도자는 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 또는 재계약시 근로 계약기간 종료일은 정년해직 기준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 만료 시,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⁶⁾⁷⁾

[생활체육지도자의 성비·연령·근무기간 현황]

(2016년말 기준)(단위: 명, 세)

구분	총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현원	2,542	1,404	684	720	1,138	340	798
평균연령	33.9	35	35	35	32.8	32	33
근무기간	4년 10월	6년 1월	5년 6월	6년 8월	3년 8월	2년 11월	4년 5월

자료: 대한체육회

따라서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보조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생활체육 관련 사업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두 내역사업이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점은 사업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외에도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사업⁸⁾의 내역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사업이 있다.

6) 판례를 보면,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러한 갱신기대권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보는 판례가 있다.

7) 구체적으로 판례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2014.02.13. 선고 대법 2011두12528).” 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8년도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생활체육 정보제공 및 종목보급	18,127	23,211	23,211	23,927	716	3.1
생활체육지도자교육	1,232	1,232	1,232	1,232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된 두 사업은 보조방식의 차이만 존재할 뿐, 모두 사업목적·대상이 일치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동일 세부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안의 집행 및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8)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06

가. 현 황

투자출자사업은 중·저예산 영화, 기획개발분야 투자 등 리스크 높은 분야에 대한 출자사업 지속을 통한 자본조달 창구 마련 목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위하여 한국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영화제작지원¹⁾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8년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80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투자출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영화제작지원	21,239	32,701	3,2701	23,093	△9,608	△29.4
투자출자사업	10,000	18,000	18,000	10,000	△8,000	△4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는 2018년에 한국모태펀드 영화계정에 100억원을 출자하여 일반출자자와 함께 총 170억원 내외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운용기간은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출자방식은 일시납이다.

주요 출자조건은 결성총액의 100% 이상 한국영화 의무투자, 결성총액의 70% 이상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단계 투자, 조합결성일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 누적 투자 등이다.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영화발전기금 1261-300

[투자출자사업 세부내용]

- 출자금 : 100억원(1개 일반투자조합 결성)
 - 모태펀드 영화계정 내 총 100억원(위원회 출자 최소 규모) 출자 예정
- 결성규모 : 170억원 내외
- 운용기간 :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 출자한도 : 결성총액의 최대 70% 이내 출자
- 출자방식 : 일시납
- 진행방식 : 모태펀드 내 영화계정으로 출자
- 주요 출자조건
 - 결성총액의 100% 이상 한국영화 의무투자
 - 결성총액의 70% 이상 중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투자
 - 연도별 투자실적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투자활성화
 - 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 누적 투자
 - 연간 투자금액의 60% 이상을 크랭크업 이전 작품에 투자(조기투자 유도)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스태프 임금체불사례가 접수된 제작사는 투자 금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나. 분석의견

영화제작지원의 투자출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모태펀드 영화계정의 과거 투자분 회수액, 2017년 투자규모 및 실투자소요액의 감소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출자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영상투자전문투자조합 중 2011년에 결성된 3개 조합이 운영기간을 마치고 2018년에 청산완료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수되는 출자금은 모태펀드 영화계정 내에서 2018년 출자사업 시 투자에 활용된다. 3개 투자조합의 기 회수액 97억(ISU-S&M콘텐츠조합 70억, 캐피탈원 중저예산 영화전문투자조합 27억)은 2015~2017년 조합결성 시 소진되었고, 2018년에는 26억 6,600만원(유니온영상전문투자조합)이 회수될 예정이다.

[2011년 결성 투자조합 모태출자액 현황]

(단위: 백만원)

조합명	결성일자	조 합 결성액	모태출자액	기회수액	2018년 회수예상액
유니온영상전문투자조합	2011-01-07	15,000	5,000	0	2,666
캐피탈원 중저예산 영화전문투자조합	2011-06-03	12,000	6,000	2,500	0
ISU-S&M콘텐츠투자조합	2011-10-27	10,000	6,000	7,000	0
합 계		37,000	17,000	9,500	2,666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또한, 2017년에 투자출자예산(기금예산) 180억원과 민간투자 120억원을 합한 총 300억원의 투자조합 2개가 설립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존 투자조합 중 일부에서 100억원(회수계획 미반영분)이 2016년 말에 회수되어 2017년 재투자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투자조합의 규모는 480억원으로 계획 대비 180억원(60%)이 증가하였다.

[2017년 결성 투자조합 모태출자액 현황]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기간	총결성액(A+B)	모태펀드출자액(A)	민간출자액(B)
캐피탈원 중저예산 영화전문투자조합2호	2017.7~2022.7	240	140	100
ISU-S&M 콘텐츠투자조합2호	2017.7~2022.7	240	140	100
합 계		480	280	200
계획 총결성액(300억원)		모태펀드 180억원 + 민간투자 120억원 = 300억원 (2017년 투자출자예산 180억원)		
수정된 총결성액(480억원)		모태펀드 280억원 + 민간투자 200억원 = 480억원 (2017년 투자출자예산 180억원 + 모태펀드 영화계 정 회수액 재투자 100억원 = 280억원)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편, 2015년 이후 결성된 투자조합의 실 투자건수가 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1~2012년에는 롯데, CJ 등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어서 영화투자가 활발하였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들이 배제되어 실투자액과 실투자건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년 결성 조합의 투자회수 예정액, 2017년 투자규모 및 최근 실투자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출자사업별 한국영화 투자계획 및 실적]

(단위: 건, %)

조합명	결성일자	계획건수	실투자건수	달성률
유니온영상전문투자조합	2011-01-07	29	86	299.9
캐피탈원 중저예산영화전문 투자조합	2011-06-03	23	42	183.1
ISU-S&M콘텐츠투자조합	2011-10-27	19	19	99.4
캐피탈원 한국영화르네상스 투자조합	2012-10-11	19	31	162.8
대한민국영화전문투자조합1호	2013-09-06	29	26	89.4
티지씨케이콘텐츠투자조합2호	2015-04-27	32	9	27.8
유니온시네마투자조합	2015-10-06	45	27	60.5
미시간글로벌콘텐츠투자조합6호	2016-12-29	45	11	24.7
합 계		240	251	104.4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둘째, 조합 내에 과도한 현금성자금이 쌓이지 않도록 투자금의 납입방식을 일시납 대신 수시납 혹은 분납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 계획하는 투자출자사업의 출자방식은 모태펀드에서 투자조합으로 투자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결성된 투자조합은 출자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 누적 투자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일시에 납입된 출자금이 최장 4년까지 50% 내외가 영화제작 등에 투자되지 못하고 대기성자금화 될 소지가 있다.

최근에는 자조합 내 과도한 대기성자금 보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조합에서 분납, 수시납 등의 형태로 출자를 받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방식을 일시납 대신 분납, 수시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출자사업 출자방식 및 주요 출자조건]

출자방식 및 주요 출자조건
■ 출자방식 : 일시납 ■ 주요 출자조건 - 연도별 투자실적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투자활성화 - 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 누적 투자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가. 현 황

언론기금 기금관리비¹⁾사업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²⁾제36조에 근거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이며, 2018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700만원 감액된 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언론기금 기금관리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언론기금 기금관리비	225	333	333	266	△67	△20.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기금관리비 중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가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집행률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관리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2018년 계획안은 2억 6,600만원이며, 일반수용비 2억 2,9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관서업무비 2,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4년간 기금관리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 1억 3,500만원, 2014년 1억 9,000만원, 2015년 1억 5,200만원, 2016년 1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언론진흥기금 7279-200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영)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운용한다.

[연도별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13	496	361	135	72.8
2014	448	258	190	57.6
2015	421	269	152	63.9
2016	360	225	135	62.5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에서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수용비는 2015년의 경우 계획액 3억 7,600만원 중 2억 4,100만원(64.1%)이 집행되었고, 2016년의 경우 계획액 3억 2,000만원 중 1억 9,500만원(60.9%)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비는 2015년의 경우 계획액 1,900만원 중 400만원(21.1%)이 집행되었고, 2016년의 경우 계획액 1,400만원 중 900만원(64.3%)이 집행되어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언론진흥기금 기금관리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계획	집행	불용
일반수용비	451	339	112	403	231	172	376	241	135	320	195	125
국내여비	19	0	19	19	3	16	19	4	15	14	9	5
관서업무비	26	22	4	26	24	2	26	24	2	26	21	5
합 계	496	361	135	448	258	190	421	269	152	360	225	135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년 기금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중에는 위원회(자산운용, 위험관리 등) 운영이 계획액 1억 500만원 대비 4,200만원(40%)만 집행되고, 6,300만원(60%)은 불용되었다.

[2016년 일반수용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비고
위원회 운영	105	42	63	기금관리, 자산운용, 위험관리 성과평가, 사업심사 및 평가 관련 위원회
기금사업 관리	150	116	34	사무용품, 소모성물품, 관리물품 구입
자산운용자문	25	15	10	자산운용 성과평가 등 외부 자문
기타수수료 등	40	22	18	예·결산 자료집 제작, 기타 수수료 등
합 계	320	195	125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편, 일반수용비는 2017년에도 계획액 2억 9,500만원 중 8월까지 1억 1,600만원 (39.3%)만 집행되는 등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일반수용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위원회운영	100	31	31.0
기금사업관리	135	48	35.6
자산운용자문	20	11	55.5
기타수수료 등	40	26	65.0
합 계	295	116	39.3

주: 2017년 8월까지 누계임.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또한, 국내여비 역시 집행률이 2014년 15.8%, 2015년 21.1%, 2016년 64.3%로 개선되고 있으나, 2017년 8월말 기준으로는 21.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워크숍, 세미나와 같은 행사 축소로 여비 지출 수요가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소요예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국내여비에서 과다 불용 발생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기금관리비의 국내여비는 2017년과 동일한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도별 국내여비 집행률 현황]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8
국내여비	0.0	15.8	21.1	64.3	21.6

자료: 한국언론진흥재단

따라서,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의 과거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금관리비 예산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¹⁾사업은 「문화기본법」(제11조의2)²⁾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하는 사업이며, 2018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5,600만원 증액된 100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9,153	9,472	9,472	10,028	556	5.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53억원 1,200만원, 경상비가 8억 200만원, 연구사업비가 39억 1,400만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합계
5,312	802	3,914	10,0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은경 예산분석관(e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5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보유 중인 금융성자산과 기타미수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지원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다양한 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수탁사업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수탁사업수익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익은 2013년 9억 3,500만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19억 2,7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4년 동안의 이익률은 11.0~12.2%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탁사업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수탁사업 수익	8,369	9,948	13,339	15,852
수탁사업 비용	7,434	8,854	11,874	13,925
이익	935	1,095	1,465	1,927
이익률	11.2	11.0	11.0	12.2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수탁사업에서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이익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사업운영비를 일부 충당한 결과, 현금주의 방식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7,000만원~2억 1,800만원 발생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금주의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a)	△62	5	99	△99
감가상각비 등(b)	183	142	119	169
현금주의 당기순이익(a+b)	121	147	218	70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구원의 금융성자산은 당기순이익의 증가 외에 일부 집기비품의 구입 등에 일부 자

금을 활용함에 따라 2013년 이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지만 안정적으로 10억원 이상 확보되고 있다. 이는 연구과제 용역선수금을 차감한 총자산의 16.4~29.0%를 차지한다. 한편, 연구원의 기타미수수익이 7억 5,300만원~17억 1,200만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익년도에 현금화되는 수익이다. 따라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보유 중인 금융성자산과 기타미수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지원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순금융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유동자산(a)	5,881	8,549	9,020	9,386
현금및현금성자산	3,016	5,805	6,263	6,891
단기금융상품	2,112	1,712	1,712	1,512
기타미수수익	753	1,032	1,045	983
유동부채(b)	2,853	5,105	5,078	5,227
퇴직급여충당부채(c)	1,863	2,249	2,649	3,140
순금융자산(d=a-b-c)	1,166	1,194	1,293	1,019
선수금 차감 후 총자산(e)	4,019	4,707	4,668	6,206
비중(f=d/e)	29.0	25.4	27.7	16.4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¹⁾은 저작권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컨설팅 등 저작권 종합서비스 제공, 문화산업 및 저작권분야 통상협상 추진, SW저작권분쟁 예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127억 4,900만원에서 전년대비 47억 8,800만원(△37.6%) 감액한 7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내역사업인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조성에 2018년도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 설치·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사업	7,078	12,749	12,749	7,961	△4,788	△37.5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조성	0	0	0	460	0	순증
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	0	0	0	300	0	순증
저작권 표준계약서가이드	0	0	0	160	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저작권 서비스센터,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와 차별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이 필요한 이유로 저작권 분쟁이 복잡화됨에 따라 상담 민원인의 내방이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 불공정계약 등에 관한 사

이병철 예산분석관(bcle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일반회계 1331-301

향으로 법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상담센터와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들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운영을 통해 분야별 변호사(권역별 전문가 1명 씩 총 6명)를 채용하여 분쟁예방 교육·상담 수준을 넘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등 계약 전후 유통단계에서 법률지원, 소송지원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서비스 지원 내용 비교]

구분	(가칭) 공정거래지원단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대상	문화예술인, 개인 창작자 등	지역진흥원 내 입주 스타트업기업 대상 등 (사업화 준비기업)	전국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기업 포함)
담당 인력	위원회 소속 전담 직원 (변호사급, 법학전공자 등)	지역진흥원 소속 저작권서비스 센터 직원 (비전공자 포함)	외부 전문가 (변호사 또는 저작권법관련 전문가)
운영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역진흥원 9개 기관 (위원회 사업지원 및 관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비스	계약 준비 → 계약체결 →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저작권 사업화’ 성공을 위한 준비단계 컨설팅 (저작권 관련 서비스 지원·관리)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저작권 교육 및 관리 가이드라인 컨설팅
세부 내용	· 저작권 관리 관련 법률상담(양도, 이용계약 등) · 계약서 검토 등(체결시 까지 연속성) · 불공정 계약계약 위반 등 분쟁 조정기능 · 관련 법정대응 지원(내용 증명·소장 검토 등) · 분야별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 저작권 불공정 거래 실태 파악 및 동향 분석 자료 제공	· 저작권 법률자문 및 저작권 제도 연계 지원 · 지역진흥원 성공 기업과 준비기업 간 저작권 멘토링 등	· 분야별 저작권교육 및 저작권서비스 안내 실무상담(등록, SW임치, SW관리컨설팅, 오픈소스 컨설팅 등 연계) · 저작권 관련 계약서 일부 검토(단발성)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확대²⁾로 현재 권역별 전담기관 9곳을 지정하여 저작권 법률 및 제도에 관한 중소기업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에 610회(480개업체), 2017년은 현재까지 460회(372개 업체) 저작권 상담 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6~2017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실적]

구 분	2016년 상담실적	2017년 상담실적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17회 / 117개 업체	100회 / 99개 업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113회 / 102개 업체	33회 / 30개 업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0회 / 32개 업체	26회 / 19개 업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86회 / 63개 업체	47회 / 46개 업체
충북지식산업진흥원	100회 / 63개 업체	44회 / 29개 업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1회 / 61개 업체	51회 / 51개 업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83회 / 42개 업체	90회 / 42개 업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45회 / 45개 업체
제주테크노파크	-	24회 / 11개 업체
합 계	610회 / 480개 업체	460회 / 372개 업체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는 중소기업 및 1인창조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저작권 교육, 상담,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사업화/진단 컨설팅 등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문가 Pool 111명을 위촉하였고 법무특허법인 소속 법률전문가가 3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전문가 Pool 소속기관 현황]

(단위: 명)

법무·특허법인	대학	기업	정부·공공기관·협회	공공연	방송·언론	합계
35	35	24	11	3	3	111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중소기업 중심의 저작권

2) 2016년 7개(강릉·대구·목포·부산·안양·오창·전주) 센터에서 2017년 9개(대전·제주 추가)로 확대하였다.

상담 서비스 사업들과 달리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은 저작권 법률 대응에 취약한 문화 예술인에게 저작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칭)저작권 공정거래지원단」,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에 수혜 대상을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의 차별성을 갖기보다는, 상담 내용과 상담수준에 따라 상담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사업과의 연계·협력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¹⁾은 출판산업 침체, 전자출판 확산 등 출판문화산업 환경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출판산업 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관 운영비와 고유사업비를 민간보조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대비 6,200만원(0.6%)이 증액된 10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	10,226	10,417	10,417	10,479	62	0.6
국내출판수요창출 및 유통선진화	1,746	1,676	1,676	1,676	0	0
우수출판콘텐츠 제작활성화	1,508	1,508	1,508	1,508	0	0
글로벌출판한류 확산	1,000	1,000	1,000	1,000	0	0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 인프라 구축	995	1,195	1,195	1,195	0	0
심의사업 등 기본사업	631	631	631	631	0	0
진흥원 지방이전	345	275	275	240	△35	△12.7
인건비	3,268	3,399	3,399	3,487	88	2.6
경상운영비	733	733	733	742	9	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글로벌출판한류 확산 사업과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²⁾간의 기능조정을 통해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 일반회계 1433-302

2) 코드 : 일반회계 1433-300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사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내역사업으로 출판 수출지원센터 운영과 해외신규시장 개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수출지원센터는 수출상담, 도서수출가이드북, 국내외 출판시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신규시장 개척은 해외현지 도서전과 수출상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별도 세부사업인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포트폴리오, 초록, 샘플 등의 수출용 홍보자료 제작지원, 해외도서전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도서전 참가 국제행사개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과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 내용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명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방식	민간보조	민간보조
관련사업	○ 출판수출지원센터 운영 - 출판수출자문단 수출상담서비스 - 도서수출가이드북 제작 및 설명회 - 해외홍보자료 발간 - 해외출판정보 제공 ○ 해외신규시장 개척지원 -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 해외도서전 그림책 전시	○ 출판저작권 수출활성화지원 - 해외도서전 위탁도서 수출지원 - 수출용 출판 홍보자료 제작 - 서울도서전 특별기획전 운영 ○ 출판산업 국제교류 사업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및 해외도서전 한국관 운영 - 한국도서 해외전파 - 출판산업 국제교류
2018년 예산안	1,000	2,976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두 사업의 주요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국내 도서의 수출지원을 위한 홍보자료제작, 도서전 행사 개최 등 사업 방식이 유사하고 홍보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도서의 해외 홍보물 발간은 광범위한 정보 제공이며, 수출용 홍보자료 지원은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홍보자료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출 도서

홍보라는 점에서 개별 사업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도서전시회 상담부스 운영, 한국관 설치 등 유사 행사가 확대되어 왔으며, 동일한 전시회(이스탄불)에 참가한 실적도 있었다.³⁾ 해외교류지원 행사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독서인교류회, 한중출판학술대회, 아시아편집자펠로우 등 유사 행사가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행사의 특성상 일반인, 학자, 편집자 등 참가대상이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상을 너무 세분화하여 단기간 내 확대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사업과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사업 간 조정으로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과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사업 주요 실적 비교]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수출도서 홍보	○ 국내도서 해외홍보물 발간 - 「K-Book Trends」(영문) - 「한서추세」(중문) - 「해외출판동향」 ○ ○수출도서 온라인 홍보 - 한국출판중문 플랫폼 사이트 - 한국출판홍보 영·중문 웹진	○ 수출용 홍보자료 지원홍보물 발간 -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 초록·샘플 번역서비스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 찾아가는도서전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도서전 및 수출상담회 ○ ○해외도서전(그림책) - 아부다비, 이스탄불, 멕시코 국제도서전 수출지원	○ 해외도서전 위탁도서 수출지원 - 라이프치히도서전 한국관 - 서울국제도서전 한국관 - 이스탄불국제도서전 한국관
해외교류 지원	○ 일본 K-Book 홍보지원 - 한국의 책 가이드북 설명회 ○ 한중독서인교류회 ○ 일본, 중국 독서클럽 운영지원	○ 국제출판유통전문가 컨퍼런스 ○ 아시아편집자펠로우십 프로그램 ○ 한중출판학술회의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문화체육관광부는 “찾아가는 도서전”은 B2B 중심이며 “국제전시회 참가지원”은 민간단체의 도서를 통한 교류 및 홍보 중심으로 사업 간 차별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기획재정부「2017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2017.9.)에서 출판 국제화 및 수출산업화 명목으로 수출설명회 등이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 전체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예산과 사업 횟수의 확대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가. 현 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사업¹⁾은 문화·관광·문화산업분야의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관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을 2017년 예산 대비 5억 5,600만원(5.9%) 증액된 100억 2,800만원이다. 기관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4,800만원(4.9%) 증액되어 53억 1,200만원, 경상비는 전년 동일하며, 연구사업비는 전년대비 3억 800만원(8.5%) 증액되어 39억 1,400만원이다.

[2018년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9,153	9,472	9,472	10,028	556	5.9
인건비	4,732	5,064	5,064	5,312	248	4.9
경상비	802	802	802	802	0	0
연구사업비	3,619	3,606	3,606	3,914	308	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분석의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등 기관 고유의 연구성과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²⁾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

이병철 예산분석관(bclce@assembly.go.kr, 788-3745)

1) 코드: 관광진흥개발기금 4264-305

2) 「문화기본법」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되었다. 동 법에 명시한 연구원의 사업 범위는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 문화관광, 문화복지,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국내외 연구기·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수입은 관광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과 수탁연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153억 6,300만원에서 2016년 247억 1,200만원으로 93억 4,900만원이 증가했다. 수탁연구 수입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국고수탁 연구비는 2013년 38억 6,800만원에서 2016년 84억 4,400만원으로 45억 7,600만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 건수는 2013년 153건에서 2016년 142건으로 11건 줄어들었으며, 1억원당 연구실적은 2013년 0.99건에서 2016년 0.57건으로 감소하였다. 정부가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핵심연구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³⁾한 것과는 다르게, 연구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별 수입 및 연구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건)

			2013(C)	2014	2015	2016(D)	증감 (D-C)
기관 수입	정부연구비		6,995	8,247	8,215	8,860	1,865
	수탁 연구비	소계	8,368	9,948	13,339	15,852	7,484
		국고수탁	3,868	5,111	7,655	8,444	4,576
		계약수탁	4,500	4,837	5,684	7,408	2,908
	수입합계(A)		15,363	18,195	21,554	24,712	9,349
연구 실적	기본연구		63	64	56	59	△4
	조사연구		4	6	6	8	4
	수탁연구		86	77	83	75	△11
	실적합계(B)		153	147	145	142	△11
생산성	1억원당 연구실적(B/A)		0.99	0.80	0.67	0.57	△0.42

주1: 정부연구비는 관광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결산 기준임

주2: 기본·조사연구 실적은 정부연구비로 수행한 연구과제(기초, 정책, 수시 등) 보고서 건수임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3) 2015년 정부는「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에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의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분야 조사연구와 통계기능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관광분야 조사연구와 통계기능은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의 이관은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의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문화관광연구원 및 관광공사의 핵심기능 강화	- 문화관광분야 조사연구 기능을 문광연으로 일원화하고 관광공사의 조사연구센터는 폐지 - 문화정보원의 통계기능을 문광연으로 이관하고 문광연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설립근거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사연 이관 검토 - 문광연의 인력 양성기능을 관광공사로 이관하고, 관광공사의 인증기능을 강화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연구실적 저하의 원인은 창업지원, 컨설팅, R&D관리, 행사주최 등 기관의 연구기능과는 관련성이 낮은 국고 수탁 과제 수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지역특화 관광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창업멘토단 운영 등의 관광두레사업, 관광산업 R&D사업관리, 해외전문가 연수과정운영, 행사개최 등 기관의 고유 연구와는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고수탁과제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		주요 내용
	2015	2016	
문화동반자사업	80	-	○ 세계 문화예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관 연수프로그램 지원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 기념사업	299	-	○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공연, 전시, 심포지엄 등 행사개최
통일문화교육사업	96	93	○ 통일문화아카데미 등 교육행사
관광두레사업	2,079	2,343	○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 지원
관광서비스 R&D 지원 사업	147	67	○ 관광산업 원천기술 개발,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 관련 R&D과제선정 및 사업관리
문화이모작사업	92	89	○ 예비지역문화활동가 양성을 위한 기초소양 ○ 교육, 사례탐방, 기획서 작성 및 사업수행 지원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도별 결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예술의 발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등 기관 고유의 기본연구의 성과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타부처와 비교하여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연구가 소액다건으로 수행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연구예산은 늘리고, 연구건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연구사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정책수립기여도’ 평가 점수가 연평균 9.4%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은 1,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5.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05억원, 문화재보호기금 1,245억원 이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6,758	40,459	40,459	40,459	0	0
- 일반회계	36,682	40,459	40,459	40,459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76	0	0	0	0	0
기 금	167,031	133,463	133,463	124,515	△8,948	△6.7
- 문화재보호기금	167,031	133,463	133,463	124,515	△8,948	△6.7
합 계	203,789	173,922	173,922	164,974	△8,948	△5.1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은 7,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원(1.8%)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35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2억원, 문화재보호기금 1,122억원이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19,010	666,937	666,937	662,365	△4,572	△0.7
- 일반회계	603,200	644,776	644,776	635,168	△9,608	△1.5
- 지역발전특별회계	15,810	22,161	22,161	27,197	5,036	22.7
기 금	104,104	122,197	122,197	112,225	△9,972	△8.2
- 문화재보호기금	104,104	122,197	122,197	112,225	△9,972	△8.2
합 계	723,114	789,134	789,134	774,590	△14,544	△1.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재청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05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682	40,459	40,459	40,459	0	0
지역발전특별회계	76	0	0	0	0	0
합 계	36,758	40,459	40,459	40,459	0	0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6,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0.7%) 감소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6,448억원에서 2018년 6,352억원으로 1.5% 감소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22억원에서 272억원으로 22.7% 증가하였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40,348	644,776	644,776	635,168	△9,608	△1.5
지역발전특별회계	15,810	22,161	22,161	27,197	5,036	22.7
합 계	656,158	666,937	666,937	662,365	△4,572	△0.7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호기금의 수입계획안은 1,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6.7%) 감소하였다.

[2018년도 문화재청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재보호기금	167,031	133,463	133,463	124,515	△8,948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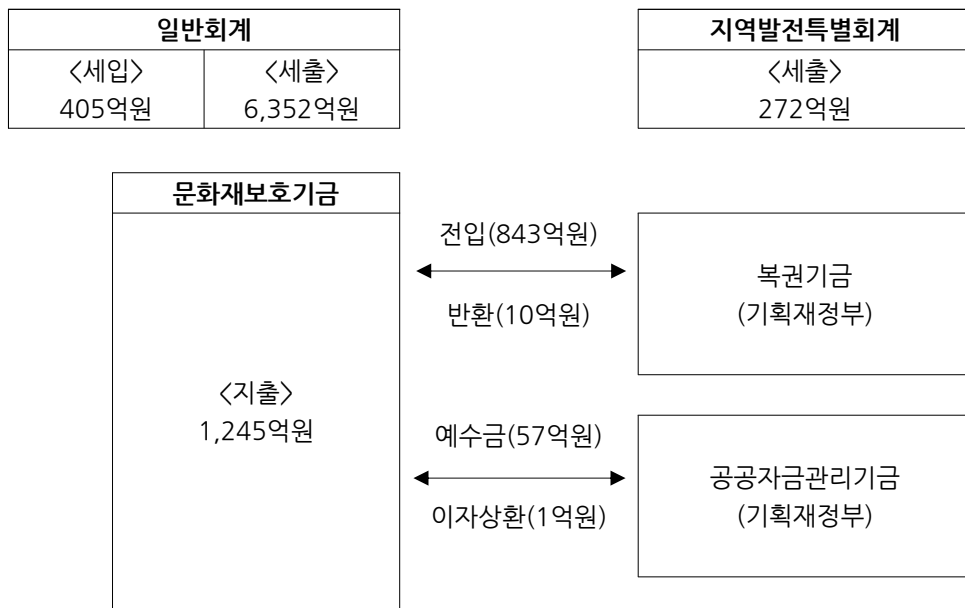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라. 재정구조

2018년도 문화재청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기금에 복권기금 전입(843억원), 반환(10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전입(57억원), 이자상환(1억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②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사업은 대학원 종합연구관 건립에 따른 1차년도 공사비가 반영되었고,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사업은 AR, VR 등 문화유산 실감형 콘텐츠 제작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문화재청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3,451	3,451	5,362	1,911	55.4
	대학원시설운영및기반구축	698	698	6,243	5,545	794.4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운영	1,985	1,985	3,197	1,212	61.1
	덕수궁복원정비	2,260	2,260	2,980	720	31.9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제작	601	601	1,063	462	76.9
지역발전 특별회계 (1개)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18,911	18,911	27,197	8,286	43.8
합 계		27,906	27,906	46,042	18,136	65.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재청

2018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지정문화재 등 문화재 전승·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 ②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 핵심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원 확대, ③ 문화재 돌봄사업 및 방재시스템 등 맞춤형 사전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④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유산 활용·진흥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중점방향으로 설정하여 편성하였다.

2018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가야문화권의 조사·연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나 국립나주문화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7년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변상금 예산안의 경우, 변상금 체납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 4년 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평균 7.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변상금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변상금 징수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문화재청은 「국유재산법」 제72조¹⁾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²⁾을 징수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변상금 3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변상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변상금	135	3,506	3,506	3,506	0	0.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문화재청은 변상금 수납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현재 (재)성균관 등 9개 단체와 128명의 개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하고 있다. 이들 무단점유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은 총 30억 8,577억원인데, 현재 소송 중인 김○○과 거소지 불명인 67명을 제외하고는 재력 부족을 사유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국유재산법」

제72조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2) 코드: 일반회계 57-571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단체/개인 명	무단점유 국유재산	무단점유 목적	변상금 부과액	징수 노력
단체	(재)성균관 등 8개 유림 단체	종로구 명륜3가 53	기타	370	재산 압류 등
	한국사격진흥회	공릉동 26 외 5필지 등 토지	사격장 운영	1,916	- 소유건물 및 계좌 채권압류 - 압류건물 공매처리 - 한국자산공사 채납액 회수 업무 위탁
개인	최○○ 등 60건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20-36 등	주거 및 경작	61	독촉 등
	김○○	공릉동 26-23 외 2필지 토지	영업용	687	- 재산압류 - 한국자산공사 채납액 회수업무 위탁(소송 중)
	김△△ 등 67건	내곡동 1532 등 67건	주거 및 경작	53	거소지 불명(정보없음)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도 변상금 세입 예산액은 2017년과 동일한 35억 600만원인데, 문화재청은 채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매년 채권의 회수가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4년 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평균 7.6%에 불과하다.

[변상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13	2,084	2,084	2,084	3,500	179	8.6	5.1	3,321
2014	3,103	3,103	3,103	3,506	15	0.5	0.4	3,491
2015	2,825	2,825	2,825	3,684	763	27.0	20.7	2,921
2016	3,506	3,506	3,506	3,241	135	3.9	4.2	3,106
2017	3,506	3,506	3,506	563	16.1	14.9	-	-

주: 2017년은 8월 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또한, 전체 부과 건수 중 87%가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건으로, 변상금 미납이 장기화되고 있다.

[연도별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건, 원)

부과년도	부과 건수	부과액
1971~1980	3	455,950
1981~1990	64	46,482,140
1991~2000	66	123,679,810
2001~2010	12	374,695,290
2011~	21	2,622,840,940
계	166	3,168,154,130

주: 2차 이상 부과된 경우 1차 부과 시점에만 기입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변상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유재산의 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채납처분을 진행하고,³⁾ 거소지 불명 등 정보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경우⁴⁾는 불납결손 처리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 불가피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현재 문화재청은 2개 단체와 6명의 개인에 대해서만 재산을 압류하고 있다.

4) 김△△ 등 67건의 개인은 국가재정시스템 도입 이전에 징수결의된 건으로, 거소지 불명 등 징수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 현 황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¹⁾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과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한 ‘월정전수교육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정전수교육지원금은 ① 전수교육지원금, ② 전승활동 포상금, ③ 전수장학생 장학금, ④ 특별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전수교육지원금은 월정액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 지원되며,²⁾ 전승활동 포상금은 개인분야와 단체분야로 나누어 전승활성화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원한다. 장학금은 전승취약종목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특별지원금은 명예보유자³⁾ 수당 및 장례·입원 위로금의 성격이다.

[월정전수교육지원금 개요]

종류		지원대상	지급기준
전수교육지원금		보유자	월 1,317,000원
		전수교육조교	월 660,000원
		보유단체	월 3,500,000원
전승활동 포상금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장학금		전수장학생(취약종목 1인당 3인 이내)	월 263,000원
특별 지원금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	명예보유자	월 1,000,000원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전수장학생)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장학생의 전승 체계를 가지고 있다.

3) 명예보유자는 현재 인정된 보유자 중에서 고령이나 질환으로 기·예능을 정상적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자로 인정된 자이다.

종류		지원대상	지급기준
	장례위로금	보유자	1,000,000원
		전수교육조교	500,000원
	입원위로금	보유자	300,000원(연 1회)

주: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지원방식 변경 후 기준

자료: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에는 월정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예산으로 무형문화재보호 사업⁴⁾의 내역사업인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에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8년도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 A
무형문화재보호	25,584	18,790	18,790	17,001	△1,789	△9.5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8,900	8,970	8,970	8,970	0	0.0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재청은 올해 상반기 재선정된 전승취약종목부터는 월정전수교육지원금을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대신 맞춤형 간접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나, 이에 대한 집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승취약종목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⁵⁾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로, 2008년에 최초로 시행된 이후 3년마다 종목을 재선정하고 있다.⁶⁾ 2017년에는 기능분야 30개, 예능분야 5개 등 총 35개의 전승취

4) 코드: 일반회계 1132-301

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전승취약 종목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승취약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승취약 종목을 3년마다 재선정할 수 있다.

약종목을 선정하였다.⁷⁾

문화재청은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월정전수교육지원금을 타종목에 비해 상향하여 지급해 왔다.

[2017년 3월 이전 전승취약종목 월정전수교육지원금 지급액]

(단위: 원)

구분	전승취약종목 지급액(A)	일반 종목 지급액(B)	차이(A-B)
보유자	1,710,000	1,317,000	393,000
전수교육조교	921,000	660,000	261,000

주: 월별 지급액 기준

자료: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17년도 상반기에 재선정된 전승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월정전수지원금을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전승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연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까지의 전승취약종목의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게 매달 총 1억 2,037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2017년 4월부터는 4,328만원이 감소한 7,709만원이 집행되고 있다. 즉, 차등지원을 폐지함에 따라 현재 미집행 있는 예산이 있다.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월정 전승지원금 집행 현황]

(단위: 명, 천원)

	2017년 3월 이전			2017년 4월 이후		
	인원 (a)	지급액 (b)	총 지원액 (a×b)	인원 (c)	지급액 (d)	총 지원액 (c×d)
보유자	51	1,710	87,210	43	1,317	56,631
전수교육조교	36	921	33,156	31	660	20,460
계			120,366			77,091

주: 월별 지급액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전승취약종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국가무형문화재 정책 내에서 전승활성화 종목이 아닌 ‘전승 단절 위기에 있으며 우대 지원해야 할 종목’을 뜻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실태조사』, 문화재청, 2016. 11., p.17.)

7) 예를 들어, 기능 분야 전승취약종목으로는 탕건장, 곡성의 돌실나이, 낙죽장, 금속활자장 등이 있고, 예능 분야의 경우 발탈, 가사, 가곡, 서도소리, 줄타기가 전승취약종목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지원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맞춤형 지원(안)은 마련되었으나, 전승활동 증빙자료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이 지원 방식을 변경한 것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는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인데, 예산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전승 취약종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조속히 실행하여, 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승활동 포상금은 기타보전금(310-04목)이 아닌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이전지출 중 공익행위의 격려, 포상에 대한 것은 포상금(310-03목)으로, 소득보전을 위한 보전금은 기타보전금(310-04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승활동 포상금은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 보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무형문화 전승활동이라는 공익행위에 대한 격려 및 포상에 가깝다. 따라서 월정전승교육지원금 중 전승활동 포상금의 경우 기타보전금이 아닌 포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원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8)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전승활동 포상금 지급은 전승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연 1회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월정전승교육지원금과 성격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 현 황

문화재 돌봄사업¹⁾은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하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문화재 담당 인력 보완을 위한 사업이다.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에 근거한다.

동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보조율 50%)으로 시행하며, 지자체장은 지역의 돌봄단체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한다. 관리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한편 돌봄사업의 업무범위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 문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등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제3조에 근거한다.²⁾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 대비 3억 5,700만원이 감소한 121억 8,200만원이다.

[2018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재 돌봄사업	12,015	12,539	12,539	12,182	△357	△2.8

자료: 문화재청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2133-301

2)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

제3조(업무범위) ①돌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
2.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3.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4.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5.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 조치
6.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7. 국·공유 및 개인 소유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위탁, 관리 및 활용

나. 분석의견

지역별로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 규모의 편차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말 기준 상시인력 1명당 관리 대상 문화재수는 지역별 2.7~21.8개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러한 편차는 돌봄대상 문화재 수, 지자체의 인력공급여건 및 규모, 사업역량 차이, 수행방식 차이(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등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돌봄사업 인력 현황]

(단위: 명, 개, 개/명)

지역	상시인력 (A)	관리대상 (B)	1명 당 관리 건수 (B/A)	지역	상시인력 (A)	관리대상 (B)	1명 당 관리 건수 (B/A)
서울	10	49	4.9	강원	45	432	9.6
부산	11	30	2.7	충북	33	487	14.8
대구	18	269	14.9	충남	58	588	10.1
인천	24	234	9.8	전북	39	478	12.3
광주	17	176	10.4	전남	73	651	8.9
대전	18	166	9.2	경북	88	847	9.6
울산	24	121	5.0	경남	24	524	21.8
세종	12	83	6.9	제주	39	272	7.0
경기	56	600	10.7				

주: 2016년 기준

자료: 문화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단체마다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하나, 문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관리를 위해서는 일용인력보다는 상시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서울시의 경우 종로구(위탁), 송파구·강동구(직영)만이 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외의 지역은 돌봄사업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현재 돌봄단체의 법적 지위 안정 및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선행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과업관리를 규격화 하는 등 전국에서 균일한 수준의 돌봄사업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문화재청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¹⁾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교재·교구를 보급하며, 교사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의 예산안은 2017년도에 비해 1,200만원 증액된 16억 4,000만원이다.

내역사업 중 민간문화유산 교육사업의 예산이 11억 5,000만원(76.0%) 감액되고,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이 11억 7,000만원 신규 편성되었다. 이는 기존에 한국문화재단에서 민간보조로 수행하던 문화유산교육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경상보조(광역 25%+기초 25%)로 수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도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66	1,628	1,628	1,640	12	0.7
직접운영비	96	114	114	106	△8	△7.0
민간문화유산 교육사업	1,072	1,514	1,514	364	△1,150	△76.0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0	0	0	1,170	1,170	순증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첫째, 문화유산활용교육의 사업방식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수혜 대상 지자체가 일부 지역으로 제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지역의 문화재를 교육하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1138-302

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던 문화유산활용교육을 내년도부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도록 변경하였다.

올해 9월 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7건이 선정되었다. 그런데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인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31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만 교육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 방식과 비교하여 수혜 대상 지자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경우 2016년에는 40개교에서 문화유산방문교육을 수행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의 대상단체 중 경상남도 내의 지자체가 선정된 곳이 없어 문화유산 교육의 수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소수의 지역에서 집중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혜 대상 지역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공모 심사 선정 사업의 지역별 현황]

(자료: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계
기초자치단체 수	25	16	8	10	5	5	0	31	15	14	23	18	170
선정 단체 수	3	2	1	2	2	0	0	9	4	5	3	0	31

주: 1. 광역단위 사업이 있는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2. 기초자치단체 수는 2016.12.31. 기준

자료: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2017.8.)」 및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사업방식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되며 매칭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비는 증가하게 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자체에서 고루 지역문화유산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유산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문화재청은 매년 한국문화재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문화유산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콘텐츠 제작 시 교육컨텐츠의 수요 파악 및 활용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제작된 콘텐츠마다 배포 실적이 균일하지 않음

며,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제작한 자유학기제 교재의 경우 교재 제작 후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배포하였는데, 전국의 약 3,000여개 중학교 중 134개교만이 교재를 신청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이 실시한 「2016년 문화유산교육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유산교육을 수행한 교사들은 ‘수업안, 교구개발 등(31.3%)’을 수업 진행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향후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제작 시 교육현장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 현황]

연도	문화유산교육 콘텐츠	배포 및 접속 수
2006 ~2007	어린이교양도서 <어린이 문화재 박물관 I,II> 발간('06년 12월, '07년 12월)	현재 판매중 1권: 1판 6쇄 2권: 1판 9쇄
2006	세계유산 교육지침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유산> 번역 출판('06년 12월)	1,000부
2008	문화유산 교양도서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발간('08년 6월)	3,000부
2008 ~2009	재미있는 문화유산 수업 I,II 발간('08년 12월, '09년 12월)	2,000부
2012 ~2013	문화유산교육용 영상 제작('12년) 및 DVD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 10편) 보급('13년)	15,000부 (전국 초중학교 배포)
2014	초등 창의적 체험활동 적용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수업안 배포('14년)	150부
2014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홍보용 USB 배포('14년)	11,134개
2015	문화유산 교사용 매뉴얼 '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배포('15년)	1,000부
2016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문화재' 교육영상 보급('16년) 등	서비스이용 실적 100,595건
2017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재 배포 ('17년 9월)	6,200부

가. 현 황

문화재청은 국정과제인 가야 문화권¹⁾의 조사·연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의 문화유산 조사연구(R&D) 사업²⁾에 2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연구인 ‘가야 고분과 유물 등 비교연구(4억원)’, ‘금관가야 왕궁 및 고도 복원연구(2억 2,500만원)’와 신규로 추진할 ‘가야지역 기초조사(16억원)’ 등이다.

[2018년도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문화유산 조사연구(R&D)	18,016	19,056	19,056	20,482	1,426	7.5
고대문화유산연구	8,655	8,722	8,722	10,656	1,934	22.2
가야 문화권조사·연구	1,124	1,059	1,059	2,225	1,166	110.1

자료: 문화재청

나. 분석의견

가야 문화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 관련 조직 간에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의 가야 문화권 유적에 대한 학술연구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 지역의 가야 문화권 연구를 위해 1990년 설립된 기관으로, 2017년에는 ‘가야 고분과 유물 국내외 비교연구(2016~2025년, 총 연구비 59억원)’, ‘금관가야 왕궁 및 고도 복원 연구를 위한 학술조사(2015~2024년, 총 연구비 39억 6500만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가야권역은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다라국 등 크게 6개의 가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헌자료 및 고고학적 자료로 권역의 설정이 가능하다.

2)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1236-302

그런데 가야 문화권에 대한 연구·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연구소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야의 영역이 경남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가야의 영역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경북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낙동강 동부지역, 전라도 동북지역 및 호남지역도 가야 문화권으로 설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가야고분 유적 발굴 지역 현황]

권역	지역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금관가야	김해, 창원, 진해, 마산, 부산, 거제, 양산	-	-	-
아라가야	함안, 마산, 의령, 산청, 밀양	-	-	-
대가야	거창, 의령, 함양, 산청	고령	남원, 장수, 진안, 임실	순천
소가야	고성, 진주, 사천, 산청, 하동	-	-	광양
비화가야	창녕	-	-	-
다라국	합천	-	-	-

자료: 「가야이야기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5.12., p.169.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신규로 수행하는 ‘가야지역 기초조사’의 경우 경북지역 문화재를 연구하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나 전라도지역의 문화재를 연구하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⁴⁾

3) 가야는 문헌기록이 부족하여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권역의 설정이 가능한데, 경남 외의 지역에서도 가야고분 및 가야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지방문화재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	관할구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광주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

가. 현황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활용 진흥 등 세 개 세부사업에서 자체교육 등을 위한 초빙강사료 8,180만원을 기타운영비(210-16목)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180만원, 영녕릉 보존정비 200만원, 문화유산 활용 진흥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기타운영비에 편성된 초빙강사료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	예산안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자체교육 강사료	1,800
영녕릉 보존정비	친절교육 강사비	2,000
문화유산 활용 진흥	휴관 없는 박물관 교육강사 및 보조강사	77,999
계		81,799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초빙강사료 지급을 위한 수당은 기타운영비(210-16목)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수용비(210-01목) 등 타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210-16목)는 과 운영비·시험관리비·축조의금 및 격려금 등으로만 편성할 수 있다. 또한, 각종 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 계상하되, 고용 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

그런데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활용 진흥을 비롯한 세 개의 세부사업에서 초빙강사료를 기타운영비에 편성하고 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타운영비의 목적에 맞는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36)

1)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7. 4., p.192.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강세욱 예산분석관
조가영 예산분석관
윤희호 예산분석관
이동엽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임길환 예산분석관
안옥진 예산분석관
이병철 예산분석관

지원 | 이가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558-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